

입법평가 연구 09-16-□□

#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김 봉 철

#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The Standard Cost Model in the United Kingdom

연구자 : 김봉철(한국외대/경기대 강사)

Kim, Bong-Chul

2009. 7. 31.

## 국문 요약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SCM)은 선진화된 입법이라는 목표를 두고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행정비용 등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의 절감을 추구하고자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선진국들은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한 선진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즉,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조화 및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선과 행정비용 감축이라는 목적을 두고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기초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입법의 선진화 및 규제개혁을 위한 실천적 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제도화에 관하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따르면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규제에 의한 행정비용을 계량화하고 행정부담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의한 행정비용의 측정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정책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방법을 제공하면서도 통계적인 표식 대신 직접적·기능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표준비용모델은 이른바 ‘네덜란드 방식’과 유럽기준이라는 국제적인 표준에 근거하면서도 여러 가지 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약간 다른 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영국 표준비용모델이 도입된 배경부터 그 방법론, 모델의 구성, 측정을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요소

들의 정의와 측정범위,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측정의 주요사항을 관장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측정의 방식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등에서 다른 유럽의 표준비용모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이 가지는 특수성과 이것이 영국에 도입되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특수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표준비용모델, 규제개혁, 행정부담, 행정비용, 정보제공의무

## Abstract

The Standard Cost Model provides a framework method to measure administrative costs due to the information obligation under certain regulation(s). Several countries has developed their own models for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reducing the administrative cost or burdens.

Generally speaking, the three steps to reducing the administrative costs using the Standard Cost Model are related each other. As the first step, breaking down regulation into manageable components is the basis for the second step. Measuring the administrative burdens as the second step can be the basis for the regulatory reform by simplifying or reducing the regulation.

The UK Standard Cost Model has been developed adopting the Dutch model. However, it has a number of specific implementation and methodological choices. That is to say, it can be justified that the model in the UK may have some variation from international practice.

Although Korea has made great effort to regulatory reform, many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business still provide high level of administrative costs. For this reason, the Standard Cost Model should be introduced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cost for the basis of the Korean regulatory reform policy. In a long term view, it is required to make some variations from international practice considering certain situations of Korea. Several points of the UK model can be considerable for this process.

For example, the UK Standard Cost Model is placed in the context of the UK'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process. Therefore, it provide motivation for culture change in policy making. Th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whole process of the measurements using the model.

※ Key Words : Standard Cost Model, SCM, Administrative burden, Administrative Cost, Information obligation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 2 장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	13
제 1 절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	13
제 2 절 도입배경 .....	15
제 3 절 추진과정 .....	17
제 3 장 영국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	23
제 1 절 목적과 범위 .....	23
I. 기본적 구성과 목적 .....	23
II. 사전적 측정과 사후적 측정 .....	24
III.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규범 및 규제 범위 .....	25
제 2 절 핵심산식의 구성 .....	29
I. 핵심산식의 기본구조 .....	29
II. 기본적 요소들의 개념 .....	30
III.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주체와 객체 .....	34

IV. 규 제 .....	36
V. 비 용 .....	39
VI. 기타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가정 .....	43
제 3 절 세부단계의 기술 .....	45
I. 표준비용모델의 전반적인 측정과정 .....	45
II. 시 작 .....	46
III. 예비조사 .....	47
IV. 시간과 비용 관련 자료의 수집과 표준화 .....	53
V. 추산, 자료제출 그리고 보고서 .....	56
제 4 절 표준비용의 산정 .....	57
제 4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61
I.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	61
II. 개념정의와 모집단의 범위 설정 .....	62
III.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규제개혁의 연결 .....	66
IV. 기반자료 등 표준화 .....	67
참 고 문 헌 .....	69

## 【부 록】

### [부록 I]

행정비용의 측정 :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 .....	73
--------------------------------	----

### [부록 II]

행정부담 : 행정부담 감축방안 .....	235
------------------------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논의되어오던 입법평가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입법자와 평가자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입법평가의 논의를 더 이상 진행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낳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었다.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입법평가를 진행하면서도 입법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원래 추구하고자 하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 바로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SCM)이다. 표준비용모델은 선진화된 입법이라는 목표를 두고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행정비용 등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의 절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한 선진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시도하기 시작한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노력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조화 및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U의 중심축을 이루는 영국도 선진규제와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전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한 네덜란드 등의 효과와 방법론을 도입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2004년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검토보고서의 발간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영국 정부는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매뉴얼(Measuring Administrative Cost: UK Standard Cost Model Manual)을 발간하였고, 2006년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에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지침(Administrative Burdens-Routes to Regulation)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이후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작업은 다양한 실제측정, 검증과 평가를 통하여 꾸준히 발전해왔다.

표준비용모델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경제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과 행정비용 감축 목적의 일환으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입법의 선진화 및 규제개혁을 위한 실천적 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제도화에 관하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현황과 관련 지침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영국이 마련한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하여,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이 구축된 배경과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의 구축과 관련한 전례와 구상을 검증하고, 선진국의 표준비용모델 기법이 우리의 법체계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들을 축적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구체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인 대상은 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영국 정부의 표준비용모델 담당부서인 영국의 선진규제국이 2005년 9월 29일 발간한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매뉴얼과 그 부록들을 기본으로 한다. 아울러 2006년 9월에 마련된 그 지침의 내용까지도 그 분

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후에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정에서 변화된 내용들도 아울러 살펴본다.

위의 내용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서술한다.

제2장은,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에 관한 것이다. 2005년의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은, 네덜란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덴마크의 매뉴얼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적 관행으로부터의 변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의의와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성과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영국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즉, 표준비용모델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표준비용의 조사절차, 구체적인 적용방법론을 분석한다. 우선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나타난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고, 매뉴얼에 나타난 핵심적인 계산방식을 파악한 다음에, 세부적인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표준비용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행정비용의 절감과 규제의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입법을 추구한다는 표준비용모델 방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사항을 본 장에서 제시한다.

## 제 2 장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 제 1 절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협회의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이란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의 비용’을 말한다.<sup>1)</sup> 이러한 행정부담은 규제로 인하여 기업과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으로, 기업의 행정부담이 많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GDP의 약 1.6%<sup>2)</sup>가 행정부담이어서 이러한 행정부담의 감축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3)</sup>

표준비용모델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전하였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특정 규제의 부담을 산정하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국제 표준비용모델 기준이 행정부담선언(Administrative Burden Declaration)에 따라 설정되었는데, 이 선언 이후 개괄적인 표준비용모델과 국제 표준비용모델 편람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표준의 설정 노력은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려는 국가들은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위한 대안을 공유하고 있다.<sup>4)</sup>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따르면,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이라는 용어는 행정부담과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러

---

1) ‘행정비용’과 ‘행정부담’의 개념정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상현 외, “행정 조사 정비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규제학회·국무총리실, 2008. 12을 참고할 것.

2) 약 200억 파운드에 해당함.

3) 영국은 2004년 기업활동비용 양호순위 전 세계 3위(KPMG 평가), 2005년 기업규제 완화 세계 7위(세계은행)이다. 안혁근,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 KIPA 연구보고서(2007-21), 한국행정연구원, 2007, 81면.

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M Network,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을 참고할 것.

한 측정방법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규제에 의한 행정부담을 계량화하고 행정부담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표준비용모델은 정부가 기업에 부담시키는 행정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량적이고 견실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산정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정책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방법을 제공하면서도 통계적인 표식 대신 직접적·기능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sup>5)</sup>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행정부담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법률안, 명령제정안 기타 의안 등으로 인한 예상 가능한 결과를 사전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어느 행정규제의 적용 이전에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행정비용에 대한 ‘사전적’(ex-ante) 측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적 측정의 결과는 공공분야, 산업, 국민, 환경 등에 대한 어느 법률안의 경제적·행정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부담의 사전적 측정이라는 기능 외에도, 이미 시행된 법률과 제정 규범들이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과 결과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정은 행정비용의 ‘사후적’(ex-post) 측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행정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행정부담과 비용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평가가 가능하고, 이러한 절차를 근거로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 표준비용모델이 행정비용의 감축과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하는 목적이라면, 행정비용 측정이 어떻게 그 목적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의한 행정비용의 측정과 이에 따른 합리적 규제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인

---

5)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이종한,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6, 58면 이하를 참고할 것.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sup>6)</sup>

- 제1단계 : 분석이 가능한 기본요소들로 분해(Break down regulation into manageable components that can be measured)
- 제2단계 : 분해된 기본요소들을 분석하여 행정비용을 산출(Measuring the administrative burdens)
- 제3단계 : 측정된 결과에 따른 규제의 간소화와 개선(Simplifying the regulation)

영국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한 행정부담 감축과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감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제 2 절 도입배경

영국의 선진규제국이 제시한 바람직한 규제란, 투명하고(transparent), 책임성이 있으며(accountable), 균형잡히고(proportionate), 일관성이 있으며(consistent), 명확한 목적을 가진(targeted) 것이어야 한다.<sup>7)</sup> 이러한 요건에 합당한 규제는 기업을 비롯한 국민 또는 사회전반에 과중한 부담시켜서는 곤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규제를 만들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오래전부터 이러한 바람직한 규제를 설정하고 기존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입법평가의 방법론이 제시되어왔다.<sup>8)</sup>

---

6) SCM Network,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default.asp?page=122>, 2009. 7. 20.

7)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BERR), <http://www.berr.gov.uk/whatwedo/bre/index.html>, 2009. 7. 15.

8) 입법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현안분석 2007-11, 한국법제연구원, 2007을 참고할 것.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표준비용모델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상세한 사항들을 행정비용의 산정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개별적인 행위 수준까지 세분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유리한 점이다.<sup>9)</sup> 또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의한 기업들의 시간과 자원 소비에 대한 평가가 개별적인 규제와 관련하여 그 이전의 입법평가 방법들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장점에 더하여, 표준비용모델은 매우 기능지향적이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간소화된 규제계획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정하여 충족하기 애매한 일부 규제도 적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영국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 및 규제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규제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요소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각 규제의 정책목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방식에 따른 평가는 규제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규제의 요건이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행정활동의 평가에만 초점을 둔다. 정책의 목적을 평가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은 가치판단이나 정책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위와 같은 표준비용모델의 장점과 특성에 더하여,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배경은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가 있다. 우선 표준비용모델에 관하여 유럽차원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방법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유럽연합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는

---

9) 그러나 평가결과는 단지 측정일 뿐이며 제한된 표본에 의한 것이므로, 무작위가 아닌 표본적인 도안이 통계적 관점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데, 유럽연합의 중추적 회원국인 영국도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의 효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영국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은 당시 영국의 정치적 상황이었던 노동당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온 영국 내에서의 규제개혁정책을 바탕으로 이러한 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영국의 규제개혁에 있어서 특징은, 다른 국가들처럼 규제개혁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검토의 결과물로서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규제개혁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이다.<sup>10)</sup>

1999년 3월에 이른바 ‘정부현대화’(Modernising Government)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업 등에 불필요한 규제의 배제와 정부의 현대화라는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통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도모하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은 노동당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방법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 제 3 절 추진과정

2005년 영국 정부는 규제심사국(Regulatory Impact Unit: RIU)을 대체하는 선진규제국을 신설하고 내각사무처 소속의 규제개혁 총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기관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Hampton 보고서의 제언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sup>12)</sup>

10) 이준호,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규제개혁 보고서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9. 1, 65면.

11) 박영도,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영국, 독일의 규제개혁 입법동향”, 현안분석 2008-16, 한국법제연구원, 2008, 30면.

12) 영국의 규제개혁과 관련 기관의 구조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정해, 임준형,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주무부서인 선진규제국은 정부조직상 기업, 산업 및 규제개혁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의 하위부서로 존재하면서 범정부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sup>13)</sup> 선진규제국은 영국 내의 법령 및 국가규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비용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즉, 선진규제국에 의한 영국 정부의 규제개선은 ‘간소화’와 ‘선진화’라는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선진규제국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 새로운 규제수립방식을 도입하고 그러한 규제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와 협력하는 것(to work with departments to improve the design of new regulations and how they are communicated)
- 현존하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과 협조하는 것(to work with departments and regulators to simplify and modernise existing regulations)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규제기관 및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어느 규제가 더욱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to work with regulators (including local authorities) and departments to change attitudes and approaches to regulation to become more risk-based)

2008년 12월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선진규제국은 275개의 조치를 통하여 약 10억 9천만 파운드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선진

---

박형준,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255면 이하를 참고할 것.

13)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BERR), <http://www.berr.gov.uk>, 2009. 7. 19.

14) SCM Network,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default.asp?page=98>, 2009. 7. 19.

규제국은 2010년까지 기업, 공공분야 및 자선사업분야에서 총 30억 5천만 파운드의 비용절감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sup>15)</sup>

선진규제국의 행정부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기관들<sup>16)</sup>이 관여하면서 더욱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선진규제국은 이미 8500개 이상의 기업과 기타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측정(baseline measurement)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조사와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과정은 2004년부터 시작된다. 노동당 정부는 2004년 10월 선진규제를 위한 업무진행팀(Better Regulation Task Force: BRTF)에게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한 방법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적을수록 많은 규제: 부담의 경감과 효과의 증진’(Regulation-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이라는 정책보고서<sup>17)</sup>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규제에 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sup>18)</sup>

- 표준비용모델의 채택
- 간소화계획의 추진을 위한 체계의 구축
- 지속적인 간소화계획의 진행
-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보완
- 규제개혁법의 운영에 관한 검토

15) Better Regulation Executive(BRE), <http://www.betterregulation.gov.uk/about>, 2009.7.20.

16) 여기에 참여한 영국 정부의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Cabinet Office, Charity Commission,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DCA),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Department for Environment and Foreign Affairs (Defra),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 Department for Transport (DfT), Department of Health (DH),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Forestry Commission, Food Standards Agency (FSA), Her Majesty's Treasury (HMT), Home Offic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and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

17) David Arculus at al., “Regulation-less is more :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A BRTF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2005.

18) 이준호, 앞의 글, 80면.

- 의회에 대한 기간의 제공
- 규제의 동시개시일의 연장
- 규제비용의 평가도구 개발

이 보고서에서는 규제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One in, One out’ 정책 및 네덜란드식의 행정부담 감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9)</sup> 이 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네덜란드식 접근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행정비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에 기반을 둔 목표치를 설정하여,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는 구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sup>20)</sup>

이 보고서의 발간과 함께, 2005년 재무부의 Hampton 업무팀은 기존의 영국식 규제체계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또 다른 보고서인 ‘행정적 부담의 경감: 효과적인 검사와 집행’(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을 발간하였다.<sup>21)</sup> 이 보고서 역시 영국의 규제구조를 분석한 다음, 향후 영국의 규제에 대해서 비용을 측정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규제기관이 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sup>22)</sup>

두 보고서를 바탕으로 표준비용모델의 적극적인 도입방향을 모색한 영국정부는, 행정부담과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들의 권고를 수용하여 2006년 중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을 완료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감축계획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체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sup>23)</sup>

---

19) BRTF 보고서의 권고 1은 영국이 표준비용모델을 채택하여 2006년 5월까지 이를 영국 내 행정부담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 안혁근, 앞의 보고서, 81면.

21) Philip Hampt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2005.

22) 노혁준,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I)-영국”, 현안분석 2008-18, 한국법제연구원, 2008, 13면. 이 보고서의 권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준호, 앞의 글, 84면 이하]를 참고할 것.

23) 안혁근, 앞의 보고서, 83면.

- 2005년 여름부터 규제의 수를 계산 (1,435개)
- 2005년 9월 - 11월 : 규제와 정보제공의무(IO)를 분류(2만2천개 IO)
- 2005년 9월 - 2006년 3월 : 16개 부처의 행정부담을 측정
- 2006년 7월까지 : 각 부처 조정 작업
- 2006년 12월 : 각 부처의 간소화 계획을 공표

이러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선진규제국은 2005년 9월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매뉴얼(Measuring Administrative Cost : UK Standard Model Manual)을 발간하였으며, 다양한 표준비용모델 적용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영국은 2005년 5월부터 18개월간 선진규제국의 조정 하에 18개 부처에 대한 행정부담 측정을 실시하였고 중앙정부와 EU,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 자선단체, 자발적 조직에 부과되는 행정비용을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sup>24)</sup>

2006년 9월에는 선진규제국에서 행정부담을 위한 지침(Administrative Burdens - Route to Reduction)을 제시하였으며, 다시 2006년 11월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eline)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로운 서류양식이나 완화된 정보제출 요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7년에는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여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새로운 규제에 따른 영향평가에서 관리상의 부담을 측정하도록 제시하였다.

24) 실제 측정의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혁근, 위의 보고서, 88면 이하]를 참고할 것.

## 제 3 장 영국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 제 1 절 목적과 범위

#### I. 기본적 구성과 목적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의 목적은 표준비용모델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이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5년 9월의 이 매뉴얼은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며, 덴마크의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의 네 번째 판을 기초로 한다.<sup>25)</sup> 가이드라인은 전체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 두 장은 표준비용모델을 설명하는데, 제2장은 표준비용모델의 개략적 내용을, 제3장은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산정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제5장은 보다 세부적으로 실제산정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몇 개의 부록이 추가되었다.

가이드라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부과된 행정부담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비용모델’이라는 객관적인 체계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정책담당자들이 그러한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은 부담경감의 목적을 위해서 실용적이고 일목요연한 방법이 적용되도록 기능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으로 도출된 결과는 정부의 정책수립에서 보다 나은 규제를 실현하도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표준비용모델은 영국의 규제개혁절차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며, 정책수립과 검토에 있어서 관련 비용과 효과는 정책 목적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행정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와 평가에 의하여야 한다.

25) 표준비용모델 매뉴얼 ‘1.2. 본 매뉴얼에 관하여’ 참고.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따르면, BRTF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사용된 바 있는 국제표준비용모델을 채택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적 관행으로부터의 특별한 변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히 유럽연합과 OECD가 행정부담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서 표준비용모델과 그것에 기초한 방법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다.

## II. 사전적 측정과 사후적 측정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측정은 법률안, 명령제정안 기타 의안으로 인한 예상 가능한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어느 행정규제의 적용 이전에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행정비용에 대한 ‘사전적’ 측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적 측정의 결과는 공공분야, 산업, 국민, 환경 등에 대한 어느 법률안의 경제적·행정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표준비용모델 측정은 이미 시행된 법률과 제정 규범들이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과 결과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정은 행정비용의 사후적 측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행정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사후적 측정은, 이른바 기준측정(Baseline measurement)이라고 하는 해당 분야의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비용의 선행평가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기준측정은 특정시점에서 규제를 따르는 기업이 부담하는 전반적인 행정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기준평가는 선별된 규제분야 또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에 관하여 이루어진다.

사후적 측정은 새로운 규제나 규제의 변경에 따라 기준 평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수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보다 광범위한 평가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실행 후 3년이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경우에 규제실행 당시 도출된 행정비용의 사전적 측정을 재검토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진규제국은 사전적 측정과 사후적 측정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이 특정 정부기관의 특별한 규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수행되어야만 한다. 실제 측정작업은 일반적으로 외부자문에 의한다. 사업자 단체 역시 관여해야 한다.

### Ⅲ.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규범 및 규제의 범위

#### 1. 국내에서 실행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implemented in regulations are measured)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가 있는 모든 기업 관련 규제가 표준비용 모델을 적용하는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EU규범과 국제조약들은 국내에서 실행되는 범위에서 측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즉, 국제규범은 국내법화를 통한 실행요건이 요구된다. 그러나 EU규범은 국내법으로의 전환없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sup>26)</sup> 다만 국내법으로 체계화하는 실행요건이 없는 경우 그러한 규범들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규제들에 따른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이 국내규범의 간소화 계획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규범에 대한 평가나 측정이 기준측정(Baseline measurement)의 일부를 형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EU의 규범 간소화 계획을 고려할 때, 부과된 부담을 이해하는 것은 EU차원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질 것이며, 그런 규제의 부담을 평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26) 이러한 규범들도 대부분 실제로는 감시와 집행 등 국내 실행을 위한 사항 또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 2. 모든 강제적 및 자발적 규제들(All compulsory and voluntary regulations)

측정되어야 할 규제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규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제적인 규제와 기업이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가 그것이다. 우선, 기업이 강제적인 규제의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며 초래한 모든 비용은 표준비용모델 측정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제는 법률을 통해 강제되어지거나 명백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실상 강제되어 질 것이다.

문제는 자발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발적인 활동 역시 표준비용모델 내에 완전히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자격증 신청, 계획안 수행, 계획안 허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비용모델에서는 해당 집단들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추정한다. 문제는 어느 큰 부담들에 관하여 집단의 모두가 완전히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는, 규제목록이나 측정과정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완전준수(Full compliance)

규제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준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어느 규제를 완전히 준수한 비용이나 일부분을 준수함으로써 인해 초래한 실제상의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들이 법규 등에 명시된 그대로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기업들이 법률의 문언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이 의식적으로 규정의 일부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비용의 측정은 모든 관련 기업들이 그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는 실제 기업의 수 또는 개개의 기업들이 부분적인 규제를 따르는 것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또는 이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된 규제들을 준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것이다.

#### 4. 행정비용의 환급을 포함한 규제(Regulations including the reimbursement of administrative costs)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여 정부로부터 행정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규제는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포함되지만 그 환급의 표준 역시 동시에 명시되어야 한다.

#### 5. 불확정 요건(Contingent requirements)

어느 규제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발생가능성 또는 발생비율 등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어느 사건이 해당 기업의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는지 판단하여, 예를 들면 연간 단위와 같이 일정 기간에 해당 사건의 발생 빈도를 포함하여 관련 행정부담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생가능성 또는 발생빈도를 근거로 하는 불확정요건의 측정을 제외하고, 기타 불확정한 사건과 관련된 규제는 매우 드물게 측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규제들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측정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담의 발생으로는 간주될

수 없다. 본 매뉴얼에 따르면, 어느 규제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관련 부처가 판단하는 경우에 선진규제국에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그 포함가능성 여부를 질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규제유형은 규제의 목록에 게재되고 불확정요건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것의 기록 역시 측정에 관한 선진규제국의 결정을 상세히 포함해야 한다.<sup>27)</sup>

## 6. 지리적 적용범위(Geographical coverage)

영국은 지리적으로 크게 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섬 내에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이며, 바다를 건너 아일랜드 섬에는 북아일랜드 지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 아래 있는 모든 규제는 각 지역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영국 내 성문 규범들은 이러한 지역들 중에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법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면에, 스코틀랜드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다른 법규를 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규제에 관련된 각 부처들은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기본적 데이터 베이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지리적 사항이 보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국 표준비용모델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측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

27) 이와 같이 선진규제국에 그 내용이 제공되면서 요건의 배제를 위한 기준들이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 제 2 절 핵심산식의 구성

### I. 핵심산식의 기본구조

영국 표준비용모델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 규제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하기 위한 행정활동비용이다. 이러한 활동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식은 후술하는 각종의 매개변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이 제시하는 표준비용모델의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비용} &= \text{가격} \times \text{수량} \\ &= (\text{요금} \times \text{시간}) \times (\text{모집단 수} \times \text{빈도}) \end{aligned}$$

기본공식에서 가격이란 요금, 내부 활동에 대한 임금비용(간접비와 비임금비용 포함)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급 그리고 시간, 즉 행정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총량으로 구성된다. 수량은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모집단 수)와 매년 해당 작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빈도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어느 행정작용을 완료하기 위해서 3시간이 필요하고(시간), 기업의 해당직원에게 대한 시간당 임금이 10파운드(요금)이라고 하면, 이 경우의 가격은  $3 \times 10 = 30$ 파운드가 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100,000개의 기업들에 적용되어야 하고(수), 각각의 기업이 해마다 두 번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빈도), 수량은 200,000이 된다. 따라서 총 행정비용은  $200,000 \times 30$ 파운드 = 6,000,000이 되는 것이다.

## II. 기본적 요소들의 개념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은 규제절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해하여 그 요소들에 연관되는 비용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의 개념과 정의가 필요한데, 본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직접적 재무비용과 준수 및 정책비용

재정비용(Financial costs)은 정부 혹은 관련 기관에서 총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의 결과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비용은 정부 각 부서에서 정보제공을 위한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한 비용은 행정적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허가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규제에 따른 재정비용이다.

준수비용은 직접적 재무비용을 제외한 규제에 따른 모든 비용이다. 표준비용모델에서 준수비용은 ‘실질적 준수비용’과 ‘행정부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 준수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환경적 요구에 따른 여과장치
- 근무조건규제에 부합하는 물리적 시설
- 특정 자격증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

### 2. 행정비용과 행정부담

행정비용이란, ‘기업이 정부규제에 의해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정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행정부담은 행정비용의 부분집합이며, 규제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계속 수

행할 행정활동을 위한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의 일부분이다.

표준비용모델은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규제가 없었더라도 기업이 계속 행하였을 활동을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사업적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행위와 규제의 요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하지 않은 행정행위 등, 규제와 관계없는 행정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정보제공의무

규제의 결과 기업이 공공에 제공하고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정보제공의무’라고 한다. 정보제공의무는 기타 감사, 방문 또는 조사를 허락하고 협조하는 등 정보의 수집 및 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더하여 정보를 획득 또는 준비하는 의무이고, 그 결과로서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자금조성, 허가 그리고 다른 사업에 부적합하지 않으면 기업이 거부할 수 없다. 정보제공의무가 반드시 기업이 정보를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후생과 안전평가와 같이 기업이 어느 요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공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제공의무의 유형들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요구의무의 예<sup>28)</sup>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29)</sup>

- 반환 및 보고서
- 허가 혹은 면제를 위한 신청
- 인증을 위한 신청

28) 이를 ‘표준행정활동’이라고도 한다.

29)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뉴얼 5.2.1의 번역부분을 참고할 것.

- 활동의 신고
- 등록부의 등록
- 정밀 조사의 수행
- 보조금 혹은 지원을 위한 신청
- 상업상 비상시 계획의 갱신 등 관리
- 회계감사/조사에 대한 협조
- 법령에 의한 제3자에 대한 품질표시
- 법령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 불만제기와 항소의 구성

#### 4. 자료요구/자료요구

각 정보제공의무는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일련의 여러 정보 또는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자료요구이다. 예를 들어, 연차결산보고서의 제출부분에서, 기업은 경영보고서와 확인서류, 대차대조표 등과 같은 일련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료요구사항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들, 기업의 수익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사항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자료요구사항의 내용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한다.<sup>30)</sup>

1. 기업 정보
2. 생산 정보
3. 개인 정보
4. 구 매

30)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뉴얼 5.2.2의 번역부분을 참고할 것.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판 매</li> <li>6. 제품 정보</li> <li>7. 회계 자료</li> </ul> |
|--|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자료요구사항들에 관하여 그 처리과정을 기준으로 수동적 과정(Manual process),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과정(Partially automated process), 현저히 자동화된 과정(Predominately automated process)으로 구분한다.

### 5. 행정활동

자료요구 사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면 많은 행정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그러한 정보를 통해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양식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과 같은 수많은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한 시간과 재화의 소비는 각 기업의 행정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어느 활동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기업이 해야 하는 서면작성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의미를 가진다. 양식을 채우는 것은 정보제공의무를 충족시키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는 전자양식, 서면양식, 온라인양식 또는 콜센터와의 연락 등의 방식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16가지의 행정활동에 관한 예를 들고 있다.<sup>31)</sup>

31)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뉴얼 5.3의 번역부분을 참고할 것.

1. 자료요구사항의 충족
2. 정보 검색
3. 평 가
4. 계 산
5. 자료의 제시
6. 검 토
7. 정 정
8. 기 술
9. 결산/납입
10. 내부회의
11. 외부회의
12.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
13. 공공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
14. 교 육
15. 복사, 배포, 보관 등
16. 정보의 보고/제출

### Ⅲ.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주체와 객체

#### 1. 정 부(Government)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있어서 그 주체가 되는 정부란, 중앙정부 자체에 의해 주로 통제되고 자금이 조성되는 모든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정부기구를 포함하는데, 대사관처럼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매뉴얼은 행정부담 측정과 관련하여, 정부란 모든 책임운영기관과 차상위기관, 비정부공공기구, 규제처 그리고 일



부 부서가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독립기구까지 포함하여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범위에서만 표준비용모델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순수한 지방정부의 규제를 설명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 측정은 주로 중앙정부의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비록 지방정부가 위와 같은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더라도, 단순히 위임된 행정은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기 업(Business)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의한 비용측정은 영국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포괄한다. 따라서 오직 외국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규정과 같이 예외적인 것은 측정될 수 없다.<sup>32)</sup>

영국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자선단체,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들을 포함하여 기업에 대하여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sup>33)</sup> 즉, 기업이라는 용어는 국가회계의 목적에서 통계청에 의해 행정과 공공서비스로 정해진 공적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경제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 즉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 공기업, 시민단체까지 측정의 객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객체의 범위에는 각국의 상황과 규제의 특수성이 반영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그 범위를 매우 확대하여, 자선단체와 자발적인 분야를 포함한다.

측정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대상을 잘 구분하여 동질적인 대상끼리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집단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기가 다른 기업은 각각

32) 예를 들어, 타국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행해지는 통신판매는 이 측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이종한, 앞의 보고서, 82면.

재원과 비용의 제한이 있다. 규제 변화가 다른 활동으로부터 재원을 끌어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네 개의 크기의 범주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결과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범주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서비스에 의해 정의된 내용을 사용한다.

- 최소규모(Micro) (0~9 피고용인)
- 소규모(Small) (10~49 피고용인)
- 중간규모(Medium) (50~249 피고용인)
- 대규모(Large) (250 또는 이상의 피고용인)

물론 일부 규제의 측정 결과는 이러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로 충분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분류기준이 선택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선진규제국이 승인하여야 한다.

### 3. 비정부(Non-Government)

이익단체, 외국대사관, 그리고 OECD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어느 국가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의 지국들은 정부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 IV. 규 제

영국 표준비용모델 적용과 관련하여 규제(Regulation)란,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기업이 법에 위반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나 사업참여 등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이라고 정의한다.<sup>34)</sup> 이것은

34) 이러한 정의는 Hamptom 보고서에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하다[이준호, 앞의 글, 66면].

정부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인 권한과 기타 실행계획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EU의 규제들
-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의회의 성문법규 조항들
- 성문화된 규범들
- 합법적 권한 아래에서 장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 제정된 규칙, 명령, 계획, 규제들
- 중앙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특정 자격과 허가들
-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실무관례
-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침
- ‘승인된 관례’와 같이 정부가 승인한 실무관례/지침/자치규범/산업협약 등
-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된 하위규범들

다만, 다음의 사항들은 제외한다.

- 정부의 승인이 없는 실무관례/지침
- 정부의 승인이 없는 자치규범/산업협약을 포함한 기업간 임의적 합의들
- 중앙정부정책과 관련없이 지방정부의 조치로부터 기인한 의무
-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인의 의무와 같은 보통법에 기인한 의무
- 지방기관의 하위규범들과 순수한 지방기관의 규제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장관 및 의회로부터 수권된 정책 위임분야

위와 같이 표준비용모델에서 정의된 행정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부담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선진규제국이 조사한다.

자료요구는 다음과 같이 그 규제의 근거에 따라 세 가지 주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A. EU규범 기타 국제법적 의무에 따른 독점적이고 완전한 자료요구. 이러한 국제규범은 기업들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B. EU규범과 기타 국제법적 의무에 따른 자료요구. 규제의 목적은 해당 국제규범에 명시되지만, 실행사항(구체적인 자료요구의 명시를 포함)은 회원국에게 위임된다. 이러한 국제규범은 기업이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 C. 국내법 수준에서 명시된 규범에 따른 독점적인 자료요구

관련 부처는 자료요구를 관련 전문가들의 표준화 작업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A 유형의 자료요구들은 다음과 같이 하위요소로 다시 분류한다.

- 유형 A - EU 지침(Directive)
- 유형 A - EU 규칙(Regulation)
- 유형 A - 국제규범(International)

따라서 A 유형의 자료요구와 그것의 실행은 EU규범(EU-지침 또는 A-EU-규칙) 혹은 기타 국제규범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자료요구를 규정하는 EU규범들은 어떠한 정보가 기업들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명시한다. 기타 국제규범들도 기업들이 어떠한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유사하게, B유형의 자료요구 관련 규제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유형 B - EU 지침 유형 B - EU 규칙 유형 B - 국제규범
---

유형 B 내에서, 자료요구는 EU규범(B-EU-지침 또는 B-EU-규칙) 혹은 기타 국제규범에 의한 결과이다. B 유형의 규범에 따른 국제적 의무는 단지 그 목적만을 명시하는 것이고, 각 회원국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자신들의 국내규범 내에서 명시한다. 따라서 기업이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명문화하는 것은 각국 스스로에 달려있다.

C유형의 규제는 한가지의 규제방식만을 포함하는데, 즉, 자료요구는 국내규범의 독점적인 결과이다. 정보제공의무와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사항 모두 국내규범에서 규정된다.

A, B, C유형의 분류는 영향력의 범위 내에 있는 행정부담의 여부 또는 그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A유형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영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C유형의 행정부담은 독점적으로 영국의 직접적 영향에 있다. B유형은 위 두가지 유형의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그 구체적 실행의 정도가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 V. 비 용

측정의 목적이 되는 행정비용을 정의하고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따르면 비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비용변수(비용매개변수)

행정활동과 관련된 비용변수(Cost parameters)는 개개의 행정작용에 있어서 지출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비용변수는 다음과 같다.

- 대내적 비용변수(Internal cost parameters): 시간과 요금(시간당 비율 + 간접비 그리고 비임금비용)
- 대외적 비용변수(External cost parameters): 시간과 요금(시간당 비율)
- 취득물(Acquisitions)

이러한 비용변수는 어느 작용의 총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량적 변수와 결합한다.

### 2. 가 격(Price)

비용변수는 표준비용모델에서 가격요소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이는 요금, 활동이 대내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임금비용(간접비용과 비임금비용 포함)과 대외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시간당 비용과 투입된 시간, 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총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임금에 관한 정보는 통계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외부비용에 관해서는 영국의 공식적인 국가평균자료가 사용된다.

### 3. 요금/요금(Tariff)

대내적 요금은 총임금, 비임금비용, 재료비 및 간접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총임금은 전형적으로 행정활동을 위해 고용된 자의 통계적 임금의 중간값이며, 비임금비용은 휴가수당, 고용주의 보험료와 국가

고용보험에 따른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재료비(원료비)는 행정의무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구입하는 모든 재료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설, 등록을 위한 재료, 상세목록표 등을 위한 비용들이 포함된다.

간접비(Overhead)는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직접적인 고용비용에 추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의 사용, 책상과 컴퓨터 및 기타 부속품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비용 등이다. 일반적으로는 간접비를 산출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통계자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진규제국의 승인을 얻어서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사용할 수 있으나, 매뉴얼에서는 일반적으로 총 비용의 30%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출한다고 규정하였다.<sup>35)</sup>

대외적 요금은 회계사, 법무업무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 관리사무소 등과 같은, 기업이 법률과 규제에 합치된 영업을 하도록 행정상·절차상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에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대개 상업상 비율(총임금을 근거로 하는)과 상쇄된다.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에 관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가평균비용이 사용된다.

#### 4. 시 간(Time)

가변적인 시간은 기업이 어떤 행정활동을 완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분 또는 시간단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 : 가격의 산정  
기업가 x는 규제에 따라서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회계사 사무소를 통해 고용한 회계사를 이 회계

35) 그러나 영국에서는 측정 초기에 매뉴얼상의 30%를 적용하였으나, 이후 측정과정에서 재검토하였다고 한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한다. 이 회계사의 경비는 시간당 200파운드이다. 회계사는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총 30시간을 사용한다. 기업가는 회계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시간당 70파운드의 요금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격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가격합계} &= \text{가격대내적}(70\text{파운드} \times 2) + \text{가격대외적}(200\text{파운드} \times 30) \\ &= 6,140\text{파운드} \end{aligned}$$

### 5. 수 량(Quantity)

수량은 규제의 영향을 관련 기업 모집단의 규모와 매년 완료해야 하는 활동의 빈도수로 구성된다. 모집단은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수를 나타낸다. 이것은 행정비용을 산정할 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그룹과 산정에 필요한 관련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빈도수는 한 기업이 매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회수를 나타낸다.

예 : 수량의 계산

연간 회계보고서(가격 산정을 위한 예 참고)를 작성할 의무는 기업가 x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격체에 적용된다. 이러한 법인격체는 총 100,000개이며, 그들은 1년마다 연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수량은 다음과 같다.

$$\text{수 량} = 100,000(\text{기업의 수}) \times 1(\text{빈도수}) = 100,000$$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의무에 합치하기 위한 총 행정비용은  
총비용 = 가격(6,140파운드) × 수량(100,000) = 61,400,000파운드



## 6. 취득(Acquisitions)

취득물의 가치는 예상되는 구입물의 연평균 비용으로 영향을 받는 모집단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취득비용의 대표적인 것이 문구류 또는 우편요금 등이며, 디지털방식의 보고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별 컴퓨터 등의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는 기업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취득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비로 계산될 수 있다.

## VI. 기타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가정

### 1. 일반적(정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

영국 표준비용모델분석의 근본적인 개념은 일반적(정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이다. 표준비용모델의 목적은 규제의 출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행정업무를 시행하는 대상 모집단 내에서의 전형적인 기업들을 의미한다. 즉, 기업들은 그들의 행정 업무를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에 있어서 특별하게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적 효율기업은 대상모집단 내에서 많은 전형적인 기업에 인터뷰(설문조사)를 하면서 찾는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외주업체나 관련 전문가와의 설문도 여기에 포함된다. 설문의 목적은 기업이 정보 요구사항과 관련된 개별적인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찾기 위함이다. 기업들의 답변에서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작업이 필요하나, 만약 어느 설문작업결과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인 효율적인 기업을 위한 행정작용과 관련된 표준소비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더 많은 기업들과의 설문작업이 수행된다.

## 2. 일회성 비용(One-off cost)과 반복성 비용(recurring c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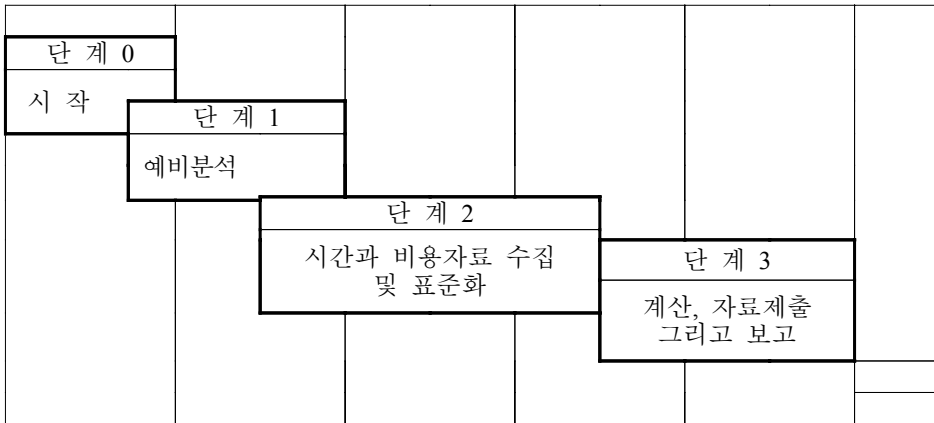
표준비용모델의 분석과정에서 규제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반복성 비용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일회성 비용은 기업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처음 적용할 때 한번 발생하는 비용이다. 사업활동에 있어서 신규업종으로의 전환이나 영업확장에 의한 경우처럼, 일회성 비용은 기존의 규제를 처음으로 준수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일회성 비용은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규범으로 발생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일회성 비용은 기준측정(baseline measurement)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영향평가에서 포섭을 위한 사전적 측정(ex-ante measurement)에는 포함된다. 일회성 비용의 예는, 해당 규제의 변경 결과로써 관련 기업이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등이 있다.

반복성 비용은 어느 규제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를 기업이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행정비용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이 수출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개개의 기업에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일 수도 있다. 반복성 비용은 경제 전반에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1년마다 혹은 그것보다 덜 빈번하게 특정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관련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비용이다.

## 제 3 절 세부단계의 기술

### I. 표준비용모델의 전반적인 측정과정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비용측정의 과정은 크게 네 가지 단계와 14가지 하위절차로 나누어진다. 단일규제의 산정에서는 이 단계들이 순차적이지만, 기준측정과 같은 더욱 큰 범위의 측정에서는 규제영역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과정으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단계들이 중첩되기도 한다.



주어진 규제영역에 있어서의 표준비용모델 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방법론과 특정 규제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모두 요구된다. 산정은 일반적으로 관련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산정에 있어서 선진규제국만이 아니라 정부의 관련 부처, 기업 그리고 그 밖에 영역에서의 전문가와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 선진규제국은 모든 영역에서의 산정 전반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진다.

수집된 자료는 표준비용분석결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양의 복잡한 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선진규제국에 의해 특수화된 데이터 체계를 통하여 선진규제국으로 이전된다.

영국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4가지 논리적 단계와 그 하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계 0 : 시 작		
관련 정부부처, 선진규제국, 전문가 그리고 주요 관련자들과의 최초 회의		
단 계 1 : 예비조사		
	절 차 1 :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그리고 행정활동의 조사와 구분
	절 차 2 :	관련 규제의 확정과 경계설정
	절 차 3 :	적용대상의 분류
	절 차 4 :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의 파악
	절 차 5 :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평가
	절 차 6 :	관련된 비용변수의 파악
	절 차 7 :	설문조사 지침의 준비
	절 차 8 :	단계 1-7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단 계 2 : 시간과 비용자료 수집과 표준화		
	절 차 9 :	설문조사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정
	절 차 10 :	기업설문조사
	절 차 11 :	각 활동별 분류에 따른 적용대상의 시간과 자원 측정의 완료 및 표준화
	절 차 12 :	단계 9-11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단 계 3 : 추산, 자료제출 그리고 보고		
	절 차 13 :	실증된 자료를 자료통한 국가차원의 통계추정
	절 차 14 :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화

## II. 시 작

시작단계는 본격적인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시작단계에서 진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분야의 취급문제 등, 담당부처가 제시한 규제목록과 관련한 측정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
- 부처, 기업, 관련전문가 그리고 선진규제국 등 주요 관련자들의 회의를 포함하여 측정을 시작하는 것
- 순차적인 단계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
- 관련전문가, 부처, 기업, 그리고 선진규제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및 기타 인식작업을 진행하는 것
- 측정기술상의 질적 보장절차를 확립하는 것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근, 공유 그리고 유지를 위한 방법을 설정하는 것<sup>36)</sup>

표준비용모델 측정의 시작단계에서 관련전문가 집단은 분석에 포함될 기업관련 규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 준비과정에서는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마련된 자료체계를 참고하여 분석된 자료에 추가되는 모든 정보의 정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관련 규제의 목록을 그 규제들이 제외된 이유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반드시 담당부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분석에 있어서 포함되었던 모든 기업관련 규제를 관련 부처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Ⅲ. 예비조사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분석의 수행에 관련한 작업의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자료수집에 선행되는 예비조사와 연결되어 있다. 예비조사의

---

36) 예를 들어, 안전한 웹사이트 등을 제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의사 결정과정에 도움을 주고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용이하며, 이미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목적은 관련된 법규 내에서의 기업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행한 행정활동을 조사한 다음, 관련되어 있는 가변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업부분을 분석한다.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은 이 과정을 8개의 세부절차로 나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상호관련성을 가진 다양한 절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 1. 절차 1: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그리고 행정활동에 관한 조사와 원인별 구분

절차 1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작단계에서부터 정보제공의무까지의 규제 목록을 분석하는 것
- 정보제공의무에서 자료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
- 자료요구사항을 분류하는 것
- 행정활동을 분석하는 것<sup>37)</sup>
- 원인별 규제에 대한 구분을 시작하는 것

전문가들은 개별 규제를 분석하여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그리고 이에 관련된 행정활동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 분류는 최초의 입법이 부가적인 입법을 낳는 경우와 같이, 규제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그리고 행정활동의 분석을 포함하는 이러한 자료는 담당 부처에 제출되고 검증이 진행된다.

37) 이것은 절차 10에서 기업과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 2. 절 차 2 : 관련 규제의 확정과 경계설정

절차 2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진행된다.

- 관련/중복되는 규제들을 확정하는 것
- 규제별 담당부처들을 할당하는 것
- 해결되지 않는 쟁점을 선진규제국의 결정을 위해서 보고하는 것

전문가들은 행정비용이 측정되어야 할 규제영역에 관하여 명확한 경계와 정의를 도출한다. 규제가 식별되고 비용부담자가 명확해지면, 동일한 정보제공의무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절차 1로부터 나온 기업관련 규제에 대한 자료에 더하여 관련 규제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다. 예비조사 단계의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사항이 다른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규제 사이의 접촉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규제가 다른 규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선진규제국이 이러한 사항들을 승인한다.

## 3. 절 차 3 : 적용대상의 분류

절차 3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의 규모, 전자정부 운영체계 그리고 해당 산업영역에 의하여 자료를 분류하는 것
- 규제상의 비표준화 분류대상을 확정하고 선진규제국과 담당부처가 적용대상 분류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

- 기업규모에 의한 적용대상 분류가 적절하지 않거나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선진규제국이 이러한 분류계획에 동의하는 것

이러한 분류는 선진규제국이 승인하여야 하며, 그 정보는 절차 1로부터 도출된 기업관련규제에 대한 자료체계에 통합된다. 전문가들은 더욱 자세한 분석을 요구하는 특별한 적용대상의 분류에 대해서 선진규제국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한다.

#### 4. 절 차 4 :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의 파악

절차 4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진행된다.

- 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모집단의 파악
- 각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등급의 설정
- 각 자료요구사항/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빈도수의 결정

전문가들은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에 관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체계에 통합한다. 담당부처는 이러한 자료들을 검증하며,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또한 선진규제국도 전문가와 담당부처가 식별하지 못한 사항들을 검토한다.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의 확인 과정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데, 단계 3에서의 통계추정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정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떠한 정보제공의무가 많은 기업에 영향이 있는지는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에서 수행되는 기업설문조사의 중점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5. 절 차 5 : 기업과의 설문조사범위와 전문가의 평가

절차 5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interview) 범위와 전문가의 평가에 대한 구분기준을 특정하는 것
- 어느 정보제공의무를 기업과의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평가할 것인지와 인지를 확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것
-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평가될 정보제공의무를 그 결정의 이유와 함께 목록화하는 것

전문가는 기업과의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정보와 어떤 것이 후에 평가되어야 할지에 관한 정보를 절차 1로부터 나온 기업관련 규제에 대한 자료에 통합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에 의한 평가의 구분에 근거가 되는 기준은, 담당부처가 용이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 기준들은 반드시 예비조사 단계의 결과로서 준비되는 현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자료는 승인을 위해 선진규제국 및 담당부서에 보내진다.

### 6. 절 차 6 : 비용변수의 파악

절차 6에서는, 각 행정활동/정보요구사항/정보제공의무를 위한 관련 비용변수를 파악하는 것과 비용변수와 유사한 사항에 관련된 불확실한 영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활동은 많은 가격변수들로 나뉘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해당 부처와 선진규제국이 그 내용을 승인하며, 그 과정 중에서 관련 쟁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 7. 절 차 7 : 설문조사 지침의 준비

절차 7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은, 설문조사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지침을 준비하고 선진규제국이 이를 승인한다.

### 8. 절 차 8 : 절차 1-7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절차 8에서는 이전의 절차에서 진행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를 통하여 종합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 관련 감시단(관련 부처, 기업 대표, 선진규제국 및 다른 전문/주요 관계자들에 의한 검토를 위해, 절차 1-7에 의해 마련되었던 예비조사에 있어서 수행되었던 모든 작업을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 감시단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수행한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다음 단계의 시작을 승인함

예비조사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산출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은 예비조사의 이행에 대한 단계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어떻게 기업관련 규제의 구성요소 파악에 관련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사항이 중요한지, 다른 법규영역 및 통합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계구분이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행정활동이 관련성이 있는지, 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의 분류 등이 포함된다. 위 보고서는 담당부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을 위해 감시단에도 제출된다. 전문가들은 감시단의 의견이 방법, 경계설정 등의 선택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선진규제국 및 담당 부처와 함께 결정한다.

#### IV. 시간과 비용 관련 자료의 수집과 표준화

예비조사 단계에서의 조사준비행위를 기초로 하여, 다음 단계의 작업은 해당 범규의 내용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설문조사<sup>38)</sup>로부터 얻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각각의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행정활동 그리고 비용변수를 자료체계표를 작성하여 표준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절차 9에서부터 절차 12까지의 세부절차로 구성된다.

##### 1. 절 차 9 : 설문조사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정

절차 9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설문조사의 수를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기업을 파악하며, 설문조사의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최종 검토하는 것
-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되는 모든 적용대상의 분류/자료요구사항/정보제공의무 전반을 포괄하는 설문조사를 위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것
- 전체적인 목적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 방법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는 것
- 담당부처와 선진규제국이 합동으로 대상기업에게 설문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절차 10에 있어서의 설문조사 과정을 근거로 하여, 이전보다 대상기업들을 확대하거나 설문조사 내용을 다시 구성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

38) 동일한 대상의 분류에 속한 각각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3회 이상의 심층적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설문조사를 위한 기업과 계획된 설문조사의 총 수를 파악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을 선진규제국이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비용의 측정이유 등, 절차에 관한 정보는 응답자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작성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담당 부처와 선진규제국 그리고 사업자단체 사이의 상호협력관계 속에서 발전/공유된다.

계획의 승인에 따라, 설문조사에 앞서 대상기업과의 교섭이 있다. 해당 조사대상 기업과의 교섭과 접촉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 부처나 선진규제국이 기업과 초기교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2. 절 차 10 : 설문조사의 실시

절차 10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 단계의 절차 7에서 작성된 설문조사지침을 사용하여, 절차 9의 결정에 따라 기업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 정상적 효율기업(The Normally Efficient Business)에 의해 안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평가하는 것
- 조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설문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
- 선진규제국에 문제/의문사항/쟁점을 설명하는 것

전문가들은 단계 2의 결과에 따라 작성되는 현황보고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실행절차와 그 내용들을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규제국은 설문조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여한다.

3. 절 차 11 : 각 활동별 분류에 따른 적용대상의 시간과 자원 측정의 완료 및 표준화

-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각 행정활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각 적용대상 분류의 결과를 표준화하는 것
- 설문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절차 5(기업과의 설문조사범위와 전문가의 평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

이러한 사항들은 자료체계표를 마련하여 표준화된 해당 기재사항을 기입한다.

4. 절 차 12 : 절차 9-11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절차 12에서는 자료수집과 표준화 단계에서 마련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련감시단(관련 부처, 기업 대표자, 선진규제국 그리고 기타 전문가/주요 관계자들)에 의한 검토를 위해, 절차 9부터 11까지에 의해 도출되었던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단계 2에서 수행되었던 모든 작업을 요약한 단계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 감시단은 단계 2에서 수행한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단계 3의 시작을 승인함

자료의 수집과 표준화 단계에서 산출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전문가는 절차 9-11의 실행에 관한 대한 절차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평가 및 결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된다.

보고서는 담당부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을 위해 감시단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감시단의 의견이 추가적인 과제를 유도하는지 여부를 선진규제국 및 담당 부처와 함께 토의하여 결정한다.

## V. 추산, 자료제출 그리고 보고서

이전 단계들에서 준비/계획되어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데, 절차 13에서부터 절차 14까지는 이와 같은 마지막 단계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 절 차 13 : 실증된 자료를 통한 국가차원의 통계추정

절차 13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진행된다.

- 각각의 활동 및 적용대상 분류에 있어서, 이전 단계로부터 승인 및 표준화된 자료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
- 절차 14에서의 최종보고서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

전문가들은 관련된 사항을 계산 및 정리하는데, 여기에는 적용대상 구분과 정보제공의무에 의한 총비용, 정보제공의무 한 부분에 대한 총비용, 규제에 의한 총비용, 부처별 조직단위에 의한 그리고 부처에 의한 총비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것은 절차 14에 있어서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 2. 절 차 14 :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로의 이전

절차 14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진행된다.

- 부문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부처와 선진규제국의 동의를 전제로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제출하는 것
-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된 부문별 보고서를 인정함
-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부문별 자료를 해당부처와 선진규제국에 보내는 것
- 일반 기준 등과 같이 보다 큰 규모의 산정을 위한 일반적인 보고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선진규제국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것

전문가들은 모든 결과를 수록하고 사용된 방법 및 고려사항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검토를 통해서 선진규제국과 담당부처가 이를 승인하여 감시단에 제공된다. 일단 보고서가 최종 승인되면, 전문가들은 선진규제국이 제공한 자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해당 부처와 선진규제국에 자료를 보낸다. 선진규제국은 이 자료를 승인한다.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범위의 측정이 수행되는 부분에서는, 전문가는 보다 일반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해서 선진규제국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4 절 표준비용의 산정**

표준비용모델은 실용적/기능적(pragmatic) 관점에서 각종 규제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을 계량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행정부담의 측정은 행정비용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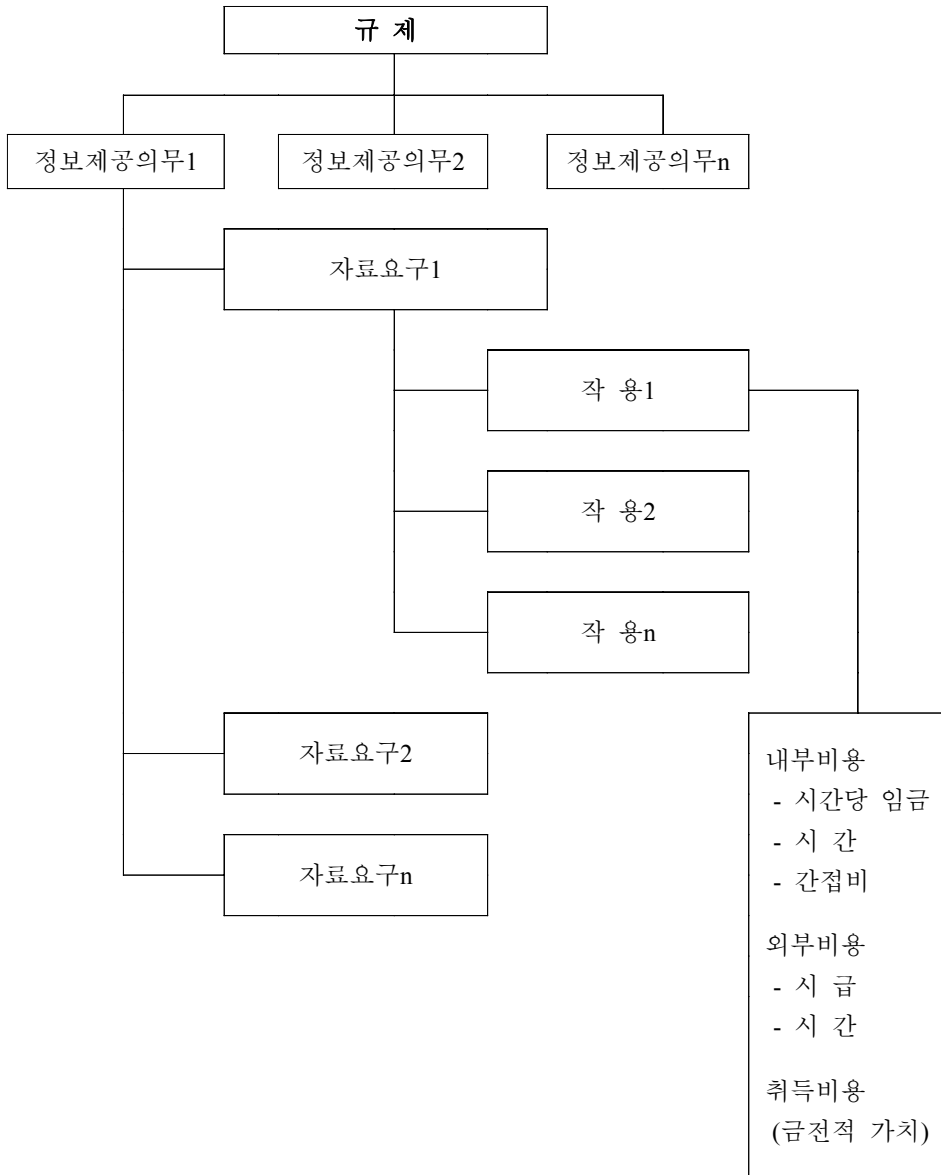
록 자세히 분해(break down)하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우선,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개별 요소들로 분석하여 해당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를 검토하여 각종 자료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자료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행정활동비용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아래 그림은 규제의 요소들이 어떻게 분해되고 다시 조합되는지를 그 요소별로 나타낸다. 개별 행정활동들에 관련된 비용 산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비용은 단순하게 각각의 자료제출요건에 따라 더해지고, 이것이 정보제공의무와 그 상위의 규제비용으로 산정된다. 규제비용의 각각의 부분은 기업에 부과된 행정비용의 총계로 파악되기 위해서 합산된다. 결국은 이러한 합산으로 전체적인 산정이 가능한 것이다.

표준비용모델 매뉴얼 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산정의 방법과 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으나, 부록에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실제로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비용의 측정이 영국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평가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산정된 비용은 표시적/기능지향적임을 주의해야 한다. 즉, 특정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부담이 정확히 얼마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규제부분이 어떠한고, 규제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어느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인가를 비교하여 비용감축을 위한 근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표준비용 모델의 구조 ]



## 제 4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 상당히 낙후되어있다는 조사를 근거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개선사항과 대안이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조사들 중에는, 행정비용과 부담을 줄이고자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이 국내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제 그러한 평가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합당한 표준비용모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근거한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I.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규제의 간소화와 합리적인 개선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의 존재에 관하여, 영국의 예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정부예산의 수립과 결산을 감독하는 기구가 존재하듯이,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정부기관 중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영국의 기업, 산업 및 규제개혁부(BERR)와 선진규제국(BRE)의 관계, 조직체계와 구성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 등 해당기관의 운영과 구성에서 참고할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39)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은 심사대상이 되지 못한다[이종한, 앞의 보고서, 217면].

우선, 담당기관의 조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착안할 수 있는 사항은, 국내 규제에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을 전제로 규제의 개선과 비용감축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선진규제국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선진규제국은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관들의 행정규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보다 나은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연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의 상설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기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는 표준비용모델 자체의 개선과 평가의 기준자료에 대한 꾸준한 갱신작업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선진규제국이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I. 개념정의와 모집단의 범위 설정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관련하여, 표준비용모델 자체는 기준과 체계가 무척 객관적이기는 하지만 적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개념들의 정의와 범위 또는 모집단의 구성에 따라서 얻어진 행정비용의 측정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모집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행정비용 산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측정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느 규제가 가장 큰 행정부담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행정부담의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어느 부서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자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은 모집단 자체를 최대한 객관화하거나 다양하고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적용사례와 기준들은 이러한 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을 것이다. 영국 표준비용모델은 여러 가지 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

하여 다른 국가들의 모델과는 그 구성면에서 약간 다른 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측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요소들의 정의와 측정범위,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측정의 주요사항을 관장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측정의 방식에 관한 고려사항에서 유럽의 표준비용 모델의 기준 등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대한 전제조건이 되는 개념정의 또는 범위 설정의 문제는, 유럽 전체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 네덜란드 및 유럽 표준비용모델과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네덜란드	유럽연합	영국
목표/목적	기업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의무비용만을 평가, 국내적 및 비국내적으로 구분	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시민에게 부과되는 순행정비용을 평가, 국내적, 유럽연합 및 국제적으로 구분	기업, 자선활동, 자발적 영역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부과된 행정비용을 평가, 국내적, 유럽연합, 국제적으로 구분
	미시경제적 목적(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 단순화)	미시경제적 목적(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 단순화)	미시경제적 목적(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 영향평가)
	거시경제적 목적(경제 전체의 행정부담을 측정)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음	거시경제적 목적(경제 전반에 걸친 행정비용을 측정)
행정비용의 정의	행정부담은 정부가 입법 및 규칙에 의하여 부과하는 정보 제공의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행정의무란 기업체, 비영리법인, 행정관청 및 시민들이 그들의 활동이나 그들의 제품 또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행	행정비용이란 기업이 정부규제에 의해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정작용에 따른 비용

제 4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네덜란드	유럽연합	영국
		정관청이나 기타 민간 기관에게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일회성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일회성비용도 고려될 수 있음	기준측정에 있어서 일회성비용은 고려되지 않으나 반복성비용은 평가에 고려됨
	기업이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련한 질문은 제정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없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된 행정활동 다만, 어떠한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행하는 것은 행정의로 간주되지 않음	중앙정부 규제에 의하여 요구된 행정활동에 대한 모든 비용이므로 규제가 없었더라도 기업이 계속 행하였을 활동에 대한 비용도 포함
핵심산식	$\sum P \times Q$ 가격(Price) = 요금×시간 수량(Quantity) = 업무수×빈도수	$\sum P \times Q$	$\sum P \times Q$ 가격(Price) = 요금×시간 수량(Quantity) = 기업의 수(모집단)× 빈도수
	근로비용과 간접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무에 따른 중요한 인풋을 상징	적절한 경우에 임금 및 간접비외에 다른 비용유형을 고려	임금, 비임금비용, 간접비와 같은 대내적 비용과 계약비용과 같은 대외적 비용이 고려됨
범위와 빈도	모든 규제제한 및 적용되는 모든 법령에 방법론을 적용	주요한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제안 및/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가 있는 모든 기업 관련 규제가 측정의

	네덜란드	유럽연합	영국
		특별한 부담으로 확인된 법령에게 적용	대상에 포함, 또한 EU규범과 국제조약들은 국내에서 실행되는 범위에서 측정의 대상에 포함
	예외적 및 (불확정적인) 중요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한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행정활동에 적용	대부분의 사례에서 최초에 나타나는 가장 부담이 따르는 활동에게만 적용(활동당 요구되는 시간 및 빈도에 기초)	예외적 및 (불확정적인) 중요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한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행정활동에 적용
	4-5년 주기로 심사	사례별로 주기를 정하여 검토	규제의 실행 후 3년 뒤 검토
기대된 정확도단계 및 데이터 출처	주로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고차원의 정확성을 추구	정확도 단계는 그 중점적인 편익(적합성) 및 회원국들의 협조단계에 상응한 평가비용에 의존 예외적인 경우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고차원의 정확성을 추구(회원국샘플 및/또는 기업집단샘플을 한정)	모집단의 확대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정확성 추구
	국내 등록부 및 통계를 활용	표준적인 사례에서는 회원국연구, 표준비율, 유럽연합통계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측정	국내 등록부 및 국가통계원이 발행한 산업분류기준(SIC) 등과 같은 통계자료를 이용

	네덜란드	유럽연합	영국
규제원의 결정	7단계절차	3단계절차로 간소화	4단계의 측정절차 (14단계로 세분화)
책임소재	범부처기관(IPAL)의 감독하에 당해 규제제안 및 부문별 입법과 관련한 개별 공공기관이 평가, 독립기관에 의한 감독 (Actal)	우선적으로 회원국이 전형적인 자국기업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실행, 집행위원회는 무엇이 필요하며 데이터수집에 관한 방침을 설정	담당 정부부처기관과 선진규제국(BRE) 주도로 규제실행 및 규제에 따른 영향 (행정비용발생) 평가

### Ⅲ.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규제개혁의 연결

표준비용모델의 측정 결과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노력은 규제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선별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그러한 노력을 배분하는 객관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더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규제개혁과 비용감축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는지 또는 영국의 규제개혁 및 비용감축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0)</sup> 이러한 연구는 영국의 표준비

40) 표준비용모델의 측정과 이에 근거한 규제개혁 및 비용감축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표준비용모델 지침(행정부담-행정부담 감축 방안, Administrative Burdens-Route to Reduce)의 번역부분을 참고할 것.

- 환경인증프로그램
- 동물약품규제의 간소화
- 도량형 규제 간소화
- 1992년 해양장비안전확보 명령의 재검토
- 영국 국제무역 단일화 창구

용모델에 관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적용에 따른 규제개혁사례의 분석이 우리나라에서 규제완화와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한 우리 상황에서 객관화하거나 보편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객관화와 보편화는 영국의 사례나 기준이 우리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차이를 발견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규제개혁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규제나 해당 기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선의지를 전제로 한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정책들이 표준비용모델방법론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존재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sup>41)</sup> 또는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sup>42)</sup> 등이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 IV. 기반자료 등 표준화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간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적용하도록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되어야

- 
- 보상회복단 전자체계
  - 세법 개정 사업(TLR)
  - 공동수산정책의 규범에 대한 간소화 및 명확화 작업

41)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홍완식·장교식·김병연·윤광진·차현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 현안분석 2008-29, 한국법제연구원]을 참고할 것.

42)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찬호·한동훈,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종합보고서”, 현안분석 2008-24, 한국법제연구원]을 참고할 것.



한다.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측정기준은 매뉴얼 뿐만 아니라, 이것의 부록에도 자세히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사항들 중에서도 중한 것이 바로 해당 통계자료이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해서 요구되는 통계자료들은 각종 평균임금, 기업의 업종에 따른 분류, 비용의 종류와 각종 평균비용 등 무척 다양하다. 영국 표준비용 모델은 영국 국립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들을 활용하도록 하였다.<sup>43)</sup> 이러한 통계자료는 계산에 적용하기에 용이하여야 하며, 근거가 명확하거나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들이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통계자료의 획득과 관련하여, 모델을 적용하려는 기관과 담당 기관 사이의 차이나 협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계자료와 근거의 표준화라는 전제조건과 표준비용모델 적용을 위한 개선이라는 목표를 낳을 것이다.

---

43)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는, 본 매뉴얼의 ‘부록 2 : 연관 시간당 급여과 관련된 직업군’을 참고할 것.

## 참 고 문 헌

- 김상헌 외, “행정조사 준비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규제학회·국무총리실, 2008. 12
- 김정해·임준형·박형준,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 노혁준,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I) - 영국”, 현안분석 2008-18,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박영도,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 - 영국, 독일의 규제개혁 입법동향”, 현안분석 2008-16,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현안분석 2007-11,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찬호·한동훈,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종합보고서”, 현안분석 2008-24, 한국법제연구원
- 안혁근,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 KIPA 연구보고서(2007-21), 한국행정연구원, 2007
- 이종한,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6
- 이준호,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규제개혁 보고서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9. 1
- 홍완식·장교식·김병연·윤광진·차현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 현안분석 2008-29, 한국법제연구원

참 고 문 헌

Better Regulation Executive,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 UK Standard Cost Model Manual” (Version : 1.01), 29 September 2005

Better Regulation Executive,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 UK Standard Cost Model Manual, Annexes” (Version : 1.01), 14 September 2005

Better Regulation Executive, “Administrative Burdens-Routes to Reduction”, September 2006

David Arculus at al., “Regulation-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A BRTF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2005

Philip Hampt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2005

Better Regulation Executive(BRE), <http://www.betterregulation.gov.uk>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BERR), <http://www.berr.gov.uk>

SCM Network,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

부  
속

[부록 I]

**행정비용의 측정 :**  
**영국 표준비용모델 매뉴얼**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UK Standard Cost Model Manual**

1.01 판

2005년 9월 29일

**내각사무처 선진규제국**  
**(Cabinet Offic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목 차

1. 서 설 .....	81
1.1. 목 적 .....	81
1.1.1. 표준비용모델 측정의 다양성 .....	82
1.2. 본 매뉴얼에 관하여 .....	83
2. 표준비용모델 : 개 관 .....	84
2.1. 행정비용의 산정방법 .....	85
2.1.1. 행정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85
2.1.2. 정보제공 의무란 무엇이며 그 요소는 무엇인가? .....	86
2.1.3.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87
2.1.4. 정부규제란 무엇인가? .....	87
2.1.5.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87
2.2.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	88
3. 표준비용모델 : 상세설명 .....	90
3.1. 정의와 개념 .....	90
3.1.1. 직접적 재무비용 .....	90
3.1.2. 준수 / 정책비용 .....	90
3.1.3. 행정부담 대 행정비용 .....	91
3.1.4. 행정비용 .....	91
3.1.5. 행정부담 .....	91

3.1.6. 정보제공의무	92
3.1.7. 자료요구	92
3.1.8. 행정활동	93
3.1.9. 기 업	93
3.1.10. 정 부	94
3.1.11. 비정부	94
3.1.12. 규 제	95
3.2. 비 용	96
3.2.1. 비용변수	96
3.2.2. 가 격	97
3.2.3. 요 금	97
3.2.4. 시 간	98
3.2.5. 수 량	98
3.2.6. 취득비용	99
3.2.7. 정상적 효율기업	100
3.2.8. 일회성 비용과 반복성 비용	100
3.3. 규제의 근거	101
3.4. 측정의 적용범위	104
3.4.1.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규칙실행이 측정된다.	104
3.4.2. 모든 강제적이고 자발적인 규제들	104
3.4.3. 완전준수	105
3.4.4. 행정비용의 환급을 포함한 규제	106
3.4.5. 불확정 요건	106
3.4.6. 지리적 적용범위	107
3.5. 분 류	107

3.5.1. 기업의 규모 .....	107
3.5.2. 산업분야 .....	108
3.5.3. 전자정부 운영체계(e-government solution) .....	109
3.6. 규제의 흐름과 기준의 갱신 .....	110
3.6.1. 새로운 규제의 흐름 .....	110
3.6.2. 표준비용모델과 규제영향평가 .....	111
3.6.3. 산정 절차 .....	111
4. 산정과정 .....	112
4.1. 측정단계 0 - 시작 .....	115
4.2. 측정단계 1 - 조사준비 .....	116
4.2.1. 절차 1 :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그리고 행정활동에 관한 조사와 원인별 구분 .....	117
4.2.2. 절차 2 : 관련 규제의 확정과 경계설정 .....	118
4.2.3. 절차 3 : 적용대상의 분류 .....	118
4.2.4. 절차 4 :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의 파악 .....	119
4.2.5. 절차 5 : 기업과의 인터뷰와 전문가의 평가 .....	120
4.2.6. 절차 6 : 비용변수의 파악 .....	120
4.2.7. 절차 7 : 인터뷰 지침의 준비 .....	121
4.2.8. 절차 8 : 절차 1-7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	121
4.3. 측정단계 2 - 시간 그리고 비용자료 수집과 표준화 .....	122
4.3.1. 절차 9 : 인터뷰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정 .....	122
4.3.2. 절차 10 : 기업과의 인터뷰 .....	124
4.3.3. 절차 11 : 각 활동별 적용대상부분의 시간과 자원 측정의 완료 및 표준화 .....	124
4.3.4. 절차 12 : 절차 9-11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	125



4.4. 측정단계 3 - 추산, 자료제출 그리고 보고서 .....	125
4.4.1. 절차 13 : 실증된 자료를 통한 국가차원의 통계추정 ...	125
4.4.2. 절차 14 :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로의 이전 .....	126
5. 구체화된 산정지침 .....	127
5.1. 표준비용분석의 범위에 있어서의 경계문제 .....	127
5.1.1. 불만처리 .....	127
5.1.2. 자영업과 기업의 차이 .....	128
5.1.3. 조사에 의한 행정비용의 산정 .....	128
5.1.4. 재판, 법정소송 그리고 조사 .....	129
5.1.5. 시작 그리고 첫 준수 .....	129
5.1.6. 지침을 보는 것 .....	130
5.2. 규제를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로 분석 .....	130
5.2.1. 정보제공의무 : 표준유형들 .....	131
5.2.2. 자료요구의 분류 .....	133
5.3. 행정활동의 식별 .....	139
5.4. 원인에 의한 자료요구의 분류 .....	141
5.5. 규제의 확정 .....	142
5.6. 기업분류 .....	144
5.6.1. 기업규모 .....	144
5.6.2. 산업분야 .....	144
5.6.3. 전자정부화 .....	145
5.6.4. 다른 분류 문제 .....	145
5.6.5. 산업분야분석에서의 한계 .....	147

5.7. 모집단, 비율 그리고 빈도수에 대한 구체적 기술	148
5.8. 기업에 대한 인터뷰와 전문가의 평가	152
5.9. 비용변수의 파악	153
5.9.1. 내부 업무그룹	154
5.9.2. 간접비	155
5.9.3. 외부 서비스 제공자	155
5.9.4. 취득물	156
5.10. 인터뷰 지침의 준비	157
5.11. 인터뷰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택	159
5.12. 기업 인터뷰의 수행	160
5.13. 정상적 효율기업의 식별	162
5.14. 기업 분야 대 활동 대비 시간과 자원 소비의 표준화	164
5.15. 보 고	164
5.15.1. 결과의 발표	166
<b>【별첨 1】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상 차이</b>	169
<b>【별첨 2】 연관 시간당 급여과 관련된 직업군</b>	177
<b>【별첨 3】 간접비용 비율</b>	201
<b>【별첨 4】 자료 체계</b>	203
<b>【별첨 5】 보고 틀</b>	219

## 1. 서 설

3월 16일 예산안에 따라, 재무장관은 영국정부가 BRTF(Better Regulation Task Force)와 Hampton Review의 보고서들을 수용하였다고 발표했다.

BRTF 보고서의 권고 1은, 영국이 표준비용모델을 채택하여 2006년 5월까지 이를 영국 내 행정부담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안내서는 영국 내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네덜란드 모델로 알려진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 SCM)은 행정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골격을 제공한다. 영국 내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체적인 이행이나 방법에서의 선택이 필요하다.

측정수치들을 비교하고 정부전체의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산정에 있어서 지속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비용과 장기간의 절차인 통계적 측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절감목적을 수립하고 특정된 분야에 집중하기 위하여 대상의 범위에 관한 표시적 자료를 제공하는, 보다 실질적인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본 모델은 최대한 오차까지도 포함하여 정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 1.1. 목 적

본 목적은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부과된 행정부담을 산정하는 체계를 도출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정책담당자들이 그러한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은 부담경감의 목적을 위해서 실용적이고 일목요연한 방법이 적용되도록 기능지향적이어야 한다.

본 체계는 정부의 정책수립에서 보다 나은 규제를 실현하도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본 체계는 영국의 규제개혁절차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며, 정책수립과 검토에 있어서 관련 비용과 효과는 정책 목적을 충족하는 과정 중 부과되는 행정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와 평가에 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BRTF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사용된 바 있는 국제표준비용모델을 채택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만,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적 관행으로부터의 변용이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유럽연합과 OECD가 행정부담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서 표준비용모델과 그것에 기초한 방법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다.

#### 1.1.1. 표준비용모델 측정의 다양성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측정은 법률안, 명령제정안 기타 의안으로 인한 예상 가능한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어느 행정규제의 적용 이전에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행정비용에 대한 ‘사전적’ 측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적 측정의 결과는 공공분야, 산업, 국민, 환경 등에 대한 어느 법률안의 경제적·행정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표준비용모델 측정은 이미 시행된 법률과 제정 규범들이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과 결과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정은 행정비용의 사후적 측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행정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사후적 측정은, 이른바 기준측정(Baseline measurement)이라고 하는 해당 분야의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비용의 선행평가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기준측정은 특정시점에서 규제를 따르는 기업이 부담하는 전반적인 행정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기준측정은 선별된 규제분야 또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에 관하여 이루어진다.

사후적 측정은 새로운 규제나 규제의 변경에 따라 기준측정을 갱신하기 위해서 수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이는 보다 광범위한 평가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실행 후 3년이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경우에 규제실행 당시 도출된 행정비용의 사전적 측정을 재검토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 BRE)은 사전적 측정과 사후적 측정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화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이 특정 정부부처의 특별한 규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정부부처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수행되어야만 한다. 실제 측정작업은 일반적으로 외부자문에 의한다. 사업자 단체 역시 관여해야 한다.

## 1.2. 본 매뉴얼에 관하여

본 안내서는 표준비용모델 측정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안내서의 목적은 표준비용모델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이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발행할 수 있는 중요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변동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이 방법이 새로운 분야에 적용되거나 새로운 문제와 관련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요소가 일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안내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갱신될 것이다.

본 안내서는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며, 덴마크 안내서의 네 번째 판을 기초로 한다.

본 안내서는 전체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 두 개의 장은 표준비용모델을 설명하는데, 제2장은 표준비용모델의 개략적 내용을, 제3장은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산정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제5장은 보다 세부적으로 실제산정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몇 개의 부록이 추가되었다.

## 2. 표준비용모델 : 개 괄

표준비용모델은, 정부가 기업에 부담시키는 행정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간소화하고 견실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산정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정책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통계적인 표식 대신 직접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표준비용모델은 규제에 관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요소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각 규제의 정책목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방식에 따른 평가는, 규제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규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행정작용의 평가에만 초점을 둔다.

표준비용모델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전하였고 덴마크에서도 적용되었다. 다른 많은 국가들도 특정 규제의 부담을 산정하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국제 표준비용모델 기준이 행정부담선언(Administrative Burden Declaration)에서 설정되었는데, 이 선언은 개괄적인 표준비용모델과 국제 표준비용모델 편람도 마련하였다.

표준비용모델은 매우 상세한 사항들을 행정비용의 산정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개별적인 행위 수준까지 세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단지 산정일 뿐이며 제한된 표본에 의한

것이므로, 무작위가 아닌 표본적인 도안이 통계적 관점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비용모델 적용방법에 의한 기업들의 시간과 자원 소비에 대한 평가가 개별적인 규제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양국에서 이용한 방법들 보다 더 효과적임을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이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장점에 더하여, 표준비용모델은 매우 기능지향적이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단순화된 규제계획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기업이 준수하기에 특히 어려운 특정규제에 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본 장은 표준비용모델 방식의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2.1. 행정비용의 산정방법

정부의 기업규제에 관한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에 관한 물음을 해소하여야 한다.

- 행정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정보제공의무란 무엇이며 그 요소는 무엇인가?
-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정부규제란 무엇인가?
-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2.1.1. 행정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비용을 단순화하고,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정보제공의무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업이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

적 활동에 관한 비용이라고 정의한다. 표준비용모델은 잠재적으로 반복될 행정비용에 초점을 둔다.

단, 여기서 표준비용모델은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부가적인 부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비용을 산정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은 규제의 존재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용은 기업활동의 중간에 섞이기 때문에, 이를 부담으로부터 구별해 내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다.

### 2.1.2. 정보제공 의무란 무엇이며 그 요소는 무엇인가?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 - IO)란, 특정 규제가 정보와 자료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이다. 정보제공의무는 반드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이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위해 이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많은 정보제공의무를 포함하게 된다.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는 하나 또는 복수의 자료요구(Data requirements)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자료요구사항은 정보제공의무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개별적 요소에 해당한다.

각각의 자료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행정작용이 수반된다. 표준비용모델은 이러한 개별적인 작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용 또는 활동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외부적으로는 외주제작에 의하기도 한다. 특정 활동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취득비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러한 취득비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면 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 2.1.3.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이란 국가회계상 국립통계청이 사적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모든 단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선단체를 포함한다.

### 2.1.4. 정부규제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부란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규제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란,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조직이다. 여기에는 모든 기관과 독립적 단체가 포함된다.

규제란,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재정지원 또는 정부사업 참여 등에서 부적격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파악되어야 하며, 법률제정과 이를 보충하는 정부의 비법령적 계획과 협약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공식적인 제재를 받게 됨을 의미하며, 결국은 실제에서는 강제적이 되는 것이다.

### 2.1.5.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각각의 작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용변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가 격 : 가격은 요금, 내부 활동에 대한 임금비용(간접비와 비임금 비용 포함)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간당 보수 그리고 시간, 즉 행정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총량으로 구성된다. 임금에 관한 자료는 통계로부터 얻는다. 외부 비용은 국가 평균통계를 사용한다.

[부록 1]

수 량 : 수량은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모집단)와 매년 해당 작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빈도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이 다음과 같은 표준비용모델의 기본공식으로 된다.

$$\begin{aligned} \text{행정비용} &= \text{가격} \times \text{수량} \\ &= (\text{요금} \times \text{시간}) \times (\text{기업의 수} \times \text{빈도})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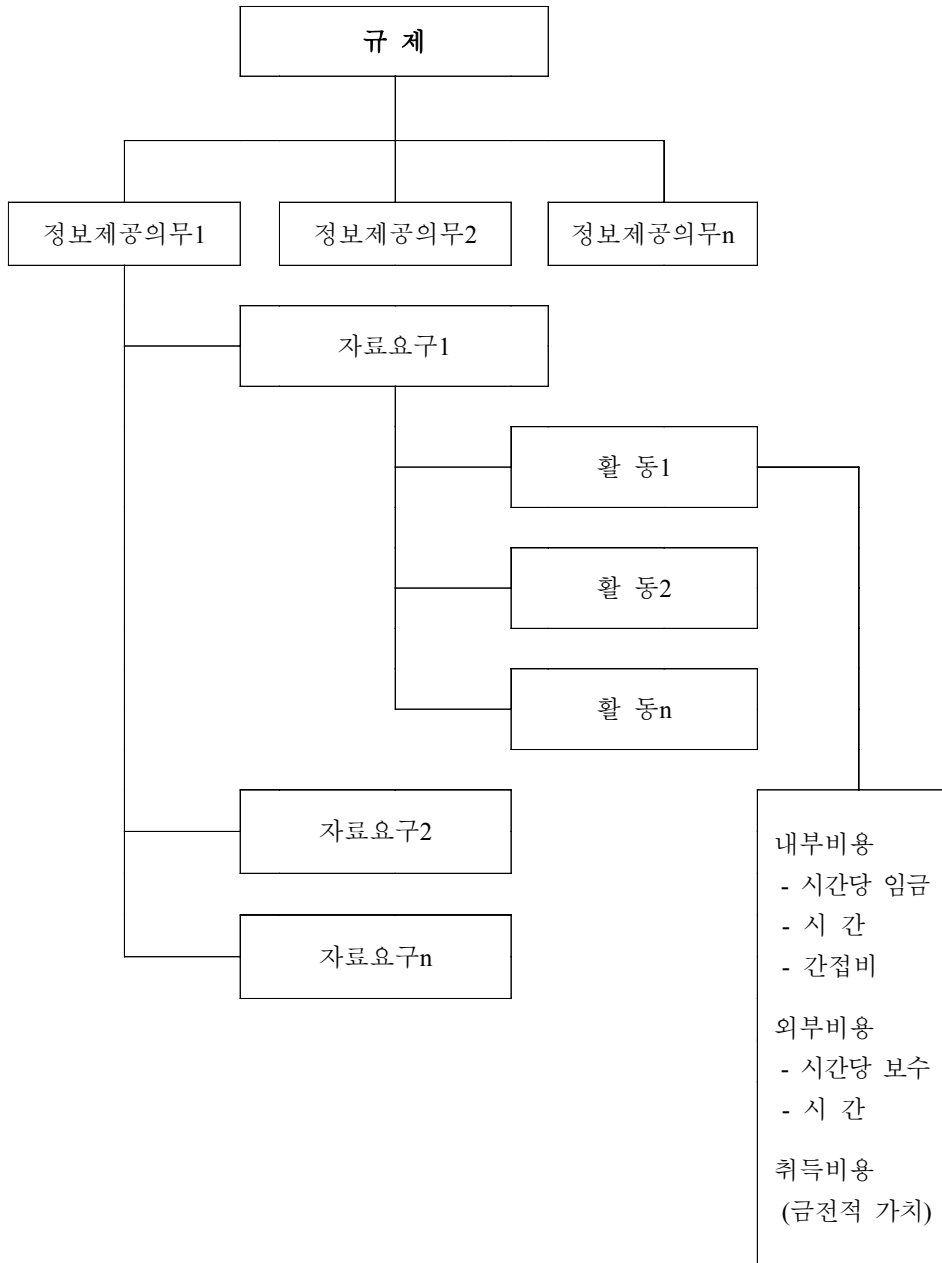
일년동안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 평균비용으로 수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를 곱하여 1년의 총비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어느 행정작용을 완료하기 위해서 3시간이 필요하고(시간), 기업의 해당직원에게 대한 시간당 임금이 10파운드(요금)이라고 하면, 이 경우의 가격은  $3 \times 10 = 30$ 파운드가 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100,000개의 기업들에 적용되어야 하고(수), 각각의 기업이 해마다 두 번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빈도), 수량은 200,000이 된다. 따라서 총 행정비용은  $200,000 \times 30 \text{파운드} = 6,000,000$ 이 되는 것이다.

## 2.2.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림1은 규제의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나타낸다. 개별 수행활동에 관련된 비용 산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비용은 단순하게 각각의 자료요구에 따라 더해지고, 이것이 정보제공의무와 그 상위의 규제비용으로 산정된다. 규제비용의 각각의 부분은 기업에 부과된 행정비용의 총계로 파악되기 위해서 합산된다. 이러한 합산으로 전체적인 산정이 가능하다.

그림 1 : 표준비용모델의 구조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산정액은 기록되어 표시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지 몇 가지 표본만을 이용했을 뿐이며, 그러한 이유로 부담이 얼마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규제부분이 어떠한고, 규제부과의 측면에서 어느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자인가를 나타낸다.

### 3. 표준비용모델 : 상세설명

본 장에서는 영국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이 설명에는 모델과 관련된 모든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포함하고 모델의 다른 특징들을 기술한다.

#### 3.1. 정의와 개념

##### 3.1.1. 직접적 재무비용

직접적 재무비용은 비용을 정부 혹은 관련 기관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의 결과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비용은 정부 각 부서에서 정보제공을 위한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한 비용은 행정적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허가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규제에 따른 직접적 재무비용이다.

##### 3.1.2. 준수 / 정책비용

준수비용은 직접적 재무비용을 제외한 규제에 따른 모든 비용이다. 표준비용모델에서 준수비용은 ‘실질적 준수비용’과 ‘행정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 준수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환경적 요구에 따른 여과장치
- 근무조건규제에 부합하는 물리적 시설
- 특정 자격증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

### 3.1.3. 행정부담 대 행정비용

표준비용모델은 사업과 관련된 행정비용을 산정한다. 여기서는 행정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행정비용이 행정부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3.1.4. 행정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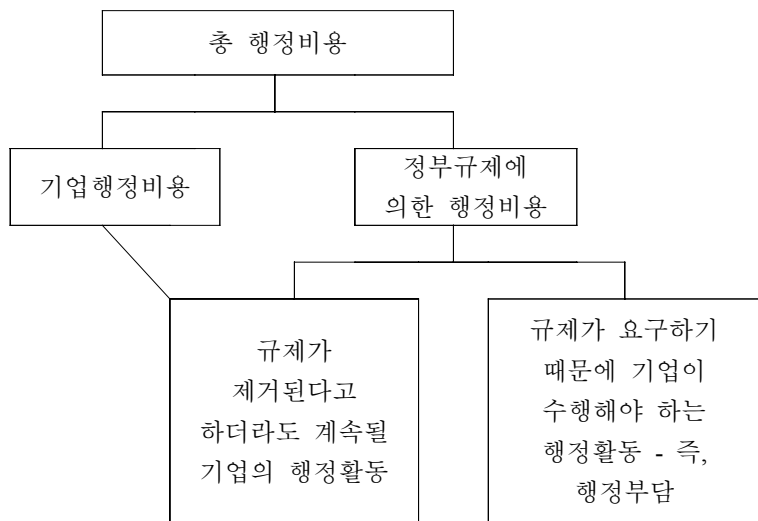
기업이 정부규제에 의해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정작용에 따른 비용이다.

### 3.1.5. 행정부담

규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이다.

따라서 행정부담은 행정비용의 부분집합이다. 이러한 행정비용은 규제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계속 수행할 행정활동을 포함한다.

그림 2 : 행정비용과 부담



표준비용모델은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가 없었더라도 기업이 계속 행하였을 활동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적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행위와 규제의 요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하지 않은 행정행위 등, 규제와 관계없는 행정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3.1.6. 정보제공의무

표준비용모델측정의 저변에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기본적 개념은, 규제의 결과 기업이 정부에 제공하고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정보제공의무’라고 한다.

정보제공의무는 기타 감사, 방문 또는 조사를 허락하고 협조하는 등 정보의 수집 및 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더하여 정보를 획득 또는 준비하는 의무이고, 그 결과로서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매년 개정되는 규정으로서 지시 및 개정법을 해석하기 위한 통상적인 요구를 포함한다. 이 의무는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자금조성, 허가 그리고 다른 사업에 부적합하지 않으면 기업이 거부할 수 없다.

정보제공의무는 반드시 기업이 정보를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후생과 안전평가와 같이 기업자체가 정부의 요청 외에 어떠한 요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공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 3.1.7. 자료요구

각 정보제공의무는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일련의 여러 정보 또는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자료요구이다.

예를 들어, 연차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기업은 경영보고서와 확인서류, 대차대조표 등과 같은 일련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1.8. 행정활동

기업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한 시간과 재화의 소비는 각 기업의 행정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각 활동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특정 업무 또는 처리절차이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그러한 정보를 통해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양식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과 같은 수많은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활동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기업이 작성하여야 하는 서면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정보제공의무를 충족시키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는 전자양식, 서면양식, 온라인양식 또는 콜센터와의 연락 등의 방식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3.1.9. 기 업

이 표준모델에 의한 측정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포괄한다. 오직 외국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측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행해지는 통신 판매는 이 측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이라는 용어는 국가회계의 목적에서 통계청에 의해 행정과 공공서비스로 정해진 공적분야를 제외한 모든 경제분야를 의미하는 것

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의는 영업, 자선사업 그리고 자발적인 분야까지 포함한다.

이 보고서에 있어서, ‘사업’과 ‘회사’에 대한 모든 언급은 자선사업에서의 기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위의 정의는 해당 규제가 사업을 언급했는지 또는 그러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집단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 3.1.10. 정 부

이 측정에 있어서 정부는 중앙정부 자체에 의해 주로 통제되고 자금이 조성되는 모든 조직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모든 정부기구를 포함하는데, 심지어 대사관처럼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그러하다. 행정부담 산정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는 모든 책임운영기관과 차상위 기관, 비정부공공기구, 규제처 그리고 일부 부서가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독립기구까지 포함하여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범위에서 표준비용모델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순수한 지방정부의 규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중앙정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비록 지방정부가 위와 같은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더라도, 단순히 위임된 행정은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1.11. 비정부

이익단체, 외국대사관, 그리고 OECD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어느 국가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의 지국들은 정부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 3.1.12. 규 제

규제란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기업이 법에 위반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나 사업참여 등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정부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인 권한과 기타 실행계획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EU의 규제들
-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의회의 성문법규 조항들
- 성문화된 규범들
- 합법적 권한 아래에서 장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 제정된 규칙, 명령, 계획, 규제들
- 중앙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특정 자격과 허가들
-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실무관례
-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침
- ‘승인된 관례’와 같이 정부가 승인한 실무관례/지침/자치규범/산업협약 등
-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된 하위규범들

다음은 제외한다.

- 정부의 승인이 없는 실무관례/지침
- 정부의 승인이 없는 자치규범/산업협약을 포함한 기업간 임의적 합의들
-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없이 지방정부의 조치로부터 기인한 의무
-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인의 의무와 같은 보통법에서 기인한 의무
- 지방기관의 하위규범들과 순수한 지방기관의 규제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장관 및 의회로부터 수권된 정책 위임분야

정책입안자들이 단순히 표준비용모델에서 정의된 행정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동일한 정도의 부담이 요구되는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특정 정책의 선택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전환과 관련된 규제영향평가(RIA)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BRE가 조사할 것이다.

## 3.2. 비 용

### 3.2.1. 비용변수

행정활동과 관련된 소비의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 행정활동과 관계된 비용변수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변수는 개개의 행정활동에 있어서 지출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에 포함되는 비용변수는 다음과 같다.

대내적 비용변수

- 시 간
- 요 금(시간당 비용 + 간접비 그리고 비임금비용)

대외적 비용변수

- 시 간
- 요 금(시간당 비용)

취득비용

이러한 비용변수는 어느 작용의 총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량적 변수와 결합한다. 이 요소들과의 결합은 표준비용모델의 기본공식이 된다.

$$\begin{aligned} \text{활동비용} &= \text{가격} \times \text{수량} \\ &= (\text{요금} \times \text{시간}) \times (\text{인구수} \times \text{빈도}) \end{aligned}$$

### 3.2.2. 가 격

비용변수는 표준비용모델에서 가격요소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이는 요금, 활동이 대내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임금비용(간접비용과 비임금비용 포함)과 대외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시간당 비용과 투입된 시간, 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총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임금에 관한 정보는 통계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외부비용에 관해서는 국가평균자료가 사용된다.

### 3.2.3. 요 금

대내적 요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총임금. 이것은 전형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려고 고용된자의 통계적 임금의 중간값이다.
- ▶비임금비용. 이것은 휴가수당, 고용주의 보험료와 국가고용보험에 따른 비용이다.
- ▶재료(원료)와 간접비용. 재료비(원료비)는 행정의무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구입하는 모든 재료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설, 등록을 위한 재료, 상세 목록표 등을 위한 비용들이 포함된다. 간접비는 사무용품의 사용, 책상과 컴퓨터 및 기타 부속품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비용이다. 비록 재료비와 간접비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 품목들이지만,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관련사항에 있어서, 이 비용은 총임금 비용의 대내적 요금에 비할부가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대외적 요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계약비용 : 회계사, 법무업무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 관리사무소 등과 같은, 기업이 법률과 규제에 합치된 영업을 하도록 행정상·절차상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의 비용이다. 이 비용은 대개 상업상 비율(총임금을 근거로 하는)과 상쇄된다. 국가평균비용은 서비스의 각각의 유형을 위해 사용된다.

### 3.2.4. 시 간

가변적인 시간은 기업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분 또는 시단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예 : 가격의 산정

기업가 X는 규제에 따라서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회계사 사무소를 통해 고용한 회계사를 이 회계 업무에 사용하려고 한다. 이 회계사의 경비는 시간당 200파운드이다. 회계사는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총 30시간을 사용한다. 기업가는 회계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시간당 70파운드의 요금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격은 다음과 같다.

$$\text{가 격}_{\text{합계}} = \text{가 격}_{\text{대내적}}(70\text{파운드} \times 2) + \text{가 격}_{\text{대외적}}(200\text{파운드} \times 30) = 6,140\text{파운드}$$

### 3.2.5. 수 량

수량은 관련 기업 집단의 크기와 매년 완료해야 하는 작업의 빈도수로 이루어진다.

$$\text{수 량} = \text{모집단} \times \text{빈도수}$$

모집단

이것은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수를 나타낸다. 이것은 행정비용을 산정할 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그룹과 산정에 필요한 관련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빈도수

빈도수는 한 기업이 연간 정보 요구사항을 실행하는 횟수이다.

예 : 수량의 계산

연간 회계보고서(가격 산정을 위한 예 참고)를 작성할 의무는 기업 X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격체에 적용된다. 이러한 법인격체는 총 100,000 개이며, 그들은 1년마다 연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수량은 다음과 같다.

$$\text{수 량} = 100,000(\text{기업의 수}) \times 1(\text{빈도수}) = 100,000$$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의무에 합치하기 위한 총 행정비용은

$$\text{총비용} = \text{가격}(6,140\text{파운드}) \times \text{수량}(100,000) = 61,400,000\text{파운드}$$

### 3.2.6. 취득비용

이에 더하여 특정 구입들은 구매품이 존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평균 비용에 포함된다. 이 비용에 관련 모집단수 만큼 곱하는데, 문구류 또는 우편요금과 같은 것이 보편적인 구입 내용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기납봉투의 사용과 같은 일괄방식으로 이러한 비용은 정부가 지급한다.

### 3.2.7. 정상적 효율기업

표준비용모델분석의 근본적인 개념 - 그리고 측정의 단위 - 은 정상적 효율기업이다. 이것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행정업무를 시행하는 대상 모집단 내에서의 기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그들의 행정 업무를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표준비용모델의 목적은 규제의 출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특별하게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적 효율기업은 대상모집단 내에서 많은 전형적인 기업에 설문하면서 찾는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외주업체나 관련 전문가와의 설문도 여기에 포함된다. 설문의 목적은 기업이 정보 요구사항과 관련된 개별적인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찾기 위함이다. 기업들의 답변에서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작업이 필요하나, 만약 어느 설문작업결과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인 효율적인 기업을 위한 행정작용과 관련된 표준소비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더 많은 기업들과의 설문작업이 수행된다.

### 3.2.8. 일회성 비용과 반복성 비용

표준비용모델의 분석과정에서 규제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반복성 비용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회성 비용은 기업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사업활동에 있어서 신규업종으로의 전환이나 영업확장에 의한 경우처럼, 기존의 규제를 처음으로 준수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회성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다. 즉, 일회성 비용은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규범으로 발생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일회성 비용은 기준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영향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사전적 측정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러한 예로는, 해당 규제의 변경 결과로써 관련 기업이 지침서를 숙지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

반복성 비용은 어느 규제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를 기업이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출해야하는 행정비용이다. 그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일 것이다. 물론 기업이 수출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개개의 기업에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일 수도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나 허가신청을 위한 기업등록 등과 관련하여, 각 기업들이 한번의 경우에는 한번만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비용의 공통점은, 해당 기업의 상황에 연관되어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런 비용은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반복성 비용요소란 비용이 관련 비용을 경제전반에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업은 1년마다 혹은 그것보다 덜 빈번하게 특정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관련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비용은 반복되는 것이다.

반복성 행정비용은 사전적 및 사후적 단계 모두에서 측정된다.

### 3.3. 규제의 근거

기업의 행정비용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는 다음과 같이 그 근거에 따라 세 가지 주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부록 1]

A. EU규범 기타 국제적 의무에 따른 독점적이고 완전한 자료요구  
이러한 국제규범은 기업들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B. EU규범과 기타 국제적인 의무에 따른 자료요구. 규제의 목적은 해당 국제규범에 명시되지만, 실행사항(구체적인 자료요구의 명시를 포함)은 회원국에게 위임된다. 이러한 국제규범은 기업이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C. 국내법 수준에서 명시된 규범에 따른 독점적인 자료요구

자료요구는 관련 부처는 각 A,B,C의 유형 내에서 자료요구를 관련 전문가들의 표준화 작업에 따라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절차는 자료요구들을 A유형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유형 A - EU 지침

▶유형 A - EU 규칙

▶유형 A - 국제규범

자료요구의 모든 세 가지 A의 유형과 그것의 실행은 EU(EU-지침 또는 A-EU-규칙) 혹은 기타 A 국제규범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정보가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그 규범들이 명문화함을 의미한다.

국제규범들은 기업들이 어떠한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부처는 단기적으로 해당 행정부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류절차는 또한 B유형의 자료요구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유형 B - EU 지침



▶ 유형 B - EU 규칙

▶ 유형 B - 국제규범

유형 B 내에서, 자료요구는 EU규범(B-EU-지침 또는 B-EU- 규칙) 혹은 기타 국제적 의무(B-nternational)에 의한 결과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적 의무는 단지 그 목적만을 명시하는 것이고, 각 회원국이 그 실천사항을 자신들의 규범 내에서 나타낸다.

국제 규칙은 기업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제공해야할 자료요구를 명문화하는 것은 각국 스스로에 달려있다.

C유형의 규제는 한가지의 규제방식만을 포함하는데, 즉, 자료요구는 국내규범의 독점적인 결과이다. 정보제공의무와 그것의 실행사항 둘다 국내규범 차원에서 규정된다.

A, B, C유형의 분류는 영향력의 범위 내에 있는 행정부담의 여부 또는 그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를 구성한다. A유형 규제가 있으면, 이 유형은 원칙적으로 영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C유형의 행정부담은 독점적으로 영국의 직접적 영향에 있다. B유형은 위 두가지 유형의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그 구체적 실행의 정도가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분류는 두 가지 목적을 만족시킨다. 우선 이러한 분류는 부처의 규칙을 구성함에 균형있는 사항을 제공하고 단기간에 규칙의 일반화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많은 국내 규범(즉, 주로 C유형의 규제)을 수행하는 부처는, 예를 들어 EU의 원조 아래 명시된 규제(즉, A유형의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보다 단기간에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분류는 또한 장기적인 목적을 만족시킨다. 만약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비용이 정보제공의무가 규정된 EU 지침과 관련하여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분석은 해당 EU지침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4. 측정의 적용범위

#### 3.4.1.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규칙실행이 측정된다.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가 있는 모든 기업 관련 규제가 측정에 포함된다. 또한 EU규범과 국제조약들은 국내에서 실행되는 범위에서 측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제규칙은 국내법화를 통한 실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EU 규범은 국내법으로의 전환없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규범들 역시 감시와 집행 등에서 국내 실행사항을 필요로 한다. 국내실행 요건이 없는 경우, 그러한 규범들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규제들에 따른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이 영국의 국내법 단순화 계획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영국의 기준측정의 일부를 형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EU 차원의 법규단순화 계획을 고려할 때 부과된 부담을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질 것이며, 그러한 규제에 따른 부담을 평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할수도 있다.

#### 3.4.2. 모든 강제적이고 자발적인 규제들

측정되어야 할 규제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규제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제적인 규제와 기업이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가 그것이다.

기업이 강제적인 규제의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며 초래한 모든 비용은 표준비용모델 측정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제는 법률을 통해 강제되어지거나 명백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실상 강제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자발적인 활동 역시 표준비용모델 내에 완전히 포함된다. 그러한 예는 자격증 신청, 계획안 수행, 계획안 허가 등을 포함한다. 본 모델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해당 집단들이 요건을 100% 충족한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문제의 초점은, 큰 부담들과 같이 완전 충족에 대한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부담에 있다. 상당히 다른 수준의 충족이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규제의 목록화나 측정 절차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 3.4.3. 완전준수

일련의 규제들을 준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준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명시된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비용 또는 기업이 단지 규제의 일부분을 준수하여 발생한 실제적인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들이 규제에 명시된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기업들이 법률의 문언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이 의식적으로 규정의 일부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규제의 측정은 모든 관련 기업들이 그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는 실제 기업의 수 또는 개개의 기업들이 부분적인 규제를 따르는 것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된 규제들을 준수하면

[부록 1]

서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다. 핵심은 정부가 부과하는 잠재적인 부담에 관한 것이다.

#### 3.4.4. 행정비용의 환급을 포함한 규제

어느 경우에는 기업들이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여 행정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규제는 본 측정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그 환급의 표준 역시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환급내용이 표준비용모델에 계산된 비용과 크게 다를지라도 최초기준에는 그러한 규제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3.4.5. 불확정 요건

어느 규제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사건이 관련 기업의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간 단위와 같이 일정 기간에 해당 사건의 발생 빈도를 포함하여 관련 행정부담이 측정되어야 한다.

기타 불확정한 사건에 관련된 규제는 매우 적은 경우에만 측정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측정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담의 발생으로는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특정한 규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관련 정부당국이 판단한다면, 선진규제국에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그 포함가능성 여부를 질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유형은 규제의 목록에 기록되고 드문 불확정요건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측정에 관한 선진규제국의 결정사항 등도 역시 기록내용에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선진규제국에 그 내용이 제공되면서 요건의 배제를 위한 결정의 기준은 발전될 것이다.

### 3.4.6. 지리적 적용범위

중앙정부의 규제 아래 있는 모든 규제는 이 적용의 범위 내에 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그레이트 브리튼섬, 그리고 잉글랜드와 같이 각 부처들의 업무범위는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측정의 기본적 데이터베이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지리적 사항이 함께 보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어떤 유보된 권한이 어느 지역을 포함할지라도 제외된 행정범위는 이 적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3.5. 분 류

적절한 분류는 기업에서 비용/재원 구조와 특정 규제의 발생범위의 차이를 반영하는 측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또한 분석되어야 하는 특정 분야에서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실행을 위해 분류를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회사규모, 산업분야와 전자정부 운영체계(e-Government solution)가 그것이다.

행정부담의 기준의 측정을 위해 요구되는 분류의 단계를 정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목적은 측정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세밀하게 분류 하는 것이다.

### 3.5.1. 기업의 규모

크기가 다른 기업은 재원과 비용 제한의 차이가 있다. 규제의 변화가 다른 활동으로부터 재원을 끌어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작은 기업에 비해 큰 규모의 기업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록 1]

측정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네 개의 크기의 무리에 따라서 별도의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무리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서비스에 의해 정의된 내용을 사용한다.

▶최소규모(아주 작은) (0~9 피고용인)

▶소규모 (10~49 피고용인)

▶중간규모 (50~249 피고용인)

▶대규모 (250 또는 이상의 피고용인)

일부 규제에 결과는 이러한 분할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결과제시는 선진규제국과 담당 정부당국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용, 매출액 또는 위와 다른 피고용인의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나눈 규제는, 선진규제국이 승인한 분류내용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3.5.2. 산업분야

다른 산업분야들은 규제의 다른 측정단계에 직면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기업들은 다른 규정들에 더하여 추가적인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는 다수의 그러한 특정 산업 관련 규정들이 있을 수 있다.

정상적 효율기업에 기반을 두고 측정한 표준비용모델방식은 일반적으로 산업분야별 분류에 따른 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분야는 통계상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분야별 규제를 위한 측정은 규제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류되어야 한다. 대체로, 산업분야는 국가 통계원에서 발행된 2003 산업분류

기준(SIC 2003)을 사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서 SIC는 매우 특수한 영역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상세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관련 부처에서는 SIC분류에 따른 관련 분야와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를 포함하여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3.5.3. 전자정부 운영체제(e-government solution)

정보제공의무의 증가에 따른 전자적 방식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고, 보조금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다. 전자적 방식은 기업들이 전자통신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고 프린트하며 편지나 팩스에 의해 제출할 수 있는 형태는 전자적 방식이 아니다. 전자정부 운영체제는 콜센터 또는 전화응답 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 등록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전자정부 운영체제는 종이 서류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사용하는지 혹은 측정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동적 절차로부터 전자적 방식을 분리하기 위해 이를 분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전자적 방식의 실제상의 측정은 수동적 방식으로 인한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행정활동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 발달의 영향은 전자적인 방식과 수동적 방식의 시간 소요량의 비교로 나타낼 수 있다.

많은 경우, 전자적 방식은 더 넓은 전자정부 발전의 일부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당해 전자적 방식은 더 큰 발전의 일부로서 기록되어야 하고, 그 발전의 상세한 내용도 기록되어야 한다.

### 3.6. 규제의 흐름과 기준의 갱신

#### 3.6.1. 새로운 규제의 흐름

표준비용모델의 핵심 요소는, 일단 기준이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화의 결과 및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다시 갱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규제를 위한 행정비용의 측정은 기준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행정비용 정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새롭고 변화하는 규제에 수반하여 제공하는 규제영향평가(RIAs)이다. 이러한 사전 측정들은 측정의 질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학자, 담당정부부처별 선진규제부 그리고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된다. 물론 특정 규제를 위해 비용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비용은 오직 최종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규제에 추가된다. 예를 들면, 법률은 통과되었어야 하고 개정안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선진규제국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되어지고,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이 체계는 기준에 잠정적 변화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기준 자체가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보제공대상과 일반화 계획을 위해 사용된 고정된 기준에 더하여 “살아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사전 평가를 작성하는데 있어, 규제에 대한 최초의 일회적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을 정확히 도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평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행정비용의 측정은 부처의 평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어떠한 규제가 도입된 경우 재검



토는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검토의 하나로 전문가들 또는 내부의 적절한 부서의 재원을 사용하여 당해 규제에 대하여 완전한 측정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평가의 결과는 선진규제국의 동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데에 사용된다.

### 3.6.2. 표준비용모델과 규제영향평가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실행하는데 있어 실행환경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국에는 훌륭하게 정비된 규제영향평가 절차가 있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비교하고 전체 비용과 각 방법들의 이익을 비교해야 함을 뜻한다. 행정비용 측정을 위한 특정한 방법론의 도입이 평가의 수행을 위한 필요성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새로운 또는 수정되는 행정비용의 규제는 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비용은 규제영향평가에서 제시된다.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산정된 행정비용을 규제영향평가에 포함하기 위한 특정 기준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다. 산정 방법은 이 책자에서 제시될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과 규제영향평가는 미세하게 다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표준비용모델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지 않는데, 이에 반해 규제영향평가는 새롭게 추가되는 비용(그리고 이익)을 구한다. 이것은 규제영향평가에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3.6.3. 산정 절차

행정부담의 감소가 성공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네덜란드는 그들이 세운 목표기간이 끝났을 때 두 번째 기준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덴마크는 부가적 측정

에 대하여 아직 결정한 바 없다.

표준비용모델과 함께 두 번째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표본의 크기가 같은 경우가 별로 없어서 다른 지점에서 작성된 어떤 두 개의 표본이 실제로 비교 가능한 결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측정의 주안점은 초기 측정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특히 측정하는데 들었던 높은 재정상 그리고 자원상의 비용과 같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수치와 관련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영국의 최근 계획은 조심스럽게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단된 절차를 위하여 갱신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료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일부분의 조사도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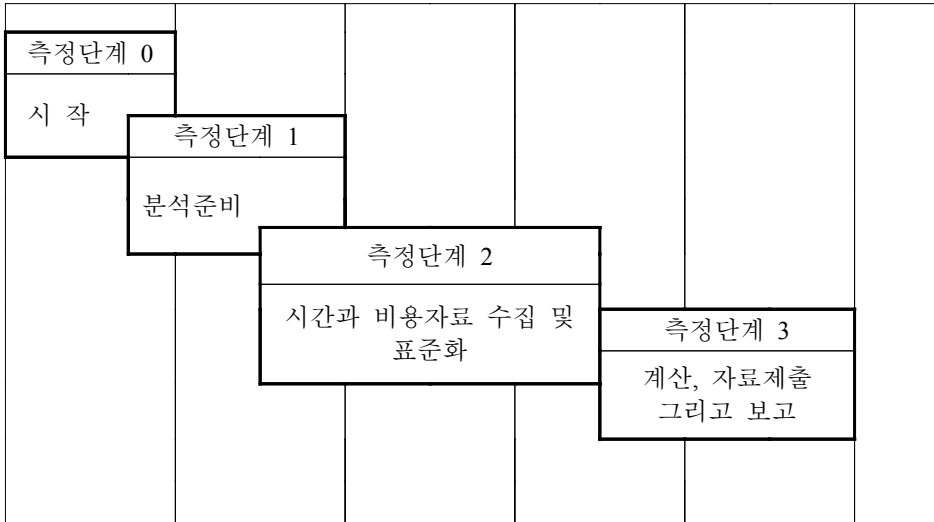
또 다른 문제는 측정과정에서 경제의 변화와 성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만약 고도의 규제영역으로 확장한다면, 이것은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총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연간 고정된 측정기준으로는 관측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융통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상의 표준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으로부터 관찰 후 1년 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러하다.

#### 4. 산정과정

본 장은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산정의 실행에 관련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측정단계와 14단계의 절차로 나누어진다. 단일규제의 산정에서는 이 측정단계들이 순차적이지만, 기준측정과 같은 더욱 큰 범위의 산정에서는 규제영역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과정으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측정단계들이 중첩되기도 한다. 이

것은 그림 3으로 도식화된다.

그림 3 : 산정단계의 예



주어진 규제영역에 있어서의 표준비용모델 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방법론과 특정 규제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모두 요구된다. 산정은 일반적으로 관련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산정에 있어서 선진규제국만이 아니라 정부의 관련 부처, 기업 그리고 그 밖에 영역에서의 전문가와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

선진규제국은 모든 영역에서의 산정 전반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선진규제국은 산정과 정에서 발생하는 방법론적 문제들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본 안내서를 갱신한다.

수집된 자료는 표준비용분석결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양의 복잡한 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선진규제국

[부록 1]

에 의해 특수화된 데이터 체계를 통하여 선진규제국으로 이전된다.

아래 표 1은 산정에 있어서의 4가지 논리적 측정단계와 그 하위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 산정에 있어서의 측정단계와 절차

<b>측정단계 0 : 시 작</b>		
관련 정부부처, 선진규제국, 전문가 그리고 주요 관련자들과의 최초 회의		
<b>측정단계 1 : 조사준비</b>		
	절 차 1 :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그리고 행정활동의 조사와 구분
	절 차 2 :	관련 규제의 확정과 경계설정
	절 차 3 :	적용대상의 분류
	절 차 4 :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의 파악
	절 차 5 :	기업에 대한 인터뷰와 전문가의 평가
	절 차 6 :	관련된 비용변수의 파악
	절 차 7 :	인터뷰 지침의 준비
	절 차 8 :	측정단계 1-7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b>측정단계 2 : 시간과 비용자료 수집과 표준화</b>		
	절 차 9 :	인터뷰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정
	절 차 10 :	기업인터뷰
	절 차 11 :	활동별 각 적용대상부분의 시간과 자원 측정의 완성과 표준화
	절 차 12 :	측정단계 9-11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b>측정단계 3 : 추산, 자료제출 그리고 보고</b>		
	절 차 13 :	실증된 자료를 자료를 통한 국가차원의 통계추정
	절 차 14 :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화

이장의 나머지 부분은 각 측정단계 또는 절차에 대한 업무와 그 완료 결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다음 장은 산정의 완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다.

#### 4.1. 측정단계 0 - 시작

이 측정단계는 차후의 산정에 대하여 기반을 제공한다. 측정단계 0에서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경계분야의 취급문제 등, 정부당국이 제시한 규제목록과 관련한 산정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
- » 부처, 기업, 관련전문가 그리고 선진규제국 등 주요 관련자들의 회의를 포함하여 산정을 시작하는 것
- » 순차적인 측정단계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
- » 관련전문가, 부처, 기업, 그리고 선진규제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및 기타 인식작업을 진행하는 것
- » 산정기술상의 질적 보장절차를 확립하는 것
-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근, 공유 그리고 유지를 위한 방법을 설정하는 것. 예를 들어, 안전한 웹사이트 등을 제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주고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용이하며, 이미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측정단계 0의 완료

관련전문가 집단은 분석에 포함될 기업관련 규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 관련 정보는 완료된 분석의 측정단계적 절차로서 자료에 추가된다. 분석의 완료와 관련한 이 자료에 추가되는 모든 정보의 정확한

설명을 위하여는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마련된 자료체계를 참고할 것.

관련전문가는 또한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관련규제의 목록을 그 규제들이 제외된 이유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반드시 담당부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분석에 있어서 포함되었던 모든 기업관련규제를 관련 정부당국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 소요될 시간은 담당부처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4.2. 측정단계 1 - 조사준비

표준비용분석의 수행에 관련한 작업의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자료 수집에 선행되는 조사준비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조사준비의 목적은 관련된 법규 내에서의 기업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행한 행정활동을 조사해야 한다. 다음 측정단계는 관련되어 있는 가변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업부분을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은 8단계의 절차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상호관련성을 가진 다양한 절차에 있어서의 고려 및 선택으로 연속적이다. 그러므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수적이다.

사전조사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것의 의미는 :

- » 선진규제국이 방법론의 강구와 기술적 선택에 지속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 » 정부당국이 기술적 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 지속적으로 관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 » 관련 전문가들이 절차 1-7에 의한 구분 및 분류를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에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 4.2.1. 절차 1 :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그리고 행정활동에 관한 조사와 원인별 구분

절차 1에 관한 업무는 :

- » 측정단계 0에서부터 정보제공의무까지의 규제 목록을 분석하는 것
- » 정보제공의무에서 자료요구를 도출하는 것
- » 자료요구를 분류하는 것
- » 행정활동을 분석하는 것 - 이것은 절차 10에서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될 것임
- » 원인별 규제에 대한 구분을 시작하는 것 - 이것은 측정단계 3의 보고까지 완성될 필요는 없음을 유의할 것

#### 절차 1의 완료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관련규제를 분석하여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그리고 이에 관련된 행정활동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또한 최초의 입법이 부가적인 입법을 가져오는 경우와 같이, 규제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정한다. 어떠한 영역과 그 이외의 영역간의 관계를 당해규정에서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규제들 사이 자료요구관계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그리고 행정활동의 분석을 포함하는 이러한 자료는 담당 부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관련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가 분석되었음을 관련 정부당국이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의 완료를 위한 최종기한은 담당부처에 의해 구체

적으로 결정된다.

#### 4.2.2. 절차 2 : 관련 규제의 확정과 경계설정

절차 2에 관한 업무는 :

- » 관련/중복되는 규제들을 확정하는 것
- » 규제별 담당부처들을 할당하는 것
- » 해결되지 않는 쟁점을 선진규제국의 결정을 위해서 보고하는 것

#### 절차 2의 완료

관련전문가들은 행정비용이 측정되어야 할 규제영역에 관하여 명확한 경계와 정의를 도출한다. 관련규제가 식별되고 비용부담자가 명확해지면, 동일한 정보제공의무를 중복하여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절차 1로부터 나온 기업관련 규제에 대한 자료에 더하여 관련 규제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다. 측정단계 1의 결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보고의 일부로서, 전문가는 확인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가 다른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규제간의 접촉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규제가 다른 규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최종 경계결정은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 4.2.3. 절차 3 : 적용대상의 분류

절차 3에 관한 업무는 :

- » 기업의 규모, 전자정부 운영체계 그리고 해당 산업영역에 의하여 자료를 분류하는 것
- » 규제상의 비표준화 분류대상을 확정하고 선진규제국과 정부당국



이 적용대상 분류를 합의하는 것

- » 기업규모에 의한 적용대상구분이 적절하지 않거나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선진규제국이 분류 계획을 승인하는 것

### 절차 3의 완료

이러한 분류는 선진규제국이 승인하여야 하며, 그 정보는 절차 1로부터 도출된 기업관련규제에 대한 자료체계에 통합된다. 전문가들은 더욱 자세한 분석을 해야 하는 특별한 적용대상구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선진규제국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측정단계 1의 결과로 작성되어야 하는 현황보고서에는 어떻게 적용대상의 구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 4.2.4. 절차 4 :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의 파악

절차 4에 관한 업무는 :

- » 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모집단의 파악
- » 각 자료요구에 대한 등급의 설정
- » 각 자료요구/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빈도수의 결정

### 절차 4의 완료

전문가는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얻어야 하고, 이를 자료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자료들을 검증하며,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선진규제국은 전문가와 정부당국이 식별할 수 없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한다.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의 확인 과정은 긴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측정단계 1의 진행중에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측정단계 3에서의 통계추정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정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 제공의무가 얼마나 많은 기업에 작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기업인터뷰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기업인터뷰와 전문가 평가에 의해 산출되어야 할 절차 5에서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4.2.5. 절차 5 : 기업과의 인터뷰와 전문가의 평가

절차 5에 관한 업무는 :

- » 인터뷰 범위의 결정과 전문가 평가의 이용에 대한 구분기준을 특정화하는 것
- » 어떠한 정보제공의무가 기업과의 인터뷰를 사용하여 평가될 것인가의 여부를 확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것
- »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평가될 정보제공의무를 그 결정의 이유와 함께 목록화하는 것

#### 절차 5의 완료

전문가는 기업과의 인터뷰에 의해 측정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정보와 어떤 것이 후에 평가되어야 할지에 관한 정보를 절차 1로부터 나온 기업관련규제에 대한 자료에 통합한다. 인터뷰와 전문가에 의한 평가의 구분에 근거가 되는 기준은, 정부당국이 용이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 기준들은 반드시 측정단계 1의 결과로서 준비되는 현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자료는 승인을 위해 선진규제국 및 담당부서에 보내진다.

#### 4.2.6. 절차 6 : 비용변수의 파악

절차 6에 관한 업무는 :

- » 각 행정활동/정보요구사항/정보제공의무를 위한 관련 비용변수를

파악하는 것

- » 비용변수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불확실한 영역에 대하여 문서화하는 것

#### 절차 6의 완료

행정활동은 인터뷰를 통해 측정될 수 있는 많은 가격변수들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분류는 해당 부처와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승인되며, 그 과정 중에서 제기되는 모든 쟁점들이 해결된다.

#### 4.2.7. 절차 7 : 인터뷰 지침의 준비

절차 7에 관한 업무는 :

- » 인터뷰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시험하는 것
- » 정형화되고, 지속적이며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한 인터뷰지침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

#### 절차 7의 완료

전문가 집단은 인터뷰 지침을 준비하고, 선진규제국이 이를 승인한다.

#### 4.2.8. 절차 8 : 절차 1-7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절차 8에 관한 업무는 :

- » 관련 감시단(관련 부처, 기업 대표, 선진규제국 및 다른 전문/주요 관계자들)에 의한 검토를 위해, 절차 1-7에 의해 마련되었던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측정단계 1에 있어서 수행되었던 모든 작업을 요약한 측정단계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 » 감시단은 측정단계 1에서 수행한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측정단계 2의 시작을 승인함

### 절차 8의 완료와 측정단계 1의 종료

측정단계 1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산출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전문가가는 절차 1-7의 실행이 나타나는 측정단계 1의 이행에 대한 측정단계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어떻게 기업관련규제의 구성요소 파악에 관련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가 중요한지, 다른 법규영역 및 통합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계구분이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행정활동이 관련성이 있는지, 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의 분류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담당부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을 위해 감시집단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단의 의견이 방법, 경계설정 등의 선택에 있어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선진규제국 및 담당부처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단 그와 같은 어떠한 변화가 실행되었다면, 측정단계 1은 완료된다.

### 4.3. 측정단계 2 - 시간 그리고 비용자료 수집과 표준화

측정단계 1에서의 조사준비행위를 기초로 하여, 측정단계 2의 작업은 해당 법규의 내용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의 선정과 함께 인터뷰로부터 경험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작업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 그리고 비용변수를 위하여 표준화된 수치를 개개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자료체계상의 모든 “셀(Cell)”에 채워넣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동일한 대상의 분류에 속한 각각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최소 세 번의 심층적 인터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 4.3.1. 절차 9 : 인터뷰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정

절차 9에 관한 작업은 :

- » 총 인터뷰의 수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여 인터뷰를 하기 위한 기업을 파악하는 방법과 어떻게 응답자의 부담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
- »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되는 모든 적용대상분류/자료요구/정보제공의무 전반을 포괄하는 인터뷰를 위해 기업을 선정하는 것
- » 업무시간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목적범위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 방법을 보장하기 위한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는 것
- » 담당부처와 선진규제국이 합동으로 작성하여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 » 절차 10에 있어서의 인터뷰 과정을 근거로 하여, 이전보다 기업들을 확대하거나 인터뷰 내용을 다시 구성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

### **절차 9의 완료**

전문가는 인터뷰를 위한 기업과 계획된 인터뷰의 총 수를 파악하는 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의 부분 모두를 선진규제국이 승인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반드시 측정단계 2의 결과에 의해 작성되는 현황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행정비용의 측정이유 등, 절차에 관한 정보는 응답자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작성된다. 이것은 담당 부처와 선진규제국 그리고 사업자단체 사이의 상호협력관계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계획의 승인에 따라, 인터뷰에 앞서 기업과의 교섭이 있다. 기업과의 교섭과 접촉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한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 부처나 선진규제국이 기업과 초기교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4.3.2. 절차 10 : 기업과의 인터뷰

절차 10에 관한 업무는 :

- » 절차 7에서 작성된 인터뷰지침을 사용하여, 절차 9의 결정에 따라 기업과의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
- » 정상적 효율기업에 의해 안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응답을 평가하는 것
- »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응답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인터뷰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
- » 선진규제국에 문제/의문사항/쟁점을 설명하는 것

#### 절차 10의 완료

전문가들은 측정단계 2의 결과에 따라 작성되는 현황보고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뷰의 실행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선진규제국은 인터뷰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것에 관여한다.

### 4.3.3. 절차 11 : 각 활동별 적용대상부분의 시간과 자원 측정의 완료 및 표준화

절차 11에 관한 업무는 :

- » 정상적 효율기업이 각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각 적용대상 분류의 결과를 표준화하는 것
- » 인터뷰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절차 5에서 결정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

#### 절차 11의 완료

자료체계상의 모든 셀에 표준화된 해당 기재사항을 기입한다.

#### 4.3.4. 절차 12 : 절차 9-11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절차 12에 관한 업무 :

- » 관련감시단(관련 부처, 기업 대표자, 선진규제국 그리고 기타 전문가/주요 관계자들)에 의한 검토를 위해, 절차 9부터 11까지에 의해 도출되었던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측정단계 2에서 수행되었던 모든 작업을 요약한 측정단계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 » 감시단은 측정단계 2에서 수행한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측정단계 3의 시작을 승인함

#### 절차 12의 완료와 측정단계 2의 종료

측정단계 2와 관계되어 계속적으로 산출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전문가는 절차 9-11의 실행을 나타내는 측정단계 2의 이행에 대한 측정단계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평가 및 결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된다.

보고서는 담당부처에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을 위해 감시집단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감시단의 의견이 추가적인 과제를 유도하는지 여부를 선진규제국 및 담당 부처와 함께 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가 실행되었다면, 측정단계 2는 완료된다.

### 4.4. 측정단계 3 - 추산, 자료제출 그리고 보고서

#### 4.4.1. 절차 13 : 실증된 자료를 통한 국가차원의 통계추정

절차 13에 관한 업무는 :

- » 각각의 활동 및 적용대상 분류에 있어서, 측정단계 2로부터의 승인, 표준화된 자료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

- » 절차 14에서의 보고서를 위해 요구되는 전체사항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적용대상구분과 정보제공의무에 의한 총비용, 정보제공의무 한 부분에 대한 총비용, 규제에 의한 총비용, 부처별 조직단위에 의한 그리고 부처에 의한 총비용을 포함함

### **절차 13의 완료**

전문가들은 관련된 사항을 측정하는데, 이것은 절차 14에 있어서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 **4.4.2. 절차 14 :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로의 이전**

절차 14에 관한 업무는 :

- » 부문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부처와 선진규제국의 동의에 따라 정부기관 및 관련 조직에 제출하는 것
- »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된 부문별 보고서를 인정함
- »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특정된 형식으로, 부문별 자료를 해당부처와 선진규제국에 이전하는 것
- » 일반 기준 등과 같이 큰 규모의 산정을 위한 개괄적인 보고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선진규제국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것

### **절차 14의 완료와 측정단계 3의 종료**

전문가들은 모든 결과를 수록하고 사용된 방법 및 고려사항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시단에게 조사목적으로 보고서가 보내지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변경하여 선진규제국과 정부당국이 이를 승인한다.

일단 보고서가 최종 승인되면, 전문가들은 선진규제국이 제공한 자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해당 부처와 선진규제국에 자료를 보낸다. 선진규제국은 이 자료를 승인한다.



넓은 범위의 측정(일반기준 등)이 수행되는 부분에서는, 전문가는 개괄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위해 선진규제국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으로 측정단계 3이 완료된다.

## 5. 구체화된 산정지침

이 장은 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설명한다. 그것은 절차 순서를 나타낸다.

### 5.1. 표준비용분석의 범위에 있어서의 경계문제

종종 수많은 경계문제가 있으며, 규제가 표준비용분석의 범위에 속하는지 혹은 속하지 않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경계문제는 다른 유사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의 측면에 관하여 논의되고 평가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또는 어떠한 규정이 분석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접근이 허락되는 지에 관한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5.1.1. 불만처리

결점에 관한 불만에 대하여 기업이 가지는 권리는 행정부담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준비용 분석에 있어서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이 행정부담으로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불만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제공의무도 기업에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 규제는 단지 결정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이 공식적인 요구사항인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즉, 불만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만약 있다면 보충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불만처리체계에 대한 기업의 경험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특히 기업이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영역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준비용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 부분이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지에 대하여 기업에게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부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고서에 포함될 뿐이다. 이것은 정상적 효율기업이 불만에 대하여 소요한 시간에 대해 표준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만에 대한 시간의 소비는 이 때문에 매우 변화 가능하다.

내용 조사에 관한 결과는 기업이 규정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규정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기업들이 소비하는 시간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불만의 수도 역시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적인 불만절차에 대한 압력도 줄어든다.

### 5.1.2. 자영업과 기업의 차이

자영업자가 피고용자로서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흔히 상대적으로 넓은 행정활동에 의한 결과이다. 다른 여러 것들 중에서, 그들은 그들의 직업 그리고 소득상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자영업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용자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업으로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활동의 방식은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5.1.3. 조사에 의한 행정비용의 산정

기업은 여러 가지 조사범위의 대상이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에서 정의되는 행정비용은 오직 전적으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조사에서 발생한다. 넓은 범위를 가지는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5.1.4. 재판, 법정소송 그리고 조사

법적 절차는 현대 기업에 있어서 일상적 요소이다. 그러한 절차는 분명히 일정한 행정절차를 수반한다. 그러나 그것이 표준화 될 수 있는 한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단순히 사건이 아닌 특정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소송과 재판의 경우, 그들이 규제에 순응하고 전부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피할 수 없었던 기업, 예를 들어 어떠한 사건이 기업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발생 한 경우와 같을 때에 한하여만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포함된다. 단, 그와 같은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사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오직 특정한 보통 기업이 수행한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것만 포함될 것이다. 즉,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합병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포함되지만 시장분석과 관련한 요구는 그렇지 않다.

#### 5.1.5. 시작 그리고 첫 준수

기업 내에서의 일정한 규제와 행동은 기업의 존속기간에 있어서 주요한 때에 발생한다. 새로운 회사는 기업의 시작에 관련한 일련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성장하고 다양화되어가는 기업은 그들이 이전에는 이행할 수 없었던 규제를 따라야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과 관련된 규제는 매년 규제에 따라야 하는 새로운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는 모집단에 포함될 것이다. 규제를 위해 필수적인 지침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산정의 대상이 된다.

첫 번째 준수는 산정에 있어서 기업이 처음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특정 요구사항은 산정 시 해당 부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규제절차 또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지침 등이 있다. 모집단은 기준연도에 관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새로운 기업의 수가 될 것이다.

#### 5.1.6. 지침을 보는 것

수많은 규제를 따르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침 양식이 있다. 그러나 모든 지침서가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규제를 처음으로 준수하는 것과 관련한 지침서(위에 논의된 바와 같이)는 포함될 것이다.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지침서 역시 포함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양식에 대한 지침서도 포함한다.

처음 규제를 따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읽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는 지침서는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5.2. 규제를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로 분석

이 작업은 개별 규제의 실제 내용, 그것의 주석, 관련된 회보들과 규제분야에 관련된 어떤 지침들의 상세한 분석에 기초를 둔다. 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하나 혹은 더 많은 정보제공의무는 이러한 분석 중 확인된다. 정보제공의무 유형의 예시는 아래 5.2.1. 항목에서 살펴본다.

일단 규제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정보제공의무들로 분석하면, 정보제공의무는 다시 자료요구들로 세분화된다. 이것은 개별 정보제공의무를 구성하는 규제들에서 모든 자료요구들을 확인하면서 이루어진다. 자료요구는 다양하다. 몇몇은 명확한 정보제공의무에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것인 반면에, 여러 기관에 걸쳐 여러 가지 규제에서 다른 정보제공의무가 반복되기도 한다.

정보제공의무가 자료요구로 분석될 때, 해당 전문가는 개별 자료요구를 조직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요구를 준수하기 하여, 비용의 표준화에 바탕을 둔 표준비용카달로그 개발을

통하여 이를 보다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은 아래 5.2.2. 항목에서 서술된다.

자료요구가 정확하게 나타났다면, 다음 작업은 개별 자료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의 행정활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규제들 간의 연관관계는 식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 1의 법률은 두 번째 법률을 발생시킨다. 해당 규제에 존재하는 자료요구를 있는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어느 조항과 하위항목의 관계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 5.2.1. 정보제공의무 : 표준유형들

- ▶ 반환 및 보고서 : 이것은 원천소득에서 공제된 세금과 같이 반환 및 보고하기 위한 정보와 관련된다.
- ▶ 허가 혹은 면제를 위한 신청 : 이것은 주류 판매를 위한 면허의 신청과 같이 허가 혹은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의 모든 유형과 관련된다.
- ▶ 인증을 위한 신청 : 이것은 하수구 계약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인증과 같이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된다.
- ▶ 활동의 신고 : 이것은 위험한 화물의 운반 통지와 같이 특정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다.
- ▶ 등록부의 등록 : 이것은 기업의 등록과 같이 등록하거나 명부에 기입해야 하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다.
- ▶ 정밀 조사의 수행 : 이것은 건강 혹은 환경에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기계류와 설비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업과 관련된다. 검사는 작업장 평가 작성과 같이 인증기관에 의해 보통 수행된다.

[부록 1]

- ▶ 보조금 혹은 지원을 위한 신청 : 이것은 직업훈련을 위한 보조금과 같이 기업이 보조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신청함을 의미한다.
- ▶ 상업상 비상시 계획의 갱신 등 관리 : 이것은 기관에 의해 요구된 서류를 기업이 최신화 및 갱신하는 등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지침서와 비상시 계획 등을 포함한다.
- ▶ 회계감사 / 조사에 대한 협조 : 이것은 기업을 위해 조사와 회계감사 작업을 수행하는, 즉 규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사람인 조사자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 ▶ 법령에 의한 제3자에 대한 품질표시 : 이것은 다른 것들 사이에, 예를 들어 국내 전기제품의 효율표시와 같이 소비자 정보를 위하여 제품 혹은 설비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미한다.
- ▶ 법령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 이것은 투자상품을 위한 재정 안내서와 같이 제3자에게 정보(위의 품질표시와는 구별)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 ▶ 불만제기와 항소의 구성 : 이것은 기관에 의해 취해진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항소하는 것과 관련된다. 당해 분야에서 정상적 효율기업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인 경우에만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분석된다.

위 정보제공의무의 유형들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다. 그러한 의무는 또한 정책적 목적 - 즉, 그 정책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조항)에 관한 것이다 - 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지만 확인되어야 한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3자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3자에 대한 의무는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무의 대부분을 가진 특정 부서는 대체가능한 접근법이 요구

될 것이다. 이것은 선진규제국과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사이의 검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아래에서 덴마크의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사례에서 규제가 어떠한지의 구체적인 예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정보제공의무의 예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의 검토는 기업에 대한 주요한 정보제공의무가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첫째로, 법 제12장에 의해 요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기관에 기업이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및 셋째는, 법 제15장이 부가가치세의 반환과 결산에 관련한 다수의 의무를 정의한 것이다.

##### 제12장 등록

부가가치세법의 제12장은 기업이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한다.

*“아래 제13조에 의해 면제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제15장 세금의 결산

제15장은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결산할 때 수행해야 하는 조항을 상세히 명시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조항들은 정보제공의무를 나타낸다. 이에 관한 일반 조항은 제57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각 과세기간의 종료 후 등록된 기업은 해당기관에 제14조 내지 제21조 또는 제34조에 의한 면세혜택을 받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의 양과 가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5.2.2. 자료요구의 분류

정보제공의무는 아래와 같은 자료에 관련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 기업의 확인 - 상호, 기업의 등록(등기) 수 등
- ▶ 기업의 수익/수익증명자료
- ▶ 기업 시설의 보고서

자료요구는 두 개의 주된 형태의 범주 - “자료요구-과정”과 “자료요구-내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둘 다 다수의 하위 범주들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범주들이 서로 포섭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왔다. 표준비용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다른 기본 목록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하위범주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범주를 선진규제국이 승인해야 한다.

#### **자료요구-과정 :**

현재 기업에서 자료요구에 합치하는 과정을 기술한 세 가지 하위 범주가 있다. 그 기본개념은, 자료요구의 본질과 이에 따른 그 수행 과정이 자료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1. 수동적 과정*

이 하위 범주는 특별한 과제를 포함한다. 즉, 매우 드물게 수행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매 경우마다 조합되고 따라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일회성의 것과 상황별 경우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회적인 직무는 자격증을 신청하는 것인 반면, 상황 관련 직무는 허가계획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서 자료요구를 수행하는 것의 특징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 *2.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과정*

이 하위 범주는 최대 정보의 절반까지는 이미 생산되었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쉽게 생산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것은 자료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중 상당수는 IT 수단이나 기업에서 체계화된 행정절차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요구를 준수



하는 것은 위의 범주 보다 정보획득에 단기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 3. 현저히 자동화된 과정

이 하위범주는 정보의 절반 이상은 이미 생산되었거나 상대적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것은 자료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IT 수단이나 기업에서 체계화된 행정절차 등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요구의 준수는 위의 두 가지 범주보다 정보획득에서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비용이 모두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4 : 자료요구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분지도 -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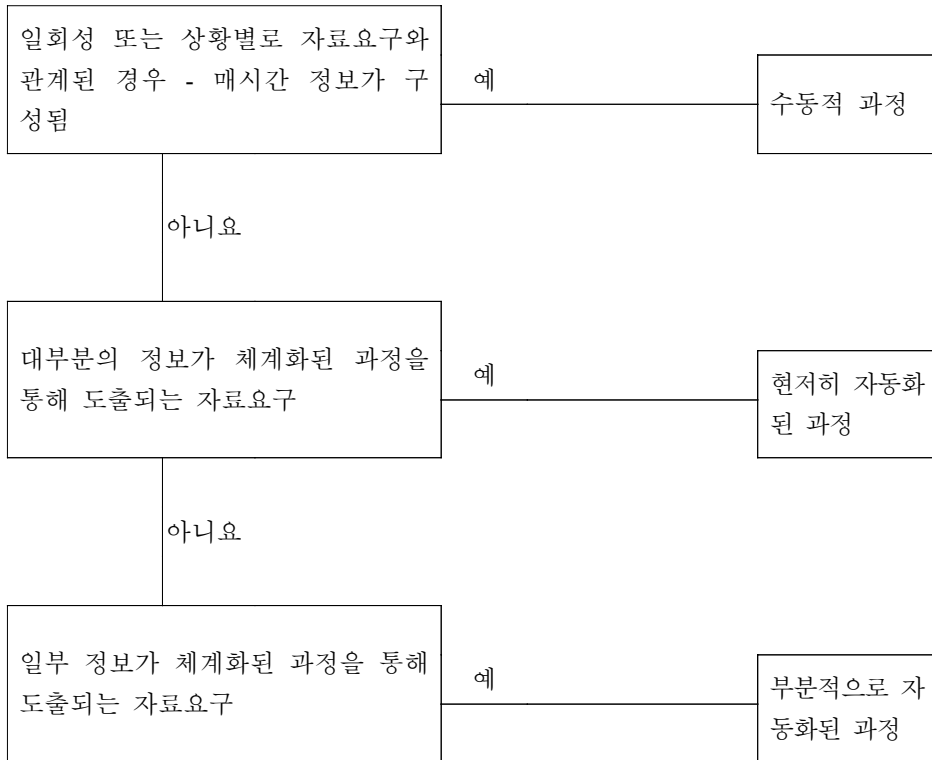


그림 4는 의사결정분지도를 통해서 자료요구가 기업에서 그 수행의 과정에 기초하여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보여 준다. 자료요구는 수동적으로 또는 자동화된 각각의 절차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정보의 비율을 평가하여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범주의 분류는 수동적인 혹은 자동적인 정보획득 과정에 소요된 기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자료요구 - 내 용 :**

일반적으로 자료요구의 내용을 기술하는 7개의 하위 범주가 있다.

*1. 기업자료*

이 범주는 기업에 관한 확립된 정보의 여러 가지 유형을 나타낸다. 이것은 기업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보고서에 포함된 일반적인 정보이다. 또한 이것은 소유권, 지역, 임대료 등 개별 보고의무에서 비롯한 특정 정보를 포함한다.

결국, 기업정보는 주어진 규제 요건으로 인하여 항상 포함할 수 있는 기업에 관한 확립된 정보라는 특징에 있다. 이 범주는 단기간 확립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하위 범주와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은 매우 자주 그들의 상호와 주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2. 생산자료*

이 범주는 기업에서 실제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자료요구를 포함한다. 이것은 생산규모, 기업들의 생산품의 유출 또는 방출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3. 개인자료*

이 범주는 임금, 고용 기간, 출산 휴가, 교육과정, 질병수당과 같이 기업에서 직원에 부여하는 모든 관련 정보유형을 나타낸다. 이것은 개별 직원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근무지평가와 같이 개별적인 고

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더 일반적인 정보/의무를 포함한다.

#### 4. 구매

이 하위범주는 기업의 지출에 관한 자료요구를 나타낸다. 이것은 (이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구입, 주식이동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이 범주는 국내·국제 구입 모두 해당한다.

#### 5. 판매

이 하위범주는 기업으로부터의 생산에 관한 자료요구를 나타낸다. 이것은 (이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 소비자 등에 의한 제품/서비스의 판매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이 범주는 국내·국제 판매 모두 해당한다.

#### 6. 제품자료

이 하위범주는 갖가지 소비자 정보를 포함한 생산된 제품 자체에 관한 자료요구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항은 무게, 성분, 법에 의한 경고 등 종종 제품 자체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기도 하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 7. 회계 자료

이 하위범주는 보고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한다. 회계 자료는 위 6개의 하위범주로부터 생산된 정보들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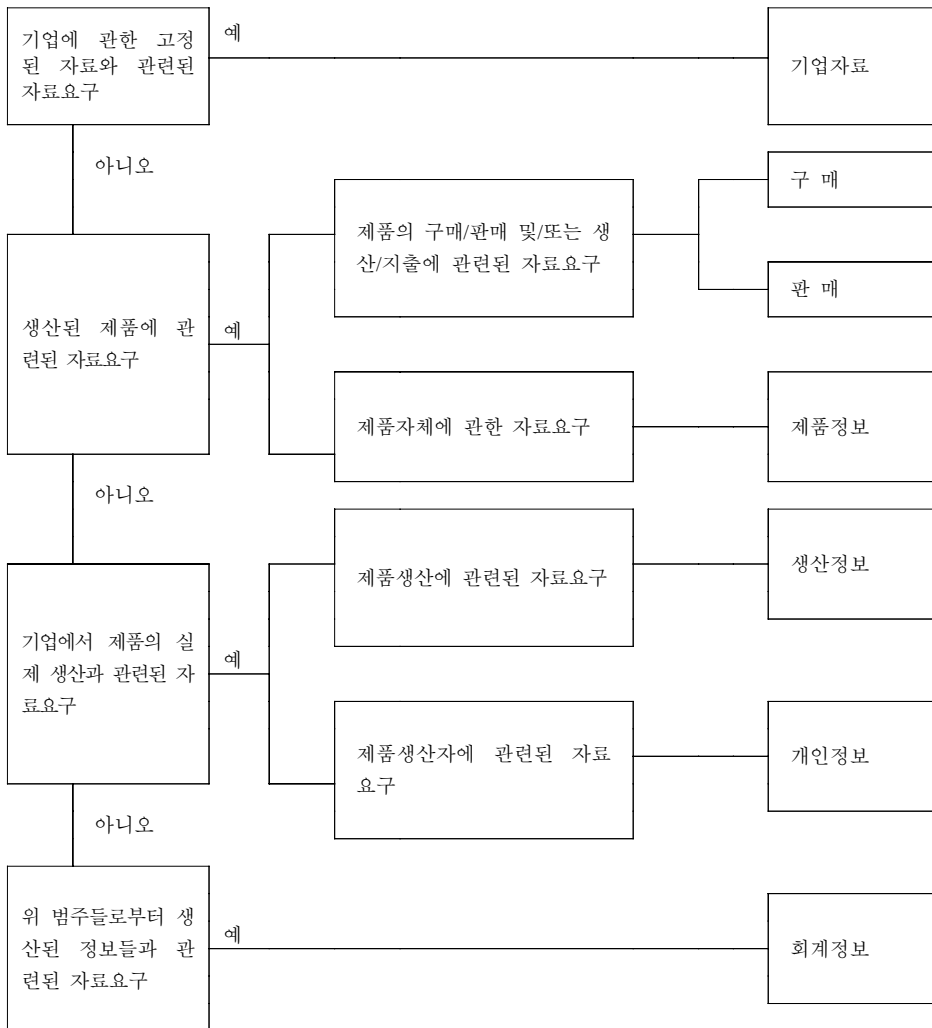
그림 5는 내용을 기준으로 자료요구들을 분류하기 위한 의사결정분지도를 나타낸다. 분류 내의 특정 자료요구는, 예를 들어 수동적 과정/기업정보와 같이 오로지 하나의 분류만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어느 규제 내에 여러 가지 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요구는 다양한 분류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하나의 분류에서 수동적 과정/기업정보 군으로 분류된 것은 다른 분류에서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과정/기업정보 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하

[부록 1]

위범주의 분류는 이와 같은 경우에 다양하지 않다.

범주에서 실제 분류는 기업전문가의 처리작업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한 방법 하나는, 규제규범을 분석하여 “자료요구-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 반면, 정보를 표준화하여 “자료요구-절차”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림 5 : 자료요구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분지도 - 내용



### 5.3. 행정활동의 식별

행정활동의 식별은 16개의 표준 행정활동에 기초한다. 그것은 개별 자료요구에 연결되는 행정활동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첫 번째 행정활동에 관련하여, 정보제공의무에 합치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이용하는 자료의 원천들은 실제 정보제공의무에 연결되는 반면, 그 밖의 행정활동은 개별 정보제공의무에 연결된다.

1. 정보제공의무의 숙지. 주어진 정보제공의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과 관련된 기업의 자원소비
2. 정보 검색. 주어진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된 정보와 통계자료 등의 검색
3. 평가. 보고서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필요로 하는 숫자와 정보를 평가
4. 계산. 보고서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필요로 하는 숫자와 정보에 대한 적절한 계산의 실행
5. 숫자의 제시. 계산된 숫자들을 도표 등으로 표시
6. 검토. 다른 정보와의 조정 등에 의한 계산된 숫자의 검토
7. 정정. 만약 기업 자체의 검사에 의해 계산의 실수를 발견하면 정정해야 한다.
8. 기재사항의 작성. 예를 들어 재무제표법상 이사의 보고서와 같은 기술의 준비.
9. 결산/납입. 세금, 요금 등의 납입
10. 내부회의.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부록 1]

11. 외부회의.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회계감사원, 법률가 혹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회의
12. 정부당국에 의한 조사. 기업들은 기업에 조사를 수행할 때 대외조사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3. 정부당국의 조사결과로부터의 시정. 만약 대외적 검사가 행정적 실수/결함을 확인한다면, 이후에 시정해야 한다.
14. 교육. 관련 피고용인들은 최소 년 1회 이상 변화하는 최신의 규제 내용을 숙지하여 유지해야 한다.
15. 복사, 배포, 보관 등. 일정한 경우 보고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사, 배포, 그리고/또는 보관을 한다. 또한 조사와 관련하여 후속 내용을 위해 정보제공의무의 사항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16. 정보의 보고/제출.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업이 정보의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정보는 관련 기관에 보내야 한다.

또 다른 표준 작업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표준 작업의 제안은 매우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선진규제국의 승인이 요구된다.

관련 행정활동의 식별화는 각각의 법규정과 관련하여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인터뷰 상황 자체에서, 그것은 또한 기업들이 사용한 근거내용을 열거해야 할 때 특정 행정활동과 관련하여 용이하다. 행정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측정결과, 기업이 같은 범위로 법규 전체를 관찰할 필요없이 특정한 행정활동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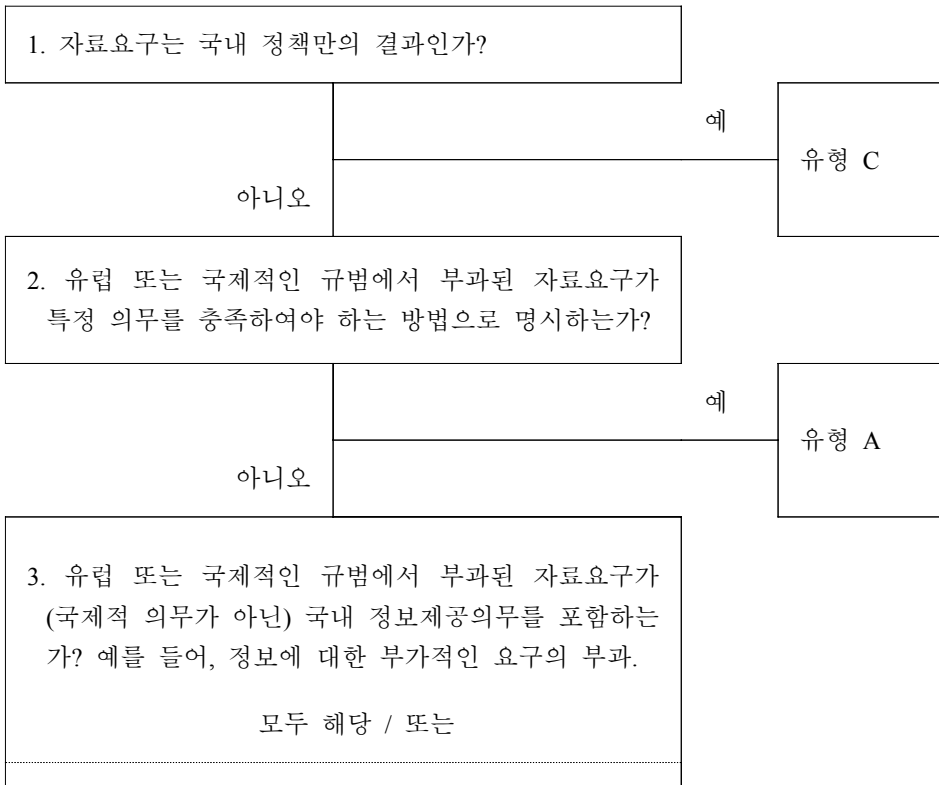
각각의 행정활동은 양식작성을 완성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한 활동들은 행정비용에서 양식 작성 요소가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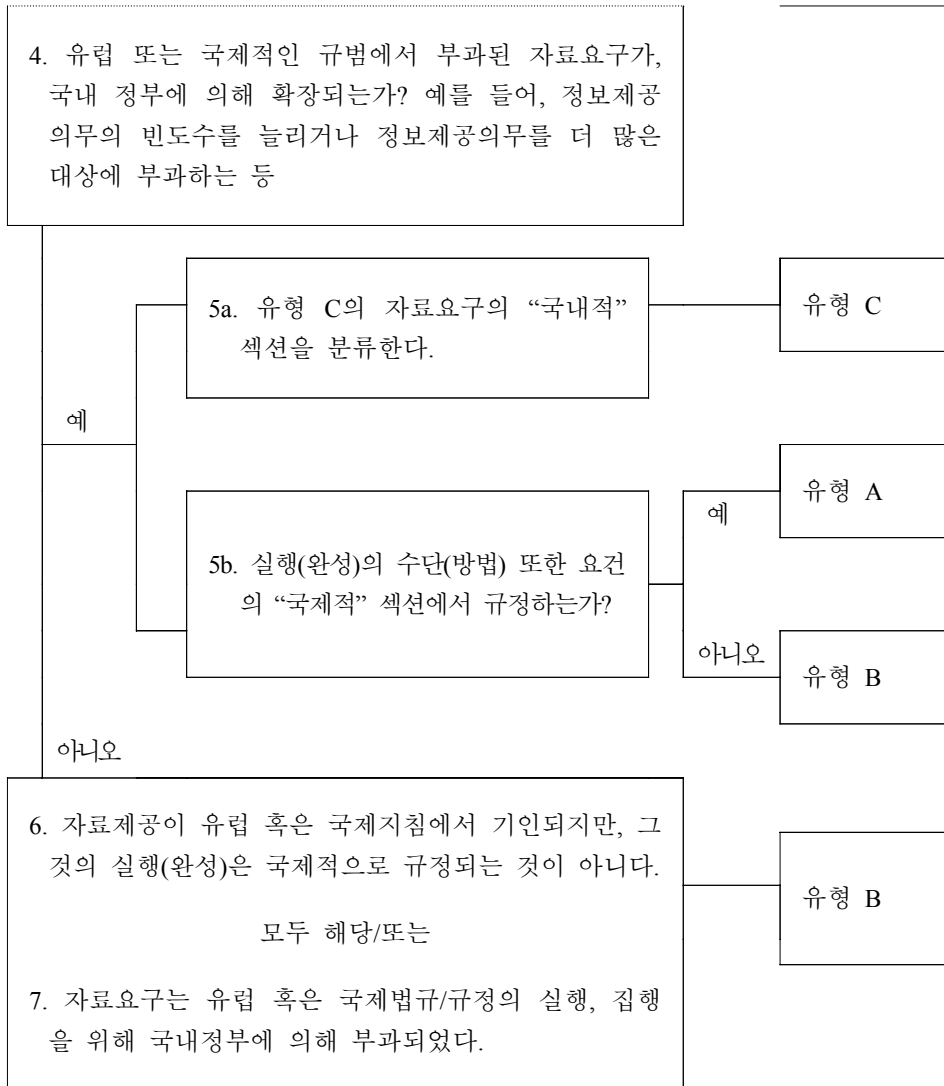
### 5.4. 원인에 의한 자료요구의 분류

각각의 규제 요건의 원인을 분류하는 것은, 국내 자료요구/정보제공 의무/규제의 내용과 관련 국제적 규제와의 비교를 포함한다. 아래 그림 6은 최고 수준의 원인분류를 적용하는 즉, A, B, 또는 C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분지도를 나타낸다.

분류는 관련 부처와 선진규제국에 의해 논의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요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에서는 선진규제국과 관련 부처에서 사용되기 위한 분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림 6 : 원인별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분지도





### 5.5. 규제의 확정

정보제공의무나 자료요구의 행정비용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정에 기인하는지 아닌지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해 어떤 표준비용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만약 행정비용이 둘 이상의 규정에 기인하



였다면, 그것이 한번만 계산되었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 문제는 아래 두 가지 예에서 설명된다.

**예 1 :** 재무제표법은 연간 회계에는 회사의 거래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하는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보는 또한 기업의 세금 계산서, 세법에서 규정한 회계 관련 요구사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같은 비용은 두 번 계산하지 않는다.

**예 2 :** 기록보존법은 회사의 재정 업무를 기록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규제한다. 그러나 본법은 기록한 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기록된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될 뿐이다. 따라서 거래내용의 기록은 기록보존법과 관련한 직접적 목적을 충족시키지 않지만, 기록된 정보는 모든 종류의 다른 사항에서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기록된 거래내역은 연간 회계, 부가가치세 환불,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에 사용된다. 비록 이러한 규범들이 기업들이 거래내역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범들을 준수하는 것은 결국 기록보존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좌우된다.

두 가지 예가 보여주는 것은, 규제의 요건이 중복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부처 내에서 그리고 둘 이상의 부처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처들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처들은 어느 요건에 대한 우선책임의 귀족 또는 규제요건의 어느 부분이 연결되는가 등을 합의해야 한다. 의회와 관련 부처 사이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처간 합의 등이 있었는가 등을 증명하는 흔적을 보여줄 것이 요구될 것이다. 담당 규정/부처는 특정 규제의 완전한 권한을 가질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선진규제국에서 이를 중재할 것이다.

## 5.6. 기업분류

결과가 요건에 맞추어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산업분야 그리고 전자정부화에 의한 분류를 필요로 한다. 행정부담 기준의 측정을 위해 요구되는 분류수준의 선택에서, 전반적인 목표는 측정절차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세밀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 5.6.1. 기업규모

측정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규모를 기준으로 4개의 범주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결과를 허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규모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서비스에 의해 정의된 내용을 사용한다.

- ▶ 최소규모(0~9 피고용인)
- ▶ 소규모(10~49 피고용인)
- ▶ 중간규모(50~249 피고용인)
- ▶ 대규모(250 이상 피고용인)

어떤 규제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사용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결과의 제공은 선진규제국과 관련 정부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고용, 매출액, 또는 위와 다른 피고용인의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나눈 규제는, 선진규제국이 승인한 분류내용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5.6.2. 산업분야

일반적으로 산업분야에 의한 분할 측정은 필요하지 않다. 분야의 구분은 통계상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서 유래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의 한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분야별 규제를 위한 측정은 규제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분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분야는 국가통계원이 발행한 2003 산업분류 기준(SIC 2003)을 사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많은 경우, SIC는 매우 특수한 영역의 기업 규제에 관하여는 충분히 상세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관련 부처에서는 SIC 분류에 따른 관련 분야와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5.6.3. 전자정부화

전자정부화는 상당한 수동적 과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관련 부처는 전문가가 전자정부화를 적절하게 확인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일정한 전산화사항이 보다 넓은 규모인 전자정부화의 일부인 경우, 당해 전산화 내용이 더 넓은 규모의 전산화의 일부임을 기록하고, 그 세부 내용도 기록되어야 한다.

### 5.6.4. 다른 분류 문제

영국에서 표준비용분석 측정의 절차는 행정비용의 지역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외비용과 어느 정도의 허용범위에서, 비용 관련 지역적 차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확실히 하고, 국가평균비용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어 지역적 차이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제의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차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가 어느 특정 지역 또는 지리적 위치에 목적을 두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측정이 필요하다. 적절한 모집단 또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분류는 선진규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넓은 범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외적 도움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외주제작이나 용역을 선택하는 기업들과 내부적으로 작업하는 기업들이 서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다른 변수들에 기초하여 분류하게 되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복잡성을 모두 포섭하려는 시도는 그것의 기반이 사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요인으로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같은 시도는 측정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분류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급격히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과제에 있어서 구분의 정도, 이익의 최적화 그리고 자료의 처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의 행정비용에서 차이점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분류의 수는 간혹 변화될 것이며, 특정한 정보제공의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다. 측정에서 무엇을 포함할지, 무엇을 포함하지 않을지에 관한 결정이 정립되어야 하고 또한 다음 측정단계에서 분석의 결과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한다. 분류기준의 선택은 선진규제국과 해당 정부당국이 논의하여야 한다.

### 기업 분류의 예

덴마크 부가가치세 법상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보고되는지에 관련하여 기업을 서로 다른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기업들
- ▶ 대외무역 관련 기업들
- ▶ 혼합기업들
- ▶ 부동산 임대기업

그것은 디지털 방식의 보고와 외주제작에 관련된 분류와도 연결된다. 이 구분은 아래 서식으로 설명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기업		대외무역 관련 기업		혼합기업		부동산 임대기업	
	외주제작	비 외주	외주제작	비 외주	외주제작	비 외주	외주제작	비 외주
수동식의 부가가치세 보고								
디지털 방식의 부가가치세 보고								

### 5.6.5. 산업분야분석에서의 한계

산업분야분석의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측정의 문제점이 있다.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산업분야보다 더 많은 분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은 소매업(식품, 유류 등), 도매업, 유통 등을 포함할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 내의 각각의 사업부서들은 복합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항상 산업분석과 통계의 문제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관심이 산업분야별 부담을 분류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규제 분야의 일부 단위가 다른 분야의 통계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규제분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규제 분야는 낮은 수준의 규제 산업의 요소들을 잠재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이 문제점이 더 세밀한 부분으로 확대되어 분석에 이용된다. 식품, 의류, 유류 등과 같은 소매상 유형의 다수를 함께 경영하는 대형 소매상 기업을 예로 생각해보자. ('소매업' 등) 총체적 분류기준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의 몇몇을 제거할 것이지만 자세히 보기 어려운 잠재적 규제부담의 원인을 만들어낼 것이다. SIC(표준산업분류)에서 구별되는 다수의 산업 분야를 동시에 경영하는 기업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분야분석은 조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표준산업분류의 가장 총체적 수준이어야 한다. 비교 및 질적 분석은 부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산업분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 및 크기별 모집단 목록을 중소기업서비스와 국가통계원으로부터의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규제국이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목록들은, 복합기업들에게는 개별 단위의 분류와는 다른 전체 산업분야에 할당된 단위를 의미하는 부가가치세 기업 수준에 있을 것이다.

### 5.7. 모집단, 비율 그리고 빈도수에 대한 구체적 기술

각각의 규제/정보제공의무는 **모집단**을 가진다. 모집단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당해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낸다.

규제는 여러 다른 기업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집단은 개별적 각 부분으로 정해져야 한다.

여러 규제들이 한 기업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떠한 것은 개별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것은 (통계적 조사와 세금과 같은) 특별한 보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떠한 것은 회사 등록에 기초를 두기도 한다. 적절한 모집단의 수준은 개별규제를 통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 규제에 대한 모집단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분에 대하여 기업은 수많은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에 모집단은 특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의 수로 나타난다. 만약 정보제공의무가 사람의 손을 통하거나 전산화의 방법 모두로 보고될 수 있다면, 두 가지 선택사항의 각각에 대한 모집단은 역시 특정화되어야 한다.

각 정보제공의무는 수많은 자료요구를 포함한다. 이는 모집단의 특정화가 아닌 **비율**로 나타난다. 비율은 자료요구를 이행함으로써 정보제공의무를 따르는 기업의 모집단을 나타낸다.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이다. 그러나 모집단은 예를 들어 연간 적용의 횟수 또는 보고 횟수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정화된 모집단의 수는 규정에 따를 때 기업마다 소비하는 표준화된 자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절차 13에서 사용되므로, 모집단을 가능한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조금/승낙/정책의 적용에 관련한 모집단을 측정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만약 많은 객관적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보조금을 허락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이는 헥타르당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모집단은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수이다. 반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업은 모집단에서 제외된다. 두번째로, 접수되는 모든 지원을 평가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보조금 수혜를 승낙하는 방법이 있다. 이 지원자는 앞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 이것의 예로는 특정 선정위원회가 어떠한 제안서를 승인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기업이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는 혁신승인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모집단은 제출된 계획제안서의 수가 된다.

빈도수는 일년간에 정보제공의무/자료요구가 얼마나 많이 수행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어떠한 경우에 빈도수는 규제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 모든 기업이 다양한 범위에서 보고해야만 하는 정보제공의무나 자료요구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을 예를 들면, 주내 그리고 상품판매와 같은 많은 통계에 적용된다. 몇몇 정보제공의무가 매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통계적 정보의 범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들에 대한 빈도는, 만약 통계가 격년마다 보고되어야 한다면 0.5, 그리고 만약 3년마다 보고되어야 한다면 0.33 등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 모집단과 빈도수의 확정과 관련된 예

##### 예 1

만약 기업이 매년 수차례 보고해야한다면(예를 들어, 2회), 그 빈도수는 2회로 정해야 하고 이 유형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의 수는(예를 들어, 4000개의 회사) 4000개 이하의 모집단으로 정하여야 한다.

##### 예 2

만약 70개의 회사가 격년마다 보고하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모집단은 70개 그 빈도수는 0.5회이다.

##### 예 3

만약 개별적 기업의 정기적인 보고가 없다면(예를 들어 인가에 관해 기업의 존속기간 중 단 한번인 경우) 그 빈도수는 1회로 정해져야 하고 반면, 이 유형의 대한 연간 보고 수는(예를 들어, 70번의 연간인가) 70개 이하의 모집단으로 정해져야 한다.



모집단과 비율 그리고 빈도수를 확인할 때, 3.4.3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에 의한 ‘완전 준수’에 대한 논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집단, 비율 그리고 빈도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다른 근거가 있다.

- » 정부당국은 얼마나 많은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어떠한 환경에서 등록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규제하는 기업의 수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 » 정보는 통계적 자료로 부터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휴가 사례의 수에 관한 통계상의 근거를 통해 출산휴가의 행정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준 모집단 전체는 산업과 규모별 범위에 의하여 분석되는 통계적 근거를 기초로 사용가능하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들은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 몇몇의 경우, 특정 규제에 의하여 영향 받는 기업의 수 또는 규제에서의 특정 선택사항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것이 직접 정보제공의무를 다루는 어떠한 기업과 정보제공의무를 외주를 통해 이행하는 다른 기업들에 관한 문제라면, 어느 정도 비율의 기업이 외주를 통해 이행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의 기업이 자기 스스로 업무를 다루는지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 » 만약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당해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추정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용된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정보가 최신자료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근거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평가에 관한 기준을 문서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의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규제국은 산업과 규모별 범위에 의한 모집단 표를 제공한다. 이들은 VAT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영향받는 모집단은 이들 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체에 대한 분할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

### 5.8. 기업에 대한 인터뷰와 전문가의 평가

표준비용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가정은 모든 것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제공의무나, 단지 개별적 기업을 위한 중요하지 않은 행정활동만을 포함하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모든 정보제공의무가 반드시 기업에 대한 인터뷰라는 수단을 통해 측정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1)</sup> 예를 들어, 단지 소수의 기업과 적은 행정비용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는 정보제공의무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측정될 수 있다. 이것에는 전문가의 평가가 포함되며, 해당분야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상적 효율기업에 관한 행정비용 산정에 포함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측정단계 2에서 수행한 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대량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기업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 분석한 유사한 정보제공의무와의 비교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적은 정보제공의무가 종종 가능해진다. 이것은 측정단계 2의 절차 11에서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부담이 적은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

1) 대부분의 경우 대면인터뷰가 수단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복잡성은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는 확실한 응답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쉽지 않다. 구체적인 평가는 각각의 사안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하지만,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가 최근의 측정에 선택되었는지 명백히 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체계는, 정보제공의무가 기업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현재 존재하는 유사한 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분석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 상에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최근 평가를 위해 선택된 정보제공의무의 예**

부가가치세법에는 소수의 기업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몇몇의 기업들에 대하여 이동용 차량이나 유람선에서의 전력 재판매를 기록하기 위해 보조계량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들 특별 규정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의 방법을 통해 측정 될 것이다.

**5.9. 비용변수의 파악**

개별적 자료요구의 수행에 있어 포함된 업무에 관한 기업의 관련비용변수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 내의 비용변수와 외부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와 관련한 비용변수 등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절차에 포함된 업무는 주로 기업의 관련 비용변수가 절차 10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 전에 파악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결국 어떠한 업무그룹이 주어진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은 이들 인터뷰이다.

이 분석은 2005년도 시세를 사용한다. 사용된 비용변수는 아래 표2에 나타난다.

표 2 : 행정활동에 관한 비용변수

비용 영역	산정에 있어서의 비용변수
내 부	» 행정활동에 대하여 소비한 시간 / 분의 수치

[부록 1]

비용 영역	산정에 있어서의 비용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그룹에 대한 시간당 보수</li> <li>» 간접비용</li> </ul>
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활동에 대하여 소비한 시간 / 분의 수치</li> <li>»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외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li> </ul>
취 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정보제공의무 그리고/또는 정보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상 취득물에 관한 지출(파운드)</li> </ul>

### 5.9.1. 내부 업무그룹

내부 업무그룹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내에 피고용인집단이다. 1인당 시간당 보수는 통계청의 노동시간 및 소득 연례조사(ASHE)로부터 측정된 시간당 보수를 기초로 한다. 시간당 보수는 2005년<sup>2)</sup>도 물가를 기준으로 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 전체에 대한 대표 중간값으로 특정된다. 시간당 보수를 가지는 업무그룹은 부록 2에서 볼 수 있다.<sup>3)</sup>

전문가는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업무그룹을 파악할 때, 부록 2에서의 시간당 보수를 가지는 업무그룹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만약 전문가가 부록 2에서 그들이 도표화 하는 행정활동(들)을 수행하는 업무그룹과 일치하는 그룹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시간당 보수를 가지는

2) 현재 통계는 2004년에 관한 것이다. 2005년 결과는 가을에 발표될 것이며 이것은 최종 산정에 사용될 것이다.  
 3) 중간값은 통계청에서 선행측정 되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표본상에서 매우 높게 지급되는 개인들에 의해 상향되어 그 근거로 되었다. 반면, 소득 부분에 있어서의 하향부분은 제한되었다.

새로운 업무부문과 간접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업무부문은 반드시 선진규제국이 승인하여야 한다.

### 5.9.2. 간접비

30%의 간접비용은 일정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사용되어야 한다. 부록 2는 각 업무부문에 대한 30%의 간접비용을 제시한다. 개별 피고용인에 대한 간접비용은 직접적 지불 비용을 더하여 여러 비용들을 대표한다. 간접비용은 부동산(임대 또는 건물의 감가상각), 전화, 난방, 전기, IT 장비 등과 같은 고정된 행정비용과 연계된 비용들도 포함된다. 또한 간접비용은 질병에 의한 결근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가능한 한 행정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시간당 보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관한 시간당 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접비용은 또한 고용주의 사회보장적립금에도 적용된다. 부록 3은 간접비용이 기초로 한 구성요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산업과 기업의 규모에 관한 간접비용을 설명할 주요한 통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용가능성과 정확성 모두를 겸비한 간접비용에 대한 비율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이 30%의 경비 지출을 정하는 것이 행정적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그룹이 사용한 경비들에 근접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경비 비율을 추정해야만 한다. 전문가는 반드시 왜 간접비용의 비율이 지출상의 간접비용의 비율과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반드시 선진규제국이 승인하여야 한다.

### 5.9.3. 외부 서비스 제공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기업은 기업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 활동을 외주한다. 이들 제공자그룹은 외부 서비스 제공자라고 한다.

선진규제국과의 논의를 통해 전문가들은 필요한 외부 제공자 그룹과 시간당 평균 임금의 측정을 제공하는 외부 제공자 그룹을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얻게 된 정보는 이러한 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최종분석에 있어서 각 그룹에 관한 공통된 임금은 모든 산정에 이용될 것이다.

간접비용은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시간당 임금에 추가되지 않는다.

#### 5.9.4. 취득물

취득물은 정보제공과 자료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그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취득물의 비용은 내부 그리고 외부 지불 비용과 더불어 행정부담에 있어서의 비용변수에 포함된다.

취득물의 예는 연차결산보고서에서의 우편송부로 인한 비용과 같이 정보제공의무 또는 자료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낸 우편의 요금일 것이다. 또 다른 예는 기업이 이에 수반하는 보고서항에 대하여 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측량장치의 구입과 설치에 관한 비용일 것이다. 세번째 예는 시간으로 변환될 수 없는 외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일 것이다. 이 예는 지불가능한 연간 고정비에 대한 외부 급여 행정과 관계되어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 비용은 외부 제공자에 의하여 소비된 시간에 대한 특정한 수치로는 설명될 수 없다.

비용은 매년 계산된다. 몇 년 정도가 지나면 -만약 이것이 취득에 관련된 유형이라면 - 동일한 기간동안 새로운 측량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가정된다. 통계청은 국가회계에 있어서의 필요로써 재산현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

도식화된 예처럼, 기업이 특정화된 정보제공의무/자료요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용은 반드시 단독으로 발생된다. 기업은 전자식 보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인터넷 연결에 대한 상당한 필요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은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므로 연결 비용은 직접적으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비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포함된다.

우편요금이 관계되어 있는 한, 이와 관련된 우편 비용은 종이, 출력물 그리고 삽입물 비용에 관련하여 우편마다 10파운드가 추가되어 사용된다. 관련 기계류, 컴퓨터 장비 등과 같이 어떠한 부분에서 간접적인 생산비용은 이미 간접비용에 포함되어 이를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측량장치의 예가 관계되어 있는 한, “보통의” 측량장치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측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이 언급하는 비용과 비교가 될 것이다. 그 후, 동일한 비용은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이다.

## 5.10. 인터뷰 지침의 준비

인터뷰 지침의 목적은 인터뷰를 정형화시키는 것과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추산에 사용되기 위한 모든 정보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수집되도록 정확한 자료 수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적절한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시험실시되어야 한다.

인터뷰 지침은 효율적으로 시행되는 인터뷰에 따라 인터뷰 응답자가 가능한 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효한 수준에서의 정량적인 자료의 수집에 더하여, 그와 같은 정보가 수반되는 보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뷰의 질적인

[부록 1]

측면을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관련 지식의 수집이 중요한 것이다.

- » 규칙의 단순화에 대한 제안
- » 부담의 제거
- » 기업이 다른 상황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여부(다른 규제와 관련한 경계 참고)
- » 기업이 단순히 정부를 위하여 정보를 준비하는지 여부 또는 그들이 또한 정보를 그들 자신에게 사용하는지 여부(어떠한 ‘보통의’ 사업비용이 포함되는 영역의 확정을 위해)

인터뷰 지침이 기업에게 당해 정보제공의무 내에서 규칙의 단순화나 전산화의 도입에 관련하여 제안하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어떻게 주어진 규제를 인식하는지, 특히 정보제공의무가 합당하지 않거나/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터뷰의 중요한 요소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효율적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 즉, 최고의 실무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지식은 나중에 기업이 행정업무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기업에 대해 조언할 수 있게 한다.

인터뷰와 관련하여, 기업에 의해 제공되기 위한 정보가 오직 당해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또는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것인지를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부처, 국가 그리고 지역당국에의 보고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는 절차 2에서 수행되었던 규제와의 경계를 가지고 조율되어야 한다.



게다가, 전문가는 기업이 정보제공의무가 계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정보의 산출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가정은 기업은 순수하게 법령상의 요구로 인하여 당해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비록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정부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보관한다. 책을 보관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금융활동에 관한 적절한 정보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법령상 요구가 없다면, 그들은 그들의 금융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관하지 않을 것이다.

### 5.11. 인터뷰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택

기업들은 인터뷰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 그룹에 대한 정의가 용이하고 그 그룹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미리 판단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 인터뷰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작위 표본을 통해 인터뷰할 기업들과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위한 기업들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대표적인 대상 그룹인지를 알기 위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기업에게 할 수 있다. 또한 외주, IT 사용 또는 정보제공의무를 따르는데 소비하는 기업의 재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실제적 조사로써 이러한 초기 접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몇몇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영향을 받는 기업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정보제공의 의무에 의해 포함된 개별 기업에 대한 책임 정부부처가 가진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부처가 몇몇의 영향 받는 기업들에게 참가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된다고 알리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의 선택은 각각 기업 부분에서 최소 3개의 대표적 기업들과 질적인 인터뷰를 수행하여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해당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표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의 재원 소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 기업이 논리적으로 단지 주어진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하나의 부분만을 포함하는 반면에, 그와 같은 기업은 영향력을 미치는 법규적 부분 안의 다른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표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주어진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즉시 몇몇의 기업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계사는 자주 많은 기업의 부분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결코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 5.12. 기업 인터뷰의 수행

영향을 받은 기업들과 질적인 인터뷰를 함으로써, 기업이 자료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해야만 하는 16가지 표준적 행정 활동들 중 어느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활동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것은 정보제공의무를 구성하는 개별 자료요구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어떠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각 활동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들에서 실제적인 정보요구를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나, 그리고 법규 준수를 위하여 실행한 행정적 활동들 사이에 나뉜 시간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인터뷰들은 또한 시간, 임금, 외주 등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유효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업과의 인터뷰를 수행하는 것은 그 방법과 법규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경험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인터뷰 수행자는 절차 8의 인터뷰 지침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인터뷰 자체는 기업과 인터뷰 수행자 간의 허가된 문답의 형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인터뷰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 개인적 인터뷰 : 이러한 유형은 규제에 행정적 비용을 식별하는데 선호되는 방법이다. 인터뷰는 각각 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1~2시간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해당 법규분야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복잡한 법규의 분야라면 두 사람의 인터뷰 수행자를 동원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
- 전화 인터뷰 : 이러한 유형은 단지 고립된 정보 제공의무의 비용이 확인되어야 하거나 그 인터뷰가 30분 이하로 걸릴 것이 예상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 집중 그룹 인터뷰 : 이러한 유형은 적은 수의 기업과 관련 전문가가 고도로 복잡한 법규를 조사하는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커스 그룹의 논의는 표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활동을 포함하여, 복잡한 정보제공의무를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도와준다.

특별히 개인적 및 전화 인터뷰와 관련하여 인터뷰 수행자가 인터뷰 중이나 후에 모든 인터뷰한 기업이 여전히 자원소비와 관련이 있는 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대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많은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것의 데이터는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기업들과 완전히 다른 재원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표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기준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만약 어떤 기업이 자료로부터 배제된다면, 그 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대체를 하고, 그에 따라 인터뷰를 해야만 할 것이다.

전문가는 선진규제국이 알 수 있도록 정상적 효율기업이라고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5.13. 정상적 효율기업의 식별

모든 인터뷰가 수행되면, 결과는 개별적 기업부분에 따라 요약되어야 한다. 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정상적 효율기업이 주어진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자료제공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행정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기업의 내부비용 및 외부적 지원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다.

반면 인터뷰를 통해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전문가는 자료요구를 준수하는데 연관된 개별적 행정활동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는 자료들에 표준화된 표를 기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개별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산출하고 어떠한 것인 합리적인 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시간을 소비하는 절차로서 각각의 선택으로 기초가 된 개별적 고려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으로 무조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중간평 균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수집된 자료와 전문가의 평가를 기초로 표준화된 수치를 산출한다.

그림 7은 정상적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시간 소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 주고, 기업이 표준적으로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 정상적 효율기업의 식별

행정활동 A			행정활동 B		
회사 1	10분	10분	회사 1	10분	15분
회사 2	10분		회사 2	20분	
회사 3	10분		회사 3	10분	
회사 4	10분		회사 4	20분	
회사 5	30분		회사 5	15분	
행정활동 C			행정활동 D		
회사 1	10분	더 많은 인터뷰	회사 1	10분	20분
회사 2	20분		회사 2	20분	
회사 3	50분		회사 3	25분	
회사 4	2분		회사 4	20분	
회사 5	5분		회사 5	15분	

활동 A와 관련해서는, 회사 5는 명백히 다른 기업들과 다르며 따라서 표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인터뷰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활동 B의 경우에 컨설턴트들은 표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수준을 평가한다. 이때 흔히 중간값을 사용한다. 활동 C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인터뷰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에 의해 주어진 응답들이 표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기에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또한 선택된 기업들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지 또는 단순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환경은 기업들이 다른 자원 소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전적 분석의 일부분이 재고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더 많은 기업 인터뷰를 통하여 많은 구분을 수행한다. 활동 D의 경우에는 표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수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문가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다.

#### 5.14. 기업 분야 대 활동 대비 시간과 자원 소비의 표준화

총 결과가 산출되기 전에, 각 자료요구/활동/구분 셀이 관련된 변수 상의 정상적 효율기업에 대한 평가를 가지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 인터뷰의 결과를 사용하여 평가가 식별된 경우, 이 평가를 이용하여 발생한 차이를 채워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인터뷰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전문 평가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발생하기도 한다.

평가는 정부부처와 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유사한 셀에 대한 산정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집에 있어서의 발생된 차이를 채운 경우, 큰 변수를 가지는 유사한 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적 분석은 그와 같은 셀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 5.15. 보 고

산정의 완료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큰 규모의 기준측정을 위한 담당부처별 보고서가 존재하며 전체적인 산정작업을 요약한

검토보고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산정의 결과를 알리기 위한 주요수단이다. 보고서는 반드시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폭넓은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된 규제영역에서의 행정비용을 나타내는 것에 더하여 표준비용 모델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를 알리기 위한 보고서에는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과정 중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내용 및 범위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이 기술되어 있는 개요 보고서 틀은 부록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인 보고서의 체계와 내용은 정부부처 및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복잡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산정의 각 부분에 있어서 보고틀에 관한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 » 부록에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에 관하여 평이한 용어의 사용과 간단한 체계를 이용
- » 정책영역 / 조직상의 구성원 / 정부당국 등으로 나누어지는 담당 부처에서의 주요요구사항 / 규제의 초점을 맞춤
- » 산정에 적합한 산업영역간의 중복과 기업규모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담당 정부부처와의 연관관계를 강조
- » 규제기관 및 산업에 있어서 주요 규제영역에 대한 강조
- » 정부부처의 규제근거 분석(EU, 국내 등) 그리고 각 근거로부터 도출된 부담을 분석
- » 적절한 방법론의 적용과 정부부처에서 발생한 문제를 문서화함. 여기에는 시간, 인터뷰 수행의 횟수, 직면한 문제, 중복되는 규

[부록 1]

제에 대한 담당 정부부처의 견해 - 즉, 누가 책임을 지는가 등을 포함하여 산정절차를 요약하여야 한다.

» 의무, 부담 등의 완성된 목록을 가진 부록을 포함함

담당 정부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 정부당국 또는 규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일반적으로 정부부처 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당국자가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부처와 선진규제국 사이에 자세한 내용이 합의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발표가능한 양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반드시 출판되어서 관련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진규제국이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논의하기 쉬워야 한다. 보고서에서 그래프와 도표를 통하여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한 해당규제와 분석된 결과를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확장된 산정계획이 착수되는 영역(예를 들어 기준측정)에서도 개괄적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로 전문가와 함께 선진규제국이 작성한다. 이것은 개별적인 담당부처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작성될 수 없다. 개괄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 해당부처의 정보설명
- » 주요 관련성,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측정방법의 설명
- » 필요한 경우 한정된 산업분야의 분석을 포함
- » 전반적인 규제 대상에 대한 분석(즉, EU, 국내 등)
- » 기업규모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의 제공

### 5.15.1. 결과의 발표

표준비용모형 측정을 수행하는 과정은 특히 기준측정의 경우 다양한 단계에서의 많은 수의 행정비용을 평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명확히 보고되는 것이 중요하며, 측정의 대상과 방법 역시 그러하다. 또한 평가는 지시적인 것이지 통계적인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한다. 평가가 그 자체보다 정확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알려진다는 점에 위험성이 있다.

표준비용모델 측정의 목적은 중앙정부의 규제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에 관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준은 행정간소화와 부담감축절차의 이용될 수 있다. 문화전반에 관련된 근본적인 목적은 범정부적으로 보다 나은 규제를 만드는 정책을 이룩하는 것이다.

결과의 보고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제시된다.

- 항상 대략적으로 평가하듯 결과를 표현하면 막연한 불확실성을 주는 인상을 피하게 된다.
- 특정 행정비용이 어느 행정부담의 일부가 되는가를 명확히 하라
- 앞부분의 결과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을 포함하라 : 이러한 결과는 영국비용표준모델 측정방법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측정에 관하여 실용적인 방법을 취하며, 따라서 그 결과도 통계적일 것이 아니다.

결과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측정의 내용은 실용적으로 분석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통계적 분석이 그 측정에 관하여 통계적 확증을 할 수도 있다.

## 【별첨 1】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상 차이

(Differences in Application of the SCM)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SCM)은 오늘날 10개국 이상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체코 공화국이 여러 방식으로 이 모델을 사용한다. 이를 적용하는 국가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표1은 기업영역에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

비록 모든 국가가 같은 기술적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은 존재한다. 이 단문은 어디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문서는 주로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서 일탈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가장 큰 표준비용모델 경험 국가이다.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는 “표준비용모델” 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사용된 방법의 필수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행정비용은 매년 행해진 행위의 총 수(수량)이 곱해진 행위의 평균비용(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행위 당 평균비용은 (계산된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비용과 행위 당 필요로 하는 시간의 곱으로 측정된다. 총 행위의 수는 활동을 해야 하는 실체의 수와 활동의 빈도수의 곱으로 평가된다.

$$\Sigma P \times Q$$

(가 격 = 요금 × 시간 ; Q : 수량 = 실체의 수 × 빈도수)

## 사기업, 자선활동, 자원활동 영역 등

표준비용모델은 본래 사기업의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몇몇 국가는 사기업의 의미를 '시장조건 하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하여 소유자의 실질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단체'라고 좁게 정의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국가는 자선사업, 자발적 영역과 공기업 혹은 부분적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얼마나 많은 모집단이 주어진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인지 대하여 누군가가 수치를 산정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사기업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좁은 의미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만약 그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경우 그 기업은 이에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 사기업은 자발적 영역 및 자선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를 이해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발적 영역 및 자선활동 외에도 자신의 비용을 다루는 공기업 역시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 규제의 정의

표준비용모델은 본래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경우 규제부담의 많은 부분이 비법률적 규제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률과 정책결정체계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규제는 오로지 법률적인 부분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영국은 업무승인코드와 같이 정부를 배경으로 하는 비법률적 규제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다.

## 자발적 영역 규제와 관련한 산정여부

산정을 하기 위하여 규제가 관련되어 있는 한, 두 유형의 규제(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적 규제와 기업이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자발적 자율규제)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적 규제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표준비용모델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지킬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의 경우에는 다르다. 자발적 자율규제에는 보조정책 또는 보상금정책에 지원하는 것, 제공할지 안할지에 대하여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통계정보상의 일정유형이 포함된다.

시장과 관련하여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자발적 자율 규정과, 이와는 다르게 기업이 필수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는 규정사이의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업보조금의 지원에 관련한 요구사항과 같이, 자발적 자율규제는 따르기로 결정한 어떠한 규정에 관하여 기업의 대다수가 연관되어 있는 때에는 필수가 된다. 따라서 비록 어떠한 규정이 이론적으로 자율선택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만약 기업이 완성되지 않을한다면, 시장진입을 원한다면 실제적으로 그것들은 종종 공적부조와 같이 자율선택영역이 되지 않기도 한다.

덴마크의 경우 (자발적 자율규제는 따르기로 결정한 어떠한 규정에 관하여 기업의 대다수가 연관되어 있는 곳인 경우)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자율규제는 산정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보조 또는 보상금정책 등은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 네덜란드는 자발적 자율 규제를 제외한 모든 법적 사항을 산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발적 자율 규제와 강제적 규제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자발적 자율 규제를 산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모든 자발적 자율규제영역을 산정한다. 이에 더하여 영국은 높은 부담으로 인하여 목표집단의 전체적인 활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곳의 잠재적 부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목표집단을 100%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활용수준이 크게 다르다고 알려진 곳은 규제 및 산정 절차의 목록화 동안에 표시될 것이다.

###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의무

제3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예를 들어 종업원 또는 소비자와 같은 (정부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기업의 의무를 말한다.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예는 제품의 제품식별번호이다. 법적으로 슈퍼마켓의 제품은 성분, 영양값, 유통기간 등의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한다. 다른 예로 고객을 위하여 투자상품에 수반되는 금융관련 설명서가 있다.

국가들이 기업의 정보제공의무의 산정을 공공부문 단독영역에서 하도록 결정하는지, 제3자에 의한 기업의 정보제공의무가 산정에 포함되는 지는 각 국가별로 다르다. 정보제공의무의 두 가지 유형 모두 규제로부터 발생한 의무이고 기업의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은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의무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역시 산정한다. 영국은 오직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만을 산정하며,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

### 완전 또는 실질적 준수

명령된 규제를 이행함에 따른 비용이 산정된다. 선택적으로, 오로지 일부의 이행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이 산정된다. 왜 규제가 그것에 의하여 규율되는 모든 기업에 의하여 엄밀히 이행되지 않는 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기업에 의하여 규제가 잘못 이해된 것이다. 반면 다른 이유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예상 규제부분을 이행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다.

- 완전 준수 : 완전한 규제의 이행에 따라 관련된 모든 기업이 가지는 비용의 산정. 이것은 산정되는 규정에 따르는 기업의 실질적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가 및 기업에게 요구되는 규제부분의 이행함에 따라 이들 유형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용의 액수

- 실질적 준수 : 규제의 이행에 따라 관련된 기업이 가지는 실질적 비용의 산정. 추산된 모집단은 (비록 보다 많은 기업이 규제에 따를 것이 요구되지만) 단지 규제를 진정으로 따르는 기업의 수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영국은 전체 이행에 관하여 산정한다. 네덜란드는 전체 이행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실질적 이행에 관한 통계적 사항이 이용 가능할 경우 실질적 이행에 관하여 산정한다.

### 행정비용의 상환

몇 가지 경우에서 정보제공의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의무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의 보상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상환을 받는다.

덴마크는 상환비용을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행정비용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은 상환비용이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행정비용 산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네트워크상 그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기 위하여 상환수준을 기록한다. 네덜란드는 상환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법적 정보제공의무를 행정비용으로서 여긴다. 그러나 상환비용은 (P에서) 행정비용 산정 과정에서 명백해 진다.

### 정보수집

표준비용모델의 목표는 전형적인 기업을 기초로 하여 행정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평균 기업이 아닌 전형적 기업이다(통계용어상 중간값). 평균적 기업 대신 전형적 기업은 -대표적이지 않은- 예외적 기업이 일반적인 이행상황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다. 전형적인 기업으로부터 많은 기업 표본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무작위 표본은 피하여야 한다.

실제로 전문가가 전형적인 기업표본을 만든다. 전형적인 기업의 선택은 주로 법적 설명에 따른다. 법에 의하여 영향받는 기업의 총 모집단은 법적 설명과 차이의 수준에 따라 전형적 기업의 제한적 숫자로 나뉜다. 심층인터뷰를 통한 기업의 선정 동안 이러한 상황은 고려

[부록 1]

된다. 정확히 얼마나 국가 또는 전문가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는지는 모든 상황과 해석에 따라 다를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는 국가는 정보수집의 도구로써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업을 관련시킨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른 여러 존재와 관련 있을 경우, 차이점은 인터뷰가 수행되는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영국은 중앙에서의 조정을 통하여 산정을 수행한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관련 부분에 여러 전문가를 두는 것과 같이 이를 분산시켜 조직한다. 이 전문가들은 표준비용모델 설명책자를 이용한다. 덴마크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자세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이와 유사하게 인터뷰 지침을 발전시키고 있다.

**시민 대 기업 대 정부 당국**

어떠한 국가에서는 기업 보다는 다른 집단을 위하여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이 모델을 시민과 공공기관에 의한 행정비용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접근은 기업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시민 및 공공기관을 위한 표준비용모델은 목표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비교하여 여러 과정의 측면을 포함한다.

[표 A1] 각 국가 별 기업에 있어서의 측정 개관 (2005.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L	CZ	DK	DE	SWE	NO	EST	HU	POL	BE	IT	FR	UK
세 금													
-(송장(送狀) 송부를 제외한) 부가 가치세	Y	P	Y	N	Y	Y	Y	Y	Y	Y	P	N	P
- 소비세	Y	P	Y	N	N	Y	N	N	N	N	N	N	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기 타	Y	P	Y	N	P	P	N	N	N	N	N	N	P
기업과 경제활동	Y	P	Y	N	N	P	N	N	N	N	N	N	P
통 계	Y	P	Y	N	N	P	N	P	N	N	N	N	P
사 법	Y	P	Y	N	N	P	N	N	N	N	N	N	P
연 차 보고서	Y	P	Y	N	Y	P	N	N	Y	N	N	N	P
금융시장	Y	P	Y	N	N	P	N	N	N	N	N	N	P
환 경	Y	P	Y	N	Y	Y	N	N	N	N	N	N	P
영업 허가 및 인가	Y	P	Y	N	N	P	N	N	N	P	P	P	P
사회 활동	Y	P	Y	N	N	P	N	N	N	N	N	N	P
노동법	Y	P	Y	N	P	P	N	N	N	N	N	N	P
작업안전성	Y	P	Y	N	N	Y	N	N	N	N	N	N	P
(식품) 안전성	Y	P	Y	N	N	P	N	N	N	N	N	N	P
인테리어	Y	P	Y	N	N	P	N	N	N	N	N	N	P
보 건	Y	P	Y	N	N	Y	N	N	N	N	N	N	P
가족, 소비자 활동	Y	P	Y	N	N	P	N	N	N	N	N	N	P
과학, 기술, 기술혁신	Y	P	Y	N	N	P	N	N	N	N	N	N	P
문 화	Y	P	Y	N	N	P	N	N	N	N	N	N	P
운 송	Y	P	Y	N	N	P	N	N	Y	N	N	N	P

NL = 네덜란드, CZ = 체코, DK = 덴마크, SWE = 스웨덴, NO = 노르웨이, EST = 에스토니아, HU = 헝가리, POL = 폴란드, BE = 벨기에, IT = 이탈리아, FR = 프랑스, UK = 영국, Y = 측정, N = 미측정, P = 측정계획 또는 측정 중(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스페인 등과 같은 몇몇 국가는 국민과 행정당국에 의한 행정비용계획을 가지고 있다).



## 【별첨 2】 연관 시간당 급여와 관련된 직업군

### 2.1 국내 직업군

통계청의 연간조사에서 나타난 2005년도 물가 상의 평균 시간당 급여가 사용된다.

가능한한 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구성원의 직업은 ONS 표준직업 분류 2000(SOC 2000)에 네 자릿수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적절한 임금이 선택될 수 있다. SOC 자료는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참고목록을 제시한다.

30%의 간접비용은 영국화폐로 표시된다. 거기에 더하여 간접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임금 비용이 표시된다. 전문가들이 제시되어진 30%의 간접비용을 측정한 곳과 그들이 만난 행정활동을 하는 개별 집단의 간접비용간 차이가 현저하게 클 경우, 전문가들은 그들 스스로 간접비용비율을 측정해야할 것이다.

표 A2-1 : 모든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시간당 보수  
- 초과근무수당(£)은 제외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모든 근로자	9.21	2.76	11.97
1	관리인 그리고 고위관리	15.56	4.67	20.23
11	회사 관리인	16.34	4.90	21.24
111	회사 경영자들 그리고 고위관리들	34.39	10.32	44.71
1111	중앙정부의 고위관리	29.82	8.95	38.77
1112		46.95	14.09	61.04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이사 그리고 주요 기구의 최고경영자			
1113	지방정부의 고위관리	16.16	4.85	21.01
1114	특별이해기구의 고위임원	..	..	..
112	생산 관리인	15.85	4.76	20.61
1121	생산, 업무 그리고 정비 관리인	16.19	4.86	21.05
1122	건축에 대한 관리인	14.46	4.34	48.80
1123	채광 및 에너지에 대한 관리인	21.32	6.40	27.72
113	기능관리인	20.04	6.01	26.05
1131	기능관리인 및 공인비서	24.68	7.40	32.08
1132	마케팅 및 판매관리자	19.19	5.76	24.95
1133	구매담당자	17.68	5.30	22.98
1134	광고 및 공공부문 관련 담당인	18.77	5.63	24.40
1135	직원, 훈련 및 산업 관련 관리인	18.25	5.48	23.73
1136	정보 및 통신기술 관련 관리인	20.89	6.27	27.16
1137	연구 및 개발 관련 관리인	18.42	5.53	23.95
114	품질 및 고객관리 관련 관리인	15.10	4.53	19.63
1141	품질 보증 관련 관리인	16.17	4.85	21.02
1142	고객관리 관련 관리인	14.42	4.33	18.75
115	금융 기관 및 사무실 관련 관리인	15.04	4.51	19.55
1151	금융 기관 관련 관리인	16.95	5.09	22.04
1152	사무실 관련 관리인	14.33	4.30	18.63
116	유통, 저장 및 보관 관리인	10.12	3.04	13.16
1161	수송 및 유통 관리인	13.37	4.01	17.38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1162	저장 및 참고 관리인	11.35	3.41	14.76
1163	소매 및 도매 관리인	8.92	2.68	11.60
117	보호서비스 담당자	19.08	5.72	24.80
1171	무력 관련 담당자	20.46	6.14	26.60
1172	경찰관(검찰관 및 그 위 직급)	20.61	6.18	26.79
1173	소방, 구급차, 소방차, 교도 관련 고 위임원 및 그와 관계된 서비스	15.77	4.73	20.50
1174	보안관련 담당자	..	..	..
118	보건 및 사회서비스 관련 담당자	14.46	4.34	18.80
1181	병원 및 보건 서비스 관련 담당자	16.36	4.91	21.27
1182	계약 관련 담당자	16.86	5.06	21.92
1183	의료 실행 관련 담당자	12.12	3.64	15.76
1184	사회서비스 관련 담당자	15.51	4.65	20.16
1185	거주 및 보육 관련 담당자	12.60	3.78	16.38
12	농업과 서비스 관련 관리자 및 경영자	12.01	3.60	15.61
121	농업, 원예, 임업 그리고 어업 관련 관리자	10.90	3.27	14.17
1211	농장관리인	9.51	2.85	12.36
1212	자연환경 및 보존 관련 관리인	..	..	..
1219	그 외의 축산, 임업 그리고 어업 관련 관리자	..	..	..
122	접대 서비스 및 여가 서비스 관련 관리자 및 경영자	9.09	2.73	11.82
1221	호텔 및 숙박시설 관련 관리인	8.64	2.59	11.23
1222		..	..	..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회의 및 전시 관련 관리인			
1223	요식 및 요식 조달 관련 관리자	9.21	2.76	11.97
1224	허가된 토지에서의 주류 판매인 및 관리인	7.23	2.17	9.40
1225	여가 및 스포츠 관련 관리인	10.68	3.20	13.38
1226	여행사 관리인	10.28	3.08	13.36
123	그 외 서비스 산업 상의 관리자 및 경영자	14.28	4.28	18.56
1231	재산, 주거 및 토지 관리인	15.35	4.61	19.96
1232	차고 관리인 및 소유자	10.72	3.22	13.94
1233	이발 및 미장 관련 관리자, 경영자	..	..	..
1234	점주 및 도매/소매 상인	10.87	3.26	14.13
1235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관련 담당자	..	..	..
1239	그 외 다른 서비스 관련 담당자 및 경영자	14.77	4.43	19.20
2	전문직	17.08	5.12	22.20
21	과학 및 기술 관련 전문가	15.68	4.70	20.38
211	과학 관련 전문가	15.10	4.53	19.63
2111	화학자	14.88	4.46	19.34
2112	생물학자 및 생화학자	15.00	4.50	19.50
2113	물리학자, 지질학자 및 기상학자	15.76	4.73	20.49
212	공학 관련 전문가	15.19	4.56	19.75
2121	토목기사	14.37	4.31	18.68
2122	기계공학자	16.13	4.84	20.97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2123	전기기술자	..	..	..
2124	전자기술자	..	..	..
2125	화학기술자	×	..	..
2126	설계, 개발 기술자	16.23	4.87	21.10
2127	생산 및 공정관련 기술자	..	..	..
2128	계획/품질관리 기술자	13.47	4.04	17.51
2129	그 외에 전문기술자	14.96	4.49	19.45
213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전문가	16.69	5.01	21.70
2131	IT전략 및 계획 관련 전문가	20.70	6.21	26.91
2132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16.10	4.83	20.93
22	보건 관련 전문가	24.50	7.35	31.85
221	보건 관련 전문가	24.50	7.35	31.85
2211	의료업 개업자	28.83	8.65	37.48
2212	심리학자	20.24	6.07	26.31
2213	약사/약물학자	17.37	5.21	22.58
2214	검안사	18.31	5.49	23.80
2215	치과의사	..	..	..
2216	수의사	15.71	4.71	20.42
23	교습 및 연구 관련 전문가	17.82	5.35	23.17
231	교습 관련 전문가	18.06	5.42	23.48
2311	고등 교육 교사	19.24	5.77	25.01
2312	성인 교육 교사	15.56	4.67	20.23
2313	교육 관련 담당관 및 장학사	18.81	5.64	24.45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2314	중등 교육 교사	18.77	5.63	24.40
2315	초등 교육 및 보육 교육 교사	18.04	5.41	23.45
2316	특수 교육 교사	19.04	5.71	24.75
2317	학적계원 및 고위 교육 설립 관리자	16.48	4.94	21.42
2319	그 외에 교육 관련 전문가	..	..	..
232	연구 관련 전문가	13.17	3.95	17.12
2321	과학자	14.61	4.38	18.99
2322	사회과학 연구원	×	..	..
2329	그 외에 연구원	12.33	3.70	16.03
24	기업 및 공공서비스 관련 전문가	15.52	4.66	20.18
241	법률 전문가	21.12	6.34	27.46
2411	법무관 그리고 변호사, 법관 그리고 검시관	22.07	6.62	28.69
2419	그 외에 법률 관련 전문가	16.84	5.05	21.89
242	기업 및 통계 관련 전문가	18.19	5.46	23.65
2421	공인 회계사	17.87	5.36	23.23
2422	회계 관리자	17.18	5.75	22.33
2423	경영컨설턴트, 보험회계사, 경제학 자 및 통계학자	19.01	5.70	24.71
243	건축가, 도시개발계획자, 측량기사	15.46	4.64	20.10
2431	건축기사	15.87	4.76	20.63
2432	도시개발계획자	15.79	4.74	20.53
2433	견적사	14.60	4.38	18.98
2434	공인건축사	15.19	4.56	19.75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244	공공서비스 관련 전문가	12.30	3.69	15.99
2441	공공사업 관련 행정전문가	17.94	5.38	23.32
2442	사회사업가	13.10	3.93	17.03
2443	보호관찰관	13.13	3.94	17.07
2444	성직자	9.49	2.85	12.34
245	사서 및 그와 관련된 직업	11.41	3.42	14.83
2451	사 서	11.76	3.53	15.29
2452	기록 관리 전문 담당자 및 전시책임자	10.61	3.18	13.79
3	기술 관련 전문가 및 기술 관련 직업	12.28	3.68	15.96
31	과학 및 기술 관련 전문가	11.42	3.43	14.85
311	과학 및 공학 관련 기술자	10.62	3.79	13.81
3111	연구소 기술자	9.63	2.89	12.52
3112	전기/전자 기술자	10.65	3.20	13.85
3113	공학 기술자	12.83	3.85	16.68
3114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10.17	3.05	13.22
3115	품질 관리 기술자	..	..	..
3119	그 외에 과학 및 공학 관리 기술자	9.78	2.93	12.71
312	제도사 및 건축 검사원	11.80	3.54	15.34
3121	건축 기술자 및 도시계획기술자	12.34	3.70	16.04
3122	제도사	11.20	3.36	14.56
3123	건축 검사원	..	..	..
313	IT서비스 보급 관련 직업	12.80	3.84	16.64
3131	IT운영기술자	13.60	1.08	17.68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3132	IT 사용자 지원 기술자	11.46	3.44	14.90
32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11.90	3.57	15.47
321	보건 관련 전문가	12.27	3.68	15.95
3211	간호사	12.25	3.68	15.93
3212	조산사	14.87	4.46	19.33
3213	의료 보조자	10.53	3.16	13.69
3214	의료방사선 관리인	15.55	4.67	20.22
3215	발 치료 전문의	13.08	3.92	17.00
3216	안경 제조자	9.58	2.87	12.45
3217	약제사	7.16	2.15	9.31
3218	의료기술자 및 치기공사	10.23	3.07	13.30
322	치료사	14.20	4.26	18.46
3221	치료학자	13.87	4.16	18.03
3222	직업치료사	13.70	4.11	17.81
3223	음성 및 언어 치료사	14.77	4.43	19.20
3229	그 외에 치료사	14.53	4.36	18.89
323	사회 복지 관련 전문가	10.11	3.03	13.14
3231	청소년 지도자/지역 사회 복지사	9.81	2.94	12.75
3232	주택 및 복지 담당관	10.28	3.08	13.36
33	보호 서비스 관련 직업	12.97	3.89	16.86
331	보호 서비스 관련 직업	12.97	3.89	16.86
3311	하사관들 및 그 외 구성원	10.97	3.29	14.26
3312	경찰관(경사 및 그 이하직급)	14.47	4.34	18.8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3313	소방대원(주요 소방관련 사무관 및 그 이하직급)	11.04	3.31	14.35
3314	교도소 관리자(주요 사무관 이하 직급)	12.32	3.70	16.02
3319	그 외의 보호서비스 관련 전문가	11.58	3.47	15.05
34	문화, 매체 및 스포츠 관련 직업	12.28	3.68	15.96
341	예술과 문학 관련 직업	12.41	3.72	16.13
3411	예술가	10.77	3.23	14.00
3412	저 자, 작 가	12.29	3.69	15.98
3413	남자배우, 연예인	×		
3414	무용가 및 안무가	×		
3415	음악가	12.12	3.64	15.76
3416	예술품 관리자, 제작자 및 감독자	14.11	4.23	18.34
342	디자인 관련 전문가	11.78	3.53	15.31
3421	그래픽 디자이너	11.28	3.53	15.31
3422	작품, 의류 및 그와 관련된 디자이너	13.10	3.98	17.03
343	매체 관련 전문가	13.56	4.07	17.63
3431	언론인, 뉴스 및 정기 간행물 편집자	13.58	4.07	17.65
3432	방송 관련 전문가	18.03	5.41	23.44
3433	홍보관	11.94	3.58	15.52
3434	사진작가 및 시청각장비 조작자	10.93	3.28	14.21
344	스포츠 및 건강 관련 직업	9.15	2.75	11.90
3441	운동선수	×		
3442	스포츠 코치, 지도자 그리고 담당관	9.86	2.96	12.82
3443		7.05	2.12	9.17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피트니스 강사			
3449	그 외의 스포츠 및 건강 관련 직업	7.43	2.23	9.66
35	기업 및 공공서비스 관련 전문가	12.80	3.94	16.64
351	운송 관련 전문가	17.89	5.37	23.26
3511	항공 교통 통제관	..	..	..
3512	항공기 조종사 및 기관사	32.59	9.78	42.37
3513	선박 및 공기부양정 담당관	×		
3514	기관사	..	..	..
352	법률 관련 전문가	13.06	3.92	16.98
3520	법률 관련 전문가	13.06	3.92	16.98
353	기업 및 금융 관련 전문가	14.81	4.44	19.25
3531	견적자, 평가인 그리고 손해사정인	12.96	3.89	16.85
3532	중개인	21.12	6.34	27.46
3533	보험업자	16.21	4.86	21.07
3534	금융 및 투자 분석가/고문	15.77	4.73	20.50
3535	세무 전문가	14.91	4.47	19.38
3536	수입/수출업자	..	..	..
3537	금융 및 회계 전문가	19.86	5.96	25.82
3539	기업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	12.00	3.60	15.60
354	판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	11.35	3.41	14.76
3541	구매자와 구매관리자	12.25	3.68	15.93
3542	영업사원	11.16	3.35	14.51
3543	시장 관련 전문가	11.49	3.45	14.94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3544	부동산 중개업자, 경매인	8.22	2.47	10.69
355	보전 관련 전문가	11.40	3.42	14.82
3551	보전 그리고 환경보호 담당자	13.55	4.07	17.62
3552	지방 그리고 공원 경비원	7.99	2.40	10.39
356	공공서비스 와 그 외 관련 전문가	12.53	3.76	16.29
3561	공공서비스 관련 전문가	15.81	4.74	20.55
3562	인사 그리고 산업 관련 담당관	11.52	3.46	14.98
3563	직업/산업 관련 훈련 및 교육 담당관	10.38	3.11	13.49
3564	경력 상담가 와 취업 지도 전문가	12.01	3.60	15.61
3565	공장, 공익설비 및 거래 표준에 관 한 감독관	12.71	3.81	16.52
3566	법정 시험관	11.46	3.44	14.90
3567	산업 위생사와 안전담당관(보건과 안전)	13.94	4.18	18.12
3568	환경 보건 담당관	..	..	..
4	행정 및 비서 관련 직업	8.01	2.40	10.41
41	행정직업	8.07	2.42	10.49
411	행정직업 : 정부와 관련 기구	8.49	2.55	11.04
4111	행정사무담당 고위임원	11.12	3.34	14.46
4112	행정사무담당자 및 보조자	7.55	2.27	9.82
4113	지방정부 사무관 및 보조자	8.57	2.57	11.14
4114	비정부기구임원	10.64	3.19	13.83
412	행정직업 : 재 정	8.57	2.57	11.14
4121	신용 관리인	8.65	2.60	11.25
4122		8.70	2.61	11.31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회계 및 임금 담당 사무관, 부기계 원, 그 외 재정담당 사무관			
4123	정산담당사무관	8.36	2.51	10.87
413	행정직업 : 기 록	7.70	2.31	10.01
4131	서류정리 그리고 다른 기록 보조자/ 사무관	7.70	2.31	10.01
4132	연금 및 보험 담당 사무관	8.55	2.57	11.12
4133	재고 관리 담당 사무관	7.66	2.30	9.96
4134	운송 및 배달 담당 사무관	8.97	2.69	11.66
4135	도서관 담당 보조자/사무관	7.3	2.21	9.58
4136	데이터베이스 담당 보조자/사무관	7.22	2.17	9.39
4137	시장조사 인터뷰담당자	6.84	2.05	8.89
414	행정직업 : 통 신	8.02	2.41	10.43
4141	전화교환원	6.99	2.10	9.09
4142	통신사업자	10.59	3.18	13.77
415	행정직업 : 일 반	7.54	2.26	9.80
4150	일반 사무보조자/사무관	7.54	2.26	9.80
42	비서 및 그와 관련된 직업	7.81	2.34	10.15
421	비서 및 그와 관련된 직업	7.81	2.34	10.15
4211	의료비서관	8.23	2.47	10.70
4212	법정비서관	8.64	2.59	11.23
4213	학교비서관	7.10	2.13	9.23
4214	기업비서관	10.44	2.13	13.57
4215	개인 비서 및 그 외 다른 비서	9.12	2.74	11.86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4216	접수원	6.33	1.90	8.23
4217	타자 담당자	7.29	2.19	9.48
5	전문적인 거래 관련 직업	8.97	2.69	11.66
51	전문적인 농업 관련 거래	6.98	2.09	9.07
511	농업 관련 거래	6.98	2.09	9.07
5111	농 부	..	..	..
5112	원예 관련 거래	6.02	1.81	7.83
5113	정원사 및 공원관리자(남/녀)	7.09	2.13	9.22
5119	농업 및 어업 관련 거래	6.64	1.99	8.63
52	전문적인 금속 / 전력에 관한 거래	10.00	3.00	13.00
521	금속성형, 용접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래	8.77	2.63	11.40
5211	금속세공인, 단조 공장 근무자	..	..	..
5212	주형공, (전선 등의)심 제작자, 거푸 집 구조자	9.10	2.73	11.83
5213	판금 제작공	8.76	2.63	11.39
5214	금속판 제작공, 조선공 그리고 리베터	..	..	..
5215	용접관련 거래	8.50	2.55	11.05
5216	배관 기술자	10.58	3.17	13.75
522	금속가공, 정비 그리고 기계장치 제 작 관련 거래	10.16	3.05	13.21
5221	금속가공 관련 준비 및 조작자	9.10	2.73	11.83
5222	도구 제작자 그리고 도구 관련 기술 자, 점검인	9.89	2.97	12.86
5223		10.52	3.16	13.68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금속작업 관련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자			
5224	정밀기계제작자 및 수리공	..	..	..
523	운송수단 관련 거래	8.77	2.63	11.40
5231	자동차 정비공 및 엔지니어	8.71	2.61	11.32
5232	운송수단의 본체 설계자 및 수리공	..	..	..
5233	자동차 전기기술자	10.04	3.01	13.05
5234	운송수단 관련 도색공	..	..	..
524	전기 관련 거래	11.00	3.30	14.30
5241	전기기사, 전기기술자	10.66	3.20	13.86
5242	전기통신기술자	12.32	3.70	16.02
5243	전선 수리공, 케이블 연결기사	11.47	3.44	14.91
5244	TV, 비디오, 오디오 기술자	9.11	2.73	11.84
5245	컴퓨터 기술자, 설치 및 유지	11.18	3.35	14.53
5249	그 외의 전기 관련 기술자	10.56	3.17	13.73
53	전문적인 건설 및 건물 관련 거래	9.00	2.70	11.70
531	건설 관련 거래	9.22	2.77	11.99
5311	철조 건설자	9.05	2.72	11.77
5312	벽돌공 및 석공	..	..	..
5313	지붕기술자, 지붕 타일 부착인, 슬레이트공	..	..	..
5314	배관공, 난방 그리고 통풍/환기 관련 기술자	10.96	3.29	14.25
5315	목수 및 소목장이	8.70	2.61	11.31
5316	유리직공, 창문가공인, 창문 설치/수리공	..	..	..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5319	그 외의 건설 관련 거래	9.20	2.76	11.96
532	건물 관련 거래	8.21	2.46	10.67
5321	미장이	9.00	2.70	11.70
5322	바닥을 까는 기술자와 벽타일 부착인	8.16	2.45	10.61
5323	도색공 및 장식자	8.12	2.44	10.56
54	식물, 인쇄 그리고 그 외 전문적인 거래	6.75	2.03	8.78
541	식물과 의복 관련 거래	7.82	2.35	10.17
5411	직조공 및 편물직공	..	..	..
5412	커버 관련 실내장식가	8.54	2.56	11.10
5413	가죽과 이와 관련된 거래	7.31	2.19	9.50
5414	재단사 및 양재사	5.25	1.58	6.83
5419	그 외 식물과 의복과 관련된 거래	7.62	2.29	9.91
542	인쇄 관련 거래	9.14	2.74	11.88
5421	원본인, 식자공(植字工) 그리고 인쇄 준비인	9.67	2.90	12.57
5422	인쇄자	10.28	3.08	13.36
5423	제본업자 그리고 인쇄 완성자	8.44	2.53	10.97
5424	화면 인쇄자	7.44	2.23	9.67
543	식품 준비 관련 거래	6.11	1.83	7.94
5431	정육점 업주 및 정육사	6.46	1.94	8.40
5432	제빵업자 및 제과업자	6.35	1.91	8.26
5433	생선판매자 및 (닭/칠면조 등) 가금류 음식 관련 판매자	6.10	1.83	7.93
5434	주방장 및 요리사	6.02	1.81	7.83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549	그 외의 전문적 거래	7.38	2.21	9.59
5491	유리 및 세라믹 제조자, 장식자와 완성자	7.86	2.36	10.22
5492	가구 제작자, 공예 목세공인	7.34	2.20	9.54
5493	모형도안가(주형)	10.92	3.28	14.20
5494	악기 제작자 및 조율사	..	..	..
5495	금/은 세공인, 보석 관련 작업자	×		
5496	꽃 장식업자, 플로리스트	5.47	1.64	7.11
5499	그 외 수공업자	7.33	2.20	9.53
6	개인서비스 관련 직업	6.65	2.00	8.65
61	개인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	6.61	1.98	8.59
611	의료 및 그와 관련된 개인 서비스	6.81	2.04	8.85
6111	간호보조사 및 조수	7.22	2.17	9.39
6112	구급차 관련 직원(의료보조자 제외)	7.78	2.33	10.11
6113	치과 간호사	6.95	2.09	9.04
6114	사감 및 거주지 관리소장	7.38	2.21	9.59
6115	건강관리 보조 및 재택 요양사	6.42	1.93	8.35
612	보육 및 그와 관련된 개인 서비스	6.25	1.88	8.13
6121	보 모	6.74	2.02	8.76
6122	보모 및 그와 관련된 직업	5.71	1.71	7.42
6123	보육원 원장/보조자	5.75	1.73	7.48
6124	교육 보조자	6.25	1.88	8.13
613	애완동물 관리 서비스	6.45	1.94	8.39
6131		6.93	2.08	9.0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수의과 간호사 및 보조자			
6139	그 외 애완동물 관리 서비스	6.06	1.82	7.88
62	여가 및 그 외 개인서비스 관련 직업	6.81	2.04	8.85
621	여가 및 여행서비스 관련 직업	7.43	2.23	9.66
6211	스포츠 및 여가 관련 보조인	6.19	1.86	8.05
6212	여행사 직원	7.21	2.16	9.37
6213	여행 및 관광 안내자	5.60	1.68	7.28
6214	항공 여행 관련 보조자	10.39	3.412	13.51
6215	기차 여행 관련 보조자	9.44	2.83	12.27
6219	그 외 여가 및 여행 관련 직업	×		
622	미용사 및 그와 관련된 직업	5.85	1.76	7.61
6221	미용사, 이발사	5.49	1.65	7.14
6222	미용사 및 그와 관련된 직업	6.49	1.95	8.44
623	가사관리 관련 직업	6.50	1.95	8.45
6231	가사관리인 및 그와 관련된 직업	5.50	1.65	7.15
6232	관리인	6.87	2.06	8.93
629	그 외 개인서비스 관련 직업	7.32	2.20	9.52
6291	장의사 및 장례업 보조인	7.24	2.17	9.41
6292	해충관리책임자	7.57	2.27	9.84
7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련 직업	5.55	1.67	7.22
71	판매업	5.40	1.62	7.02
711	판매보조 및 소매점원	5.31	1.59	6.90
7111	판매 및 소매 보조인	5.28	1.58	6.86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7112	소매점원 및 계산관련 담당자	5.20	1.56	6.76
7113	통신판매원	7.66	2.30	9.96
712	판매 관련 직업	8.35	2.51	10.86
7121	수금직원 및 신용조회 관련 업무자	8.34	2.50	10.84
7122	빛, 임대료 및 그 외에 현금에 대한 수금원	7.54	2.26	9.80
7123	배달 및 운반 담당직원	7.53	2.26	9.79
7124	시장 및 노점상과 보조인	5.09	1.53	6.62
7125	상품기획자, 쇼윈도 장식자	7.00	2.10	9.10
7129	그 외에 판매 관련 직업	9.51	2.85	12.36
72	고객 서비스 관련 직업	6.46	1.94	8.40
721	고객 서비스 관련 직업	6.46	1.94	8.40
7211	콜센터 직원/교환원	6.96	2.09	9.05
7212	고객 관리 관련 직업	6.34	1.90	8.24
8	가공처리, 공장설비 그리고 기계 관련 직공	7.59	2.28	9.87
81	가공처리, 공장설비 그리고 기계 관련 직공	7.98	2.39	10.37
811	가공처리에 관련한 직공	7.54	2.26	9.80
8111	식품, 음료 그리고 담배 가공처리 관련 직공	6.78	2.03	8.81
8112	유리와 세라믹 가공처리 관련 직공	..	..	..
8113	직물 가공처리 관련 직공	6.26	1.88	8.14
8114	화학물 및 그와 관련된 가공처리에 관련한 직공	10.43	3.13	13.56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8115	고무 가공처리 관련 직공	8.22	2.47	10.69
8116	플라스틱 가공처리 관련 직공	7.49	2.25	9.74
8117	금속주조 및 처리 가공에 관련된 직공	..	..	..
8118	전기도금원	..	..	..
8119	그 외의 가공처리 관련된 직공	8.20	2.46	10.66
812	공장설비와 기계관련 직공	8.31	2.49	10.80
8121	종이 및 나무 관련 기계 직공	7.93	2.38	10.31
8122	탄광 관련 직공	12.93	3.88	16.81
8123	채석 종사자 및 그와 관련된 직공	8.41	2.52	10.93
8124	발전소 관련 직공	..	..	..
8125	금속작업기계 관련 직공	8.16	2.45	10.61
8126	물 및 하수처리설비 관련 직공	..	..	..
8129	그 외 공장설비와 기계관련 직공	8.27	2.48	10.75
813	조립공 및 정기적 업무 관련 직공	7.61	2.28	9.89
8131	조립공(전자제품)	6.68	2.00	8.68
8132	조립공(운송수단 및 금속상품)	9.95	2.99	12.94
8133	정기검사관 및 시험관	8.77	2.63	11.40
8134	계량관, 등급관, 분류관	6.54	1.96	8.50
8135	타이어, 배기장치 자동차 앞유리 관련 정비공	..	..	..
8136	의류 재단사	6.58	1.97	8.55
8137	재봉사	5.69	1.71	7.40
8138	정기 실험 시행관	7.11	2.13	9.24
8139		7.05	2.12	9.17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그 외의 조립공 및 정기적 업무 관련 직공			
814	건설 관련 직공	9.67	2.90	12.57
8141	비계, 숙련공, 의장자	..	..	..
8142	도로건설 관련 직공	8.53	2.56	11.09
8143	철도건설 관련 직공	11.07	3.32	14.39
8149	그 외의; 건설 관련 직공	10.00	3.00	13.00
82	운송수단 및 이동식 기계의 운전자 및 직공	7.20	2.16	9.36
821	운송수단의 운전자와 직공	7.15	2.15	9.30
8211	대형수송차량 운전기사	7.62	2.29	9.91
8212	운반차 운전기사	6.46	1.94	8.40
8213	버스기사	7.25	2.18	9.43
8214	택시기사 및 자가용 운전자	5.76	1.73	7.49
8215	운전강사	..	..	..
8216	철도 운송수단 관련 직공	11.40	3.42	14.82
8217	선원(상선대의 선원) ; 부선, 거룻배 그리고 기선 관련 직공	8.76	2.63	11.39
8218	항공 운송수단 관련 직공	8.63	2.59	11.22
8219	그 외 운송수단 관련 직공	8.93	2.68	11.61
822	이동식 기계의 운전자와 관련 직공	7.50	2.25	9.75
8221	기중기 운전자	8.23	2.47	10.70
8222	지게차 운전자	7.15	2.15	9.30
8223	농업관련 기계 운전자	6.33	1.90	8.23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8229	그 외에 이동식 기계의 운전자와 관련 직공	7.89	2.37	10.26
9	기본요소 관련 직업	5.74	1.72	7.46
91	기본요소 관련 거래, 공장설비 그리고 보관 관련 직업	6.65	2.00	8.65
911	기초농업 관련 직업	6.02	1.81	7.83
9111	농업 종사자	6.02	1.81	7.83
9112	임업종사자	..	..	..
9119	그 외의 어업과 농업관련 직업종사자	5.60	1.68	7.28
912	기초 건설 관련 직업	7.02	2.11	9.13
9121	건설 근로자와 목제품 거래	7.00	2.10	9.10
9129	그 외의 다른 건설 근로자의 거래	7.29	2.19	9.48
913	기초처리설비 관련 직업	6.28	1.88	8.16
9131	주조공장 근로자	6.22	1.87	8.09
9132	공업세정처리 관련 직업	6.00	1.80	7.80
9133	인쇄 기계 관리자 및 보조자	9.00	2.70	11.70
9134	포장업자, 음료제조업자, 통조림제조업자, (물건 등을) 채우는 자	5.93	1.78	7.71
9139	그 외의 처리 및 설비조작 관련 근로자	6.32	1.90	8.22
914	기본 물품저장 관련 직업	6.92	2.08	9.00
9141	부두 및 항만 노동자, 하역감독관	8.93	2.68	11.61
9149	그 외 다른 물품 처리 및 저장관련 직업	6.89	2.07	8.96
92	기초 행정 및 서비스 관련 직업	5.41	1.62	7.03
921		8.51	2.55	11.06

[부록 1]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기초 행정 관련 직업			
9211	우편배달부, 우편선별가, 문서운반자	8.73	2.62	11.35
9219	그 외의 기초사무관련 직업	5.81	1.74	7.55
922	기초 개인서비스 관련 직업	5.00	1.50	6.50
9221	병원에서의 물품운반관련 종사자	6.07	1.82	7.89
9222	호텔에서의 물품운반관련 종사자	5.32	1.60	6.92
9223	주방 및 요식조달 관련 보조인	5.13	1.54	6.67
9224	남 / 여 웨이터	4.88	1.46	6.34
9225	술집 직원	4.78	1.43	6.21
9226	여가 및 테마공원 안내원	4.85	1.46	6.31
9229	그 외 기초 개인서비스 관련 직업	5.00	1.50	6.50
923	기초 미화관련 직업	5.33	1.60	6.93
9231	창문 청소부	..	..	..
9232	거리 청소부	7.29	2.19	9.48
9233	청소부 및 가정부	5.33	1.60	6.93
9234	세탁업자, 드라이크리닝업자, 압착담당자	5.00	1.50	6.50
9235	쓰레기 및 폐품 처리 관련 직업	7.25	2.18	9.43
9239	그 외 기초 미화관련 직업	5.27	1.58	6.85
924	기초 보안 관련 직업	5.83	1.75	7.58
9241	보안요원 및 그와 관련된 직업	6.75	2.03	8.78
9242	교통감시관	8.66	2.60	11.26
9243	학교 앞 교통정리담당자	5.42	1.63	7.05
9244	학교 업무진행 중 보안관련 담당자	5.43	1.63	7.06

코 드	종 류	평균값 (£)	간접비용 (30%)	총 계 (£)
9245	주차 담당자	5.95	1.79	7.74
9249	그 외 기초적 보안관련 직업	6.99	2.10	9.09
925	기초적 판매관련 직업	5.33	1.60	6.93
9251	선반위 판매물건을 채우는 사람	5.23	1.57	6.80
9259	그 외 기초적 판매관련 직업	5.50	1.65	7.15

중 요 : .. = 노출되어 있음, × = 신뢰할 수 없음

출 처 : 시간 및 급여 관한 연간 조사, 통계청

외부서비스제공집단 :

전문가들은 외부서비스제공집단을 정하며, 2005년도 물가를 기준으로 평균 시간당 보수를 측정할 것이다. 기준집단과 임금은 이용 가능할 때 아래와 같이 목록화 할 것이다.

회계·감사 보조 : £xxx / 시간

회계·감사원 : £xxx / 시간

공인회계사 : £xxx / 시간

법률가 : £xxx / 시간

간접비용은 외부시간당 보수에 더하여 포함되지 않는다.

### **【별첨 3】 간접비용 비율**

이 장은 30%의 간접비용이 포함되어있는 요소들을 설명한다. 이것은 규제 영향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간접비용이다.

직접적인 직원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간접비용의 범위가 있다. 이것들은 간접비용에 포함된다. 다양한 간접비용의 유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 **급여관련 간접비**

- 근로자의 국민보험기금
- 근로자 연금

#### **인적자원관리**

- 개인 훈련 및 개발

#### **정보관련 기술**

- 전화기/통신 시설
- IT-기본적 기반시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개인 간접 비용**

- 오락
- 사무관련 기사
- 기금
- 회원자격

#### **일반적 간접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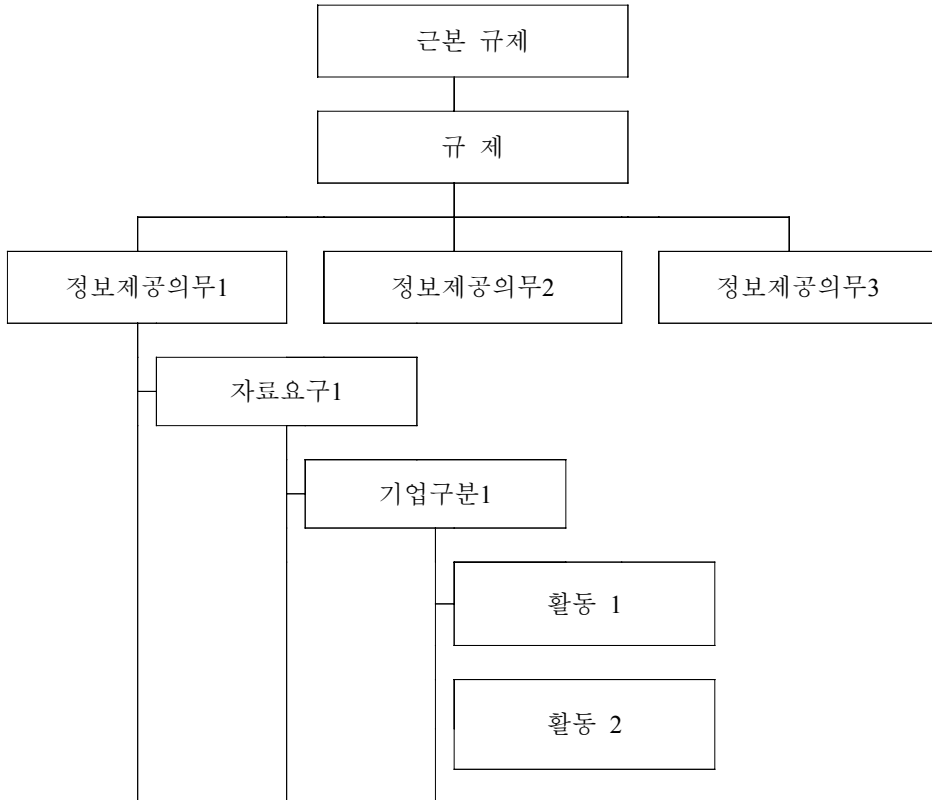
- 감가상각
- 임대료
- 보험료
- 전구, 전기 그리고 물
- 수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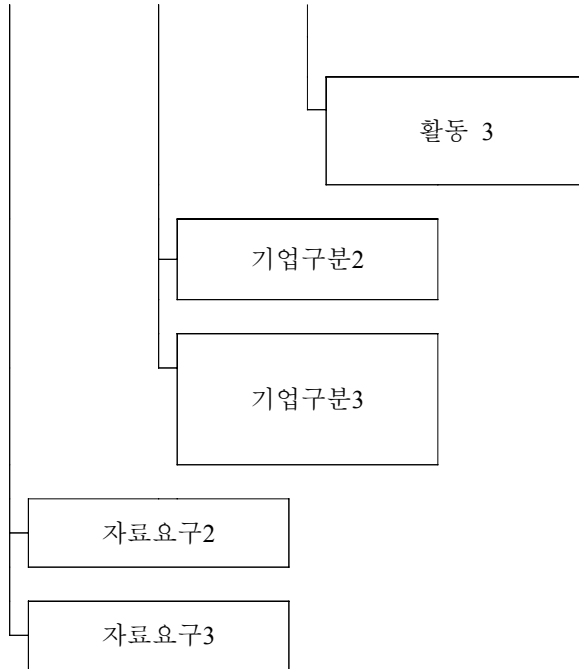
### 【별첨 4】 자료 체계

이 장은 자료 결과를 산정하기 위한 가시적인 자료체계를 제공한다. 이는 이러한 자료들을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변수들은 그와 관련된 것들과 함께 표준 비용 모델 기간 동안의 분석 수준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화한다. 이 자료 체계는 전문가들이 가장 적절한 체계가 사용되었다고 확신하는 측정방법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교하다. 이 최종 자료 체계는 전문가와 선진규제국이 승인한다.

그림 A4-1 : 표준비용모델 자료 체계



[부록 1]



표준비용모델 산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 체계는 어떠한 자료가 연관되어 있는지와 함께 다섯 가지의 주요 체계적인 측정단계를 가진다. 이것은 규제, 정보 제공의무, 자료 요구, 기업 구분 그리고 활동이다. 몇 가지 경우에 규제는 근본 규제를 발생하게 하는 다른 규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는 자료는 일반적인 규제와 동일하다.

위 그림 A4-1은 이러한 체계를 도식화한다. 마치 전자정부와 비전자정부 운영체계 간의 차이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료체계는 산정과정상 일정부분에서 나타나는 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반적인 표준 비용모델과 차이가 있다.

표 A4-1 : 영국 표준비용모델 자료 체계

변수값	유 형	규 제	정 보 체 공 의 무	자 료 요 구 사 항	기 업 구 분	활 동	비 고
기재사항							
ID		×	×	×	×	×	
명 칭		×	×	×	×	×	
수		×	×				
자료생성	일 시	×	×				
자료활동	일 시	×	×				규제수준에 따라 다양 화될 것임
자료만료	일 시	×	×				규제수준에 따라 다양 화될 것임
자료보충	일 시	×	×				
국외상 성명		×	×				
국제 관련 수(數)		×	×				
원본 ID		×	×	×	×	×	주된 혹은 부수적인 규제 및 수정조항과 연결되어 있음, 원본 ID의 값은 규제가 최 고수준으로 연결됨에 따라 변경가능함.

[부록 1]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설명		×	×	×	×	×	
국내 문서자료			×				
국외 관련 문서자료			×				
공공부문	L	×					만약 공공부문에 영향을 줄 경우 표시
직접적 EU 규제	L	×					만약 재량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표시 - YES(어떠한 국내적 영향이 있다), YES(어떠한 국내적 영향도 없다), NO (EU 규제가 아님)
제 3 집단	L		×				만약 제3 집단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있다면 표시(예를 들어 종업원, 소비자 등)
불확실한 요건	L		×				YES(포함), YES(포함되지 않음), NO
강제 활동	L		×				YES, NO 또는 일부
자원활동	L		×				자원활동 또는 의무활동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면제	L	×	×				YES 또는 NO : 없을 경우 “NO”
면제이유		×	×				관계부처 및 선진규제국 승인의 관한 확인을 포함하여 면제이유에 대한 전체적 설명
경계설정				×			중복이 있는 관련 자료요구사항에 관한 ID
경계에 관한 설명				×			어떻게 구획을 정할지, 만약 그렇다면 이 자료요구사항에서 어떠한 활동이 남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경계유형	L			×			정보제공의무가 어떠한 부담을 가지는지 혹은 부담을 가지지 않는지에 대한 기록
비고		×	×	×	×	×	비고를 위한 일반 공간
소유자							
부처 ID	L, I	×	×				규제등급에 따라 값이 증가할 것임. 만약 IO

[부록 1]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부처명	L, I	×	×				등급항목이 이보다 위에 있을 경우 규제등급 항목이 부재된다. MOG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다른 일시와 연관된 항목이 더해질 것임
부처의 시작		×	×				
부처의 종료	일시	×	×				
부처소속기관 ID	L, I	×	×				규제등급에 따라 값이 증가할 것임. 만약 IO 등급항목이 이보다 위에 있을 경우 규제등급 항목이 부재된다. MOG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다른 일시와 연관된 항목이 더해질 것임
부처소속기관의 명칭	L, I	×	×				
부처소속기간의 시작	일시	×	×				
부처소속기간의 종료	일시	×	×				
집행자 ID	L, I	×	×				규제등급에 따라 값이 증가할 것임. 만약 IO 등급항목이 이보다 위에 있을 경우 규제등급 항목은 부재로 된다. MOG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다른 일시와 연관된 항목이 더해질 것임
집행자 명칭	L, I	×	×				
집행자의 시작	일시	×	×				
집행자의 종료	일시	×	×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분류							
전자정부	L		×		×		자료요구사항등급은 계획의 존재를 표시함; 구분등급이 구분의 상태를 말함
전자정부명칭			×		×		계획의 명칭
전자정부계획			×		×		광범위한 계획의 명칭
전자정부비율			×		×		최대치 100%, 자료요구사항등급은 전체에 따른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분배치임; 구분의 수준은 그 구분에 있어서의 분배치임
내용상 분류	L			×			
계획상 분류	L			×			
원본	L, I	×	×	×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 국제적인 사항(A), 재량권을 가지는 국제적인 사항(B), 국내적 사항(C)
국제적 유형	L, I	×	×	×			EU규제(1) EU지시(2) 원본이 A 또는 B인, 그

[부록 1]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외 다른 국제적 사항(3)
형식에의 기입	L					×	YES, NO
활동 유형	L					×	표준활동능력
시작					×		기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특별한 활동을 포함- 예를 들어 지침에 대한 숙지
시기(始期)					×		시기와 관련돼 있는 특별한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수행 - 예를 들어 회사의 성장 및 처음기준의 충족
발생							
빈도수					×		
모집단	T				×		지형적 요인과 분야별 영향과 연결
분야별 영향				×	×		정보제공의무등급에 따라 더 넓은 분야별 집단을 표시함. 만약 이것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이 이루어 졌고, 기업구분이 각 분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면, 모든 표시된 분야는 기업구분에 있어서 최소 한 가지에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자료요구사항은 단지 표시된 분야의 일정부분에만 적용될 것임. 숫자4 자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SIC2003을 기초로 함
지리적 요인				×	×		규제/IO가 적용되는 지형적 요인을 표시함 ; 예를 들어 구분의 실행과 같은 지형적 사항들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허용
실질적 승낙				×	×		잠재적 모집단으로부터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 승낙의 실제적 등급을 인정함.
모집단 비율					×		
규모					×		
그 외 다른					×		

[부록 1]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규모에 대한 설명							
비표준구분의 이유					×		예를 들어 기밀의 이유, 제한적 모집단 등
지역					×		지역적 구분이 필요한 지역
산정							
국내 시간					×		
국내 직업 코드	L				×		SOC2000
국내 직업의 내림차순 정렬	R				×		직업코드를 기초로 한 참고표
국내 임금	R				×		직업코드를 기초로 한 시급 및 통계적 근거
국내 간접비용					×		내정값
국내 임금 관련 인터뷰					×		통계적 근거를 통한 인터뷰응답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반영
해외 시간					×		
해외 임금					×		시간당 비용, 전문가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표준비용표
취득 관련 비용					×		
취득 관련 기간					×		
취득 관련 설명					×		
산정기록					×		
인터뷰					×		
산정상황					×		
유효한 산정의 시작	날짜				×		
산정의 만기					×		
책임기업의 수					×		
상환금액	I				×		
상환금액의 수준	I				×		
산정수준					×		

[부록 1]

변수값	유형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기업구분	활동	비고
산정날짜					×		
산정수단					×		
기업의견	A				×		
보통기업비용	I				×		

I - 낮은 등급으로 부터의 인계값; O - 낮은 등급항목 보다 높은 값을 가짐; A - 전체에 있어서 모든 수준에 대한 전항목이 포함; L - 정의된 값의 목록; T - 개별적인 산출표를 사용하여 유도됨; R - 관련 변수에 따른 반응을 기초로 작성된 참고표의 값

이 표상에서 나타나 있는 영향받는 모집단, 지형적 사항 그리고 분야가 분석되어 질 수 있도록 복잡한 조합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하위표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표의 예는 아래 표 A4-2와 같다.

표 A4-2 : 모집단 산정표

지형적 사항	분야 (SIC2003)	분야에 관한 설명	분야별 총 모집단	영향받는 비율	모집담
L	L	R	R		
			A	B	A*B 또는 직접적

지형적 사항	분야 (SIC2003)	분야에 관한 설명	분야별 총 모집단	영향받는 비율	모집담
					기재사항
각 자료요구마다의 주요 표에서					
콤마 증기된 값인자에 대한 개별적 목록	콤마 증기된 값인자에 대한 개별적 목록	값 없음	값 없음	값 없음	영향받는 전체 모집담

- 분야는 4자릿수까지일 것이다.
- SIC2003은 체계적이며, 예를 들어 2자릿수와 같은 높은 집합체를 첨가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분야는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집합적인 항목으로 포함된다.
- 어떠한 것인 직접적인 기재사항으로 계획되기 위하여는, 영국표준비용모델 책자상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집단이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

#### 4.1 표준비용모델 자료 체계상 사용되는 값의 목록

표 A4-3 : 공공부문

[부록 1]

0	순수한 개인 영역
1	공공/개인 영역
2	순수한 공공 영역

표 A4-4 : 직접적인 적용이 가능한 EU규제

0	NO
1	국내상의 이행인 경우 YES
2	국내상의 이행이 아닌 경우 YES

표 A4-5 : 제3 집단에 관한 의무

0	NO
1	NO

표 A4-6 : 드문 일시적 요구사항

0	NO
1	YES(포함됨)
2	YES(포함되지 않음)

표 A4-7 : 강제 활동

0	NO
1	YES
2	일부

표 A4-8 : 자발적 활동

0	NO
1	YES

표 A4-9 : 면 제

0	NO(부재값)
1	YES

표 A4-10 : 경계유형

0	당해 자료요구에 대한 부담
1	다른 자료요구에 대한 부담

표 A4-11 : 전자정부

0	전자식이 아닌 경우
1	전자식인 경우

표 A4-12 : 근 거

A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없는 경우
B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
C	국내적 사항의 경우

표 A4-13 : 국제적 사항의 유형

[부록 1]

1	EU 규제
2	EU 지시
3	다른 국제적 사항

표 A4-14 : 양식에의 기입

0	NO
1	YES

표 A4-15 : 기업규모

0	전 체
1	아주 작음(0에서 9)
2	작음(10에서 49)
3	중간(50에서 249)
4	큼(250 이상)
5	그 외의 규모

이것은 자료체계를 참고로 하는 정의된 값의 완성목록은 아니다. 정보제공의무상의 분류, 내용상의 분류 그리고 절차상의 분류를 위하여 주요 표준비용모델 책자에 더 많은 값의 목록이 정의된다. 직업코드, 임금 그리고 설명은 부록2에 나타나 있다.



## 【별첨 5】 보고서

이 부록은 일반적인 보고서의 틀을 제공한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영국 표준비용모델 설명 책자상의 5.15장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표준비용모델로 부터의 결과 발표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개별 보고서에는 많은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 있을 것이다. 적절한 발표에 관한 결정과 보고서상의 정확한 내용작성은 보고를 받는 담당부처 및 선진규제국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장은 몇 가지의 일반적 지침과 내용설명을 담고 있다.

### 5.1 보고서

#### 5.1.1. 요약

-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
- 총비용과 영향을 받는 각 기업의 비용 모두를 포함한 주요 결과 및 보고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재산상 측정이 인정되기 위한 적절한 내용을 포함
- 전체 부처와 부처내 주요 구성원에 대한 결과 - 예를 들어 주요 기관, 부과하는 상당한 부담 등.
- 규제 근거에 관한 요약

#### 5.1.2. 도입

- 배경. 여기에는 행정부담 감소계획, 산정과정 그리고 부처의 특징을 설명하는 선진규제국 및 담당부처에 나온 표준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부록 1]

- 부처별 규제영역 및 부처를 구성하는 구성원/기관/그 외 사항에 대한 요약
- 산정방법론 및 주요 절차적 측정단계에 대한 개략적 요약
- 산정을 행한 곳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산정기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절차정보에 대한 요약(인터뷰 횟수와 유형, 집중집단, 그 외의 사항, 시기, 측정된 법률로 인한 자료삭제)
- 선진규제국으로 부터의 표준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산정에 있어서의 질/재산에 관한 설명

5.1.3. 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에 대한 개관

- 부처의 주요 규제를 포함하여, 처부 및 그 구성원에 대한 개관
- 산정실행에 있어서 포함되는 규제의 통계상의 요약

규제 및 행정구성요소 수

	규제의 수	정보제공의무의 수	자료요구의 수
구성원/기관/정책영역			
구성원/기관/정책영역			
...			
부처별 총계			

- 규제된 기업의 특징. 부처의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 유형, 산업에 대한 요약. 이 산정에 있어서 보통의 유효한 기업에 관한 일반적 정보
- 담당부처의 규제를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방법론적 쟁점. 정교한 방법론적 수단이 필요한 특별한 영역을 포함하는, 특수한 문제(예를 들어 규제의 경계). 산정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특수한 가

정 및 자료의 수집상 나타나는 특별한 쟁점. 부록 A 내용은 구체적이며, 산정절차의 측정단계값이 포함되어야 한다.

#### 5.1.4. 기업의 행정비용

- 총비용과 영향을 받는 기업마다의 비용 모두를 포함한 행정비용에 관한 결과를 요약

행정비용 : 개 관

	총행정비용		영향받는 기업마다의 행정비용	
	£, 100만	부처별 총계 중 %	£, 1000	부처별 총계 중 %
구성원/기관/정책 영역				
구성원/기관/정책 영역				
부처별 총계		100%		100%

- 전체 중 구성원의 비중을 알기위하여 원형도표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영역에 대한 설명을 제공, 특히 왜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부담이 큰지 등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 전반적인 결과는 기업규모에 대한 분석 및 적절한 사업영역인지를 나타내야 함.

#### 5.1.5. 행정비용의 근거

- 설명책자에 개략적으로 나타난 분류계획에 따른 부처별 규제의 근거에 관한 설명
- 특히 전체 부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EU/국제 규제를 강조

규제의 근거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없는 경우(A)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B)		국내적 사항의 경우(C)	
	총 ㄹ, 100만	구성원의 비중	총 ㄹ, 100만	구성원의 비중	총 ㄹ, 100만	구성원의 비중
구성원/기관/정책 영역						
구성원/기관/정책 영역						
..						
부처별 총계						

비 고 : 세로줄이 아닌 각 가로줄에서 합을 100으로 나눈다.

- 영국표준비용모델 설명책자에서 정의된 유형에 따라 국제적 근본 규제의 구체적 분석을 설명

규제의 근거 : 국제적 규제의 유형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없는 경우(A)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B)		
	1. EU 규제	2. EU 지시	3. 그 외의 국제적 사항	1. EU 규제	2. EU 지시	3. 그 외의 국제적 사항
유형의 분할						
구성원/기관 /정책영역						
구성원/기관 /정책영역						
..						
부처별 총계						

비 고 : 각 가로줄내의 범주 1, 2 그리고 3의 합은 100이다.

5.1.6. 최고순위 × 가장 큰 부담에 관련한 규제

- 총행정비용과 영향을 받는 각 기업의 행정비용 기간 동안 가장 큰 부담과 관련된 규제의 개략적 설명
- 이것은 대표적인 최고 10순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가 보고된 담당부처에 의하여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담당부처가 국내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의 수가 포함된다.

총 행정비용에 의한 최고순위 ×로 표시되는 규제사항

규 제	구성원/기관/정책영역	총 행정비용		규제의 근거(규제에 대한 비중)		
		£, 100만	부처별 총계의 비중	A	B	C
규제 1.						
규제 2.						
규제 3.						
4.						
5.						
6.						
7.						
8.						
9.						
10.						
...						

[부록 1]

		총 행정비용		규제의 근거(규제에 대한 비중)		
최고순위 × 총계						
부처별 총계			100%			

비 고 : 근거는 세로줄 A, B 그리고 C의 합을 100으로 나눈다.

영향을 받는 각 기업의 행정비용에 의한 최고순위 ×로 표시되는 규제사항

규 제	구성원/기관 /정책영역	총 행정비용		규제의 근거(규제에 대한 비중)		
		₩, 1000	부처별 총계의 비중	A	B	C
규제 1.						
규제 2.						
규제 3.						
4.						
5.						
6.						
7.						
8.						
9.						
10.						
...						
최고순위 × 총계						
부처별 총계			100%			

비 고 : 근거는 세로줄 A, B 그리고 C의 합을 100으로 나눈다.

5.1.7. 활동에 의한 행정비용

- 전체, 그리고 가능한 주요 구성원/기관으로서 담당부처를 위하여, 여러 표준활동유형 각각의 소송비용이 분석되어야 함.
- 각 활동에 수반되는 형식의 기재에 따른 부담의 분석

표준활동유형 요약

활 동	관련 형식의 기재		비관련 형식의 기재		총 계	
	£	%	£	%	£	%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친숙도						
정보 수정						
평 가						
측 정						
수치발표						
확 인						
수 정						
설 명						
결산/지급						
내부모임						
외부모임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에 따른 결과수정						

[부록 1]

활 동	관련 형식의 기재		비관련 형식의 기재		총 계	
훈 련						
복사, 분류, 문서화 등						
보고/정보제출						
전 체		100		100		100

5.1.8. 부처 구성원에 의한 행정비용

- 산정을 시행하는 각 관리구성원, 정책영역, 기관, 비부처형공공기관, 관련기관 등에 의한 결과보고
- 각 구성원/영역/기관을 위하여 정책영역, 규제유형, 영향 받는 기업의 유형을 설명, 보통의 유효한 기업의 특징이 설명되어야 함
- 각 구성원/영역/기관을 위하여 규제영역에서의 명확한 주요 방법론적 쟁점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를 포함하여 설명되어야 함
- 총행정비용과 영향을 받는 각 기업의 행정비용 모두를 기초로 한 영역에서의 주요 규제 강조
- 보고서 주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규제의 수는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보고서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전체 목록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조직 구성원/정책영역/기관에 대한 총 행정비용

	총 행정비용		
	£, 100만	구성원/기관/ 정책영역의 %	부처별 총계의 %
1. 규제 a			
2. 규제 b			



	총 행정비용		
	£, 100만	구성원/기관/ 정책영역의 %	부처별 총계의 %
...			
구성원/기관/ 정책영역의 총계		100%	

비 고 : 정렬은 최고순위에 따른 가장 큰 부담에 대한 결과

조직 구성원/정책영역/기관에 대한 영향을 받는 각 기업의 행정비용

	총 행정비용		
	£, 1000	구성원/기관/ 정책영역의 %	부처별 총계의 %
1. 규제 a			
2. 규제 b			
...			
구성원/기관/ 정책영역의 총계		100%	

비 고 : 정렬은 최고순위에 따른 가장 큰 부담에 대한 결과

- 규제에 관한 근본분석사항을 요약, 특별규제 및 결과상의 주요재산을 강조. 예를 들어, 고유한 근본 혼용

### 규제의 근거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없는 경우(A)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B)		국내적 사항의 경우(C)	
	총 £, 100만	구성원의 비중	총 £, 100만	구성원의 비중	총 £, 100만	구성원의 비중
규제 a						
규제 b						

[부록 1]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없는 경우(A)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B)		국내적 사항의 경우(C)	
	총 £, 100만	구성원의 비중	총 £, 100만	구성원의 비중	총 £, 100만	구성원의 비중
..						
부처별 총계						

비 고 : 세로줄이 아닌 각 가로줄에서 합을 100으로 나눈다. 정렬순서는 10위까지 있어야 할 것이다.

규제의 근거 : 정보제공의무의 유형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없는 경우(A)			국제적이며, 국내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B)		
	1. EU 규제	2. EU 지시	3. 그 외의 국제적 사항	1. EU 규제	2. EU 지시	3. 그 외의 국제적 사항
유형의 분할						
규제 a						
규제 b						
..						
부처별 총계						

비 고 : 세로줄이 아닌 각 가로줄에서 합을 100으로 나눈다. 정렬순서는 10위까지 있어야 할 것이다.

- 가장 큰 부담과 관련한 각 규제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기업규모 및 전자정부해결책에 의한 구체적 결과분석을 표시. 가장 큰 부담과 관련한 10가지(예를 들어) 규제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행정비용에 관한 수준측정을 도출하는 규제부분 강조

규제의 근거 : 국제규제의 유형

규제×(최고순의 ×로부터)	자료요구	기업규모	전자정부해결책	행정비용 (£ 1000)	규제 ×의 비중		
정보제공의무1	DR A	아주 작음	YES				
			NO				
			작음	YES			
				NO			
			중간	YES			
				NO			
			큰	YES			
				NO			
	DR B	아주 작음		YES			
				NO			
			작음		YES		
					NO		
			중간		YES		
					NO		
		큰		YES			
				NO			
정보제공의무1 총계	-	-					
정보제공의무2	DR C	아주 작음	YES				
			NO				
			작음	YES			

[부록 1]

규제×(최고순의 ×로부터)	자료요구	기업규모	전자정부해결책	행정비용 (£ 1000)	규제 ×의 비중
			NO		
		중간	YES		
			NO		
		큰	YES		
			NO		
총 다른 정보 제공의무*					
규제 ×의 총계					

비 고 : 오직 가장 큰 부담을 가지는 정보제공의무만 전체적인 분석으로서 발표되기 위하여 필요하다. 결과의 더욱더 효과적인 발표를 위하여 비중이 크지 않은 정보제공의무는 “다른 것들” 줄에서 나타난다.

- 가장 큰 부담을 가지는 정보제공의무를 위하여, 활동에 의한 구체화된 분석이 발표될 것이다. 비용수준은 기업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공급 및 취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작업을 반영한다.

표준활동유형에 의한 요약

활 동	관련 형식의 기재		비관련 형식의 기재		총 계	
	£	%	£	%	£	%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친숙도						
정보 수정						
평 가						

활 동	관련 형식의 기재		비관련 형식의 기재		총 계	
측 정						
수치발표						
확 인						
수 정						
설 명						
결산/지급						
내부모임						
외부모임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 에 따른 결과수정						
훈 련						
복사, 분류, 문서화 등						
정보 보고/제출						
전 체		100		100		100

- 각각의 기업구분을 포함하여 기업구분에 의한 부분적 특징은 보통의 유효한 기업을 정의하는 것과 함께 분석된다.
- 관련 법안의 경계는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약속되어야 한다.
- 과도한 부담, 최고의 업무처리의 예 및 기업인터뷰에서 나타는 단

순화에 관한 제안 등 역시 요약되어야 할 것이다.

#### 5.1.9. 결 론

- 결과는 요약되어야 한다.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특정 영역은 표시하여야 하며 시간을 걸쳐 변경될 것 같다고 예상되는 요인들은 강조하여야 한다.
- 예측하기 힘들 특정 영역 또는 인터뷰 응답에 관한 전문평가 시 광범위한 모집단이 있는 특정영역은 표시되어야 한다.
- 산정절차에서의 가능성 향상을 포함하여, 기초영역의 개선과 관련된 특정영역을 간략화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5.1.10. 부록 A : 측정절차에 관한 측정단계적 보고

이 부록은 산정 및 산정을 위한 문서화 작업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할 것을 설명한다. 방법론의 적용은 측정단계별 기초를 통하여 보고 될 것이다.

인정된 방법론상에서 요구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 다른 접근에 대한 인정의 확실성 그리고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부록은 산정절차의 부분으로서 보고측정단계와 계획의 끝을 나타낸다.

#### 5.1.11. 부록 B : 규제의 경계

이 부록은 다른 규제와 연관되어 있고 경계구분이 필요한 부처에 따른 규제의 개관을 설명한다.

또한 비록 산정에 관련된 부담의 실질적 구분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법령이 가지는 외관을 갖춘 모든 법적 장치를 개관에 포함시키는 것

은 중요하다. 참고, 표준비용모델절차 지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한 경계구분이라고 인정되는 측정단계 1 동안의 Q&A.

규제/정보제공의무/자료요구	관련규제/정보제공의무/자료요구	경계유형	경계설명	(경계구분 후) 총비용	(경계구분 전) 총비용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각각에 대하여 해당 칸이 있을 경우 정보제공의무/자료요구가 다른 여러 규제와 관계되어 있음을 표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문서화 작업에 따라, 하위부록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1.12. 부록 C : 인터뷰 지침의 예

인터뷰 지침의 예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5.1.13. 부록 D : 기업인터뷰로부터의 관찰

구성원/정책영역/기관에 의하여 분석된 인터뷰로부터의 관찰 :

- 과중한 부담
- 규정 간소화 계획에 대한 총체적 목록
- 최고의 업무처리

5.1.14. 부록 E : 구체적 모집단 및 인터뷰 유형의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의무상의) 연간 행정비용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및 규제에 의하여 표가 분석된다. 예를 들어 부수적 법령에 대한 기재는 관련 주요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해

[부록 1]

야 하듯이, 관련 규제가 표시되어야 한다. 표는 구성원/정책영역/기관에 의하여 발표되며, 해당규제를 용이하게 찾기 위하여 정렬된다.

이 표는 주요 산정결과와 그것들의 주요 구성사항을 요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정보제공의무 내에서의 자료요구 크기가 전체로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그것보다 대체적으로 작은 모집단이라고 확인된 영역을 포함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록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규 제	근본 규제	정보제 공의무	모집단	빈도수	내부 시간(분)	비용, 획득 (£)	비용, 외부적 사항 (£)	총 행정 비용	인터뷰/ 전문가 의견 (E/I/ 둘다)



[부록 Ⅱ]

**행정부담 :**  
**행정부담 감축방안**

**Administrative Burdens  
- Route to Reduction**

**1.01 판**

**2006년 9월**

**내각사무처 선진규제국**  
**(Cabinet Offic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목 차

1. 도 입 .....	239
2. 행정부담의 산정 .....	239
3. 모 텔 .....	241
4. 당사자에 대한 질문과 응답 .....	243
(1) 모집단 .....	244
(2) 빈도수 .....	244
(3) 시 간 .....	245
(4) 요 금 .....	246
5. 간소화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 .....	247
6. 활용사례 .....	248

## 1. 도입

이 지침은 부처별 간소화계획상의 제안을 통한 행정부담 감소와 같이 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담당자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설명서는 또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생각과 전략적 접근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담당부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몇 가지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간소화 계획의 발전에 있어서 부처를 보조하기 위하여 선진규제국에 의하여 재발행된 개정된 ‘간소화 계획에 대한 지침(Guidance on Simplification Plans)’과 상호보완적이다.

이 문서의 내용은 정책입안자로서 당사자의 업무에 정보를 줄 것이다. 기업, 자선활동, 자발적 영역과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선진화된 정책, 선진화된 수단, 선진화된 준수, 궁극적으로는 선진화된 정부를 이끌 것이다.

## 2. 행정부담의 산정

행정부담의 산정작업(The Admin Burdens Measurement Exercise :ABME)은 Better Regulation Task Force의 보고서 -재무부의 선진규제 행위계획상의 장관의 역할부분으로서 ‘Regulation : Less is more’-에 응하면서 정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산정작업의 목적은 중앙정부, 유럽 또는 그외 국제적 규제에 따라 기업, 자선활동 그리고 자발적 활동 영역에 있어서 부과되는 행정비용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작업의 초점은 준수 또는 정책비용 보다는 규제에 의한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규제를 통하여 부과되는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활동에 관한 (발생)비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산정작업은 규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이나 간소화된 틀을 제공하는 표준비용모델(SCM)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전되었고, 덴마크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방법은 기업, 자선활동 그리고 자발적 활동 영역에 대해 행정비용을 부과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처리하기 쉬운 산정 가능한 구성요소 및 자료요구사항으로 분석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각 규제의 정책목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산정은 오직 규제를 따르기 위하여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행정활동에 초점을 두며, 규제의 목표가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이 결과는 어디에 이용되는가?**

산정작업에 따라, 행정비용에 관한 연간 절감을 위한 부처의 대상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계획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예산성명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그들이 규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부담의 절감을 위하여 대상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간소화 계획을 보여줄 것을 준비하고 있다.

간소화 계획과 부처별 행정부담경감 대상 모두 장관과 그 외 관계자에 의하여 논의되고 2006년 가을에 승인될 것이다. 간소화 계획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현실화를 위한 부처의 주도로써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나 이미 존재하는 규제 및 정책은 선진규제문화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책담당자는 단지 새로운 규제의 흐름에 따른 행정부담의 감소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축적된 규제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 3. 모 델

기업, 자선활동 그리고 자원활동 영역에 관한 담당처부에 의하여 운용되는 규제의 행정비용은 아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text{행정활동비용} = \text{가 격} \times \text{수 량}$$

$$\text{가 격} = \text{요 금} \times \text{시 간}$$

$$\text{수 량} = \text{모집단} \times \text{빈도수}$$

요금은 내부활동 또는 외부서비스 제공자의 시간당 비용에 대한 인건비(간접비 포함)이다.

시간은 활동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양이다.

모집단은 영향받는 기업의 수이다.

빈도수는 매년 완성되어야 하는 활동횟수이다.

필수적으로 이것은 행정비용이 기업이 특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비해야 하는 시간과 임금비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비용은 규제영향을 받는 사업체의 수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빈도에 의하여 배수로 증가하게 된다.

당사자는 개인적인 행정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도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적 표준비용모델 공식은 이를 알도록 도와준다. 아래의 모형은 어떻게 담당부처가 그들이 ABME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지를 보여준다.

####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산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행정비용의 산정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많지 않은 표본을 사용하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정확하게 개량적인 수치로 행정부담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불

[부록 II]

가능할 것이다. 다만, 산정이 보여주는 것은 규제부담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며, 상대적으로 어느 정부부처가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 격 (요금 × 시간)		
		높 음		낮 음
높 음 수 량 (모집단× 빈도수) 낮 음	높 음	매우 큰 영향	큰 영향	큰 영향
	중 간	큰 영향	중간 영향	작은 영향
	낮 음	중간 영향	작은 영향	매우 작은 영향

####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

많은 수의 규제대상자에 영향을 주고, 높은 비용이 소비되는 규제는 전체적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는 그들의 규제행위가 이러한 규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낮은 비용과 적은 수의 사업체에만 해당되는 규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체적인 행정부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측면이 상당수 존재한다. “영향력이 낮은” 영역에서도 규제감소와 관련하여 사업체의 높은 마찰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행정부담의 감소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마찰적 요소에 있어서의 일부 질적 자료는 산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며, 담당부처에 의한 보고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담당부처는 선진규제체계를 통하여 기업으로 부터의 간소화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일부 규제의 경우, 특정한 집단과 분야에 대하여는 비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단순화 계획의 진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뢰 및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규모 규제대상자나 분야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높은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개별 사업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집행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국정부는 정부부처간의 전체적인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수단과 규제대상인 사업체 집단의 입장에서 규제영향이 체감되는 수단 간의 균형 잡힌 운영에 주목하고 있다.

#### 4. 당사자에 대한 질문과 응답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입법 또는 새로운 입법에 의한 행정부담을 감소할 것인가를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서의 사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가지 영역 중의 어느 한 가지에 대한 감소는 규제에 의한 행정부담의 직접적인 감소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각 정부부처의 행정부담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예를 들어, 모집단수를 감소시키는 대신에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등) 전체적인 변화의 순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상 두 가지 변수의 변화는 서로 간에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 지에 관하여 재차 고려해야 한다.

## (1) 모집단

대상수는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체의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

- 특정한 요건이 적용되는 기준을 상승시키는 방법
- 규제의 적용범위를 변화시키는 방법

Better Regulation Task Force에 의하면, 적용기준을 단순하게 상승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체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은 오히려 사업체가 일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문제되는 적용기준의 정도는 종종 EU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주요 고려 사항)

- 쓸모없는 규제와 정보의무가 정책적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거될 수 있는가?
- 특정한 규모 또는 영역에서의 사업집단에서 향상된 대상이 정보의무를 제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가?

## (2) 빈도수

규제빈도는 사업체가 1년 동안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보에 관한 일정한 양식을 제출하거나 조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의 감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이 있다.



- 사업체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할 정보에 있어서, 제출빈도를 감소시킨다.
- 조사감독을 위한 위험근거 접근법을 채택하여 일정한 집단의 빈도를 감소시킨다.

다만, 단순히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단순히 각각 분기에 해야 할 분량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간 한번에 해야 할 일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분기요건을 폐지하고 대신에 연간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주요 고려 사항)

- 정보가 요청되는 시간적 차이가 증가될 수 있는가?
- 일정한 집단에 대해서 빈도가 낮아질 수 있는가?

### (3) 시 간

시간은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소요한 시간의 양을 말한다. 이 수치의 경감을 위한 선택사항을 다음을 포함한다 :

- 기업이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더 쉽게 만들 것. 예를 들어, 사전에 만들어진 양식 또는 전자처리과정과 같이 보다 쉽게 양식을 작성할 수 있게 만든다.
- 명확한 용어로 요구사항을 분류
- 소규모 회사에 대한 특정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예를 들어, 사업체가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토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정부부처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을 조망할 수 있다)

[부록 Ⅱ]

- 사업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생산하는 방법 (사업체들의 예상에 관한 명확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과잉준수를 예방할 수 있다 - 이른바 Regulatory Creep 현상)

(주요 고려 사항)

- 주어진 양식에서의 자료요구사항이 경감될 수 있는가 또는 중복되는 자료요구에 관한 양식에 대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합치거나 줄일 수 있는가?
- 해당양식의 완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양식이 더욱 개선된 방향으로 고안되거나 사전에 형성되어 질 수 없는가?
- 온라인상의 제출로서 경감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또는 정부 및 기업 관리 정보체계 간의 전자화된 정보에 대한 상호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 더 나은 장치 및 지침이 규제를 및 자료제공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
-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적 견적(pro-formas)이 제공될 수 있는가?
- 정부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체들이 동일한 정보를 한번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개념에 대한 기준이 도입될 수 있는가?

(4) 요 금

비용은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임금뿐만 아니라, 간접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비용도 포함한다. 이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소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수행이 요구되는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급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요건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자원을 축적할 수 있다)
- 대안으로서, 요건을 단순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체에서 일하는 누구나가 전문가와의 계약없이 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고려 사항)

-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의 단순화가 전문가들의 관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 사업체들이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와의 계약을 필요로 하는 범위 중에서 제거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는가?

## 5. 간소화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

국제 표준비용모델 네트워크는 행정비용부담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간소화 방법	취해야 할 사항
A. 규제의 폐지, 축소, 통합 또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폐지</li> <li>· 대안의 실시 예) 자발적 시행유도</li> <li>· 규제에 따라 정보제공의무의 폐지</li> <li>· 의무로부터 일정 분야 또는 집단의 배제 예) 소규모기업</li> <li>· 부가적 규범과 요구의 통합/공고화</li> <li>· 규제의 용어 간소화 및 복잡성의 축소</li> </ul>

[부록 II]

간소화 방법	취해야 할 사항
B. 규제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양식, 조사, 자료요구의 폐지</li> <li>· 양식작성시간의 축소 예) 도안, 명확성의 개선</li> <li>· 재원의 우선순위 부여 예) 양호한 기록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의 축소</li> <li>· 정보요구 빈도의 축소</li> <li>· 다른 정보의무와의 조화</li> </ul>
C. 자료공유와 정부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자 대신 다른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자료수집</li> <li>· 관련자의 정보자동화 체계로부터 직접 자료수집</li> <li>· 관련자를 위한 단일화 체계확립</li> <li>· 규범에서의 정의 표준화</li> </ul>
D. 정보자동화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에서의 활용가능한 양식과 기타 자료 요구사항 마련</li> <li>· 사진양식제공</li> <li>· 부가적 자료요구를 피하기 위한 쌍방향/상호작용식 양식제공</li> <li>· 정부공용전자체계의 이용에 의한 전자 단일화 방안 마련</li> </ul>
E. 개선된 지침과 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적이고 활용이 용이한 지침의 개발 예) 인터넷상의 활용가능 지침 마련</li> <li>· 보다 평이한 용어에 의한 지침의 재발간</li> <li>· 지침에서 자발적인 요건과 의무적 사항을 분리</li> <li>· 공통의 공공분야 인터넷포탈을 통한 전산상의 규제마련</li> </ul>

## 6. 활용사례

특정행정부담의 감축을 위해 복잡한 사항들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차원에서의 수행된 최근의

사례들이다.

### A. 규제의 폐지, 축소, 통합 또는 개선

#### 환경인증프로그램(Environmental Permitting Programme)

환경, 식량 및 농업부(DEFRA), 웨일즈 정부, 환경청은 오염의 예방과 규제 및 폐기물 처리허가에 대한 공동인증체계를 통한 공조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항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다른 규제도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환경허가규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대부분 개별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규제체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산업과 관련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이 프로그램은 규제자, 그 대상, 기준 또는 여건을 바꾸지 않고 허가 및 인증체계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간소화된 규제의 명확한 지침으로 구성된 규범체계를 제안한다.

- 이익은 무엇인가?

오염예방규제와 폐기물처리 허가제도를 통합하여, 업계와 규제당사자는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법률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다 간소화된 지침, 절차, IT체계 및 양식 등을 낳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공통적인 환경인증체계를 구축하여 결국 새로운 체계로 통합될 것이다. 그 이상의 비용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행정부담 감소효과는 직접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최고 6천7백만 파운드에 이를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업계 전반

[부록 II]

에 걸쳐 향후 10년 동안 1억 파운드 이상의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동물약품규제의 간소화(Simplific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Regulations)**

환경식량농업부의 담당부서인 동물약품위원회는 동물약품에 관한 새로운 EU지침을 영국국내법화 해야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었다. 이전에는 동물약품규범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였다.

-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동물약품위원회는 영국 내 관련 규범들을 모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법규범(계약법 및 50개의 하위 규범들)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단일규범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정들을 제거하고 간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비법률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명료하게 개선하였다.

- 이익이 무엇인가?

관련 법규들의 체계간소화는 이해관계자들이 규정들을 이해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그러한 규정들을 따르는데 있어서 보다 용이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또한 업계에서는 법률자문을 구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행정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규제개선 결과로, 동물약품위원회는 선진규제국이 부여하는 2004년 선진규제단체상을 수상하였다.

### **도량형 규제 간소화(Simplification of Weights and Measures Regulation)**

상품의 중량에 관한 규범은 오랫동안 복잡하고 시대에 뒤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8년 선진규제업무팀의 소비자보고서, 2004년 국립통계청과 공공회계위원회보고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비판하였다. 정보는 이

를 받아들여 간소화하였다.

규범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당 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필요하게 상세하였으며 규제를 충족하게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규범의 복잡성은 신규사업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규제개혁명령에 따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무역산업부는 관련 EC의무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범의 제정가능성을 자문하였다. 자문내용은 개선의 원칙과 규제안의 마련에 관한 것이었으며, 보편적인 호응을 얻었다.

규제안의 구조와 내용은 이전의 규범보다 훨씬 짧고, 간소화되었다. 모든 규정들은 상위규범과 하위지침들 사이에 흩어져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일하였다. 새로운 규범들은 2006년 4월 6일 발효되었다.

- 이익이 무엇인가?

새로운 규범들은 매우 간소화 되었고(100장에서 25장으로 간소화됨), 보다 유용한 지침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개선은 업계와 관련기관이 해당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준비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EC제한(반기공 빵류 관련)에 있어서 기록보관요건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일년에 약 5백만 파운드의 비용절감효과를 준다.

## **B. 규제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

### **1992년 해양장비안전확보 명령의 재검토**

이 명령은 Piper Alpha 사고에 관한 1990년 Cullin경의 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명령은 영국 영해에서 기름 및 가스 송유설비를 운영하고 소유한 자는 보건안전국에 안전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10년의 규제 후, 보건안전위원회는 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규제에 대한 내부적 검토 결과, 이 규제는 해양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이 규제는 3년마다 안전상황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반복되는 재보고마다 개선의 여지는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과 비용은 그대로였다. 또한 보고서는 보건안전국을 위한 것이고 의무자들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었다.

-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위원회는 의무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감경하면서도 의무자에 대한 안정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개선을 장려하는 사항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은 보건안전국에 제출하는 정보요구사항의 빈도와 양을 간소화하고 줄이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3년이라는 재제출기간요건을 폐지하였다. 대신에 의무자가 5년마다 안정검침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기타 보고서의 요건들도 간소화하거나 폐지하였다. 또한 보고서 내용도 간소화하여 다른 보건안전법과 연계를 취하였다. 이전의 두 가지 별도의 검사요건도 통일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5년 명령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안전검사와 통보도 가능하게 되었다.

- 이익은 무엇인가?

이 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최근의 규제영향평가에 따르면, 관련 기업은 10년동안 약 9백2십만 파운드에서 5천5백만 파운드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는 3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9년까지 새로운 규제에 전환되므로 훨씬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규제의 보건안전국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조사관들을 안전



보고서를 검토하는 업무에서 실제 조사업무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 C. 자료공유와 정부의 통합

#### 영국 국제무역 단일화 창구

영국국세청(HMRC), 식품규제청(FSA), 환경식량농업부(DEFRA), 무역산업부의 소기업서비스 및 항구안전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영국국제무역단일화창구(ITSW)는 기업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ITSW는 EU 내 무역을 포함한 국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규제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포괄하며, 국제무역규제를 이해하는 시간과 이를 충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의 정보를 기업관련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무역업자들이 계속 갱신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한다. 첫 번째 서비스는 2006년 11월에 시작되고, 계속 보완하여 2007년 여름까지는 모든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ITSW는 향후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단일화를 대상으로 한다.

- 무역업자가 한 번의 자료를 입력하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자료가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되어 각각의 부처가 요구하던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
- 자동면허확인 - 수출입 면허의 검사자료를 정부가 공유하면, 무역업자가 필요한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는 필요를 줄이는 것
- 수출입시 영국기업에 적용되는 규범들의 영문 정보와 지침임을 평이하게 서술함
- 무역규제 관련 최근 준수사항을 갱신하여 영국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이메일

과거에는 영국에 상품이 수입될 때, 기업들이 다양한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경우 한 항구에서도 서로 다른 사무실을 오가며 양식만 가져오는 것도 큰일이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별도로 이용하였다. 새로운 서버를 통하면, 기업들은 ITSW 웹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정보를 제출하고, 모든 요구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이익은 무엇인가?

ITSW는 한 번의 표준화된 정보 관련 규정이 모든 수출입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목적은 단일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수출입규제를 하고, 기관간 법적 의무를 공유하여 규제를 요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평가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을 통해 규제 대상자들이 규제 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항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기업은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고, 대규모 기업은 바로 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시스템간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ITSW는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무역업자의 후생을 개선시킨다.

- 국제적 무역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시간을 줄인다. 이러한 정보는 이미 존재하였으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어려운 용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 정부입장에서는 법규가 발효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한번의 이메일로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 하나의 창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교류가 수행되므로 중복을 피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서류제출로 물리적 이동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무역업자가 얻는 총 이익은 약 1억 3천 5백만 파운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이 작업이

진행되어 더 많은 정보교류가 가능해 질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EU는 2012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ITSW가 진정한 의미에서 완료되면 많은 정부기관들이 자료공유와 정부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D. 정보자동화개발**

##### **보상회복단 전자체계**

노동연금부의 보상회복단은 몇 개의 전자체계를 보험자 및 보건부와 함께 만들어 많은 행정업무를 해소하였다.

-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보상회복단은 보험업자들과 함께 전자자료교환 체계를 개발하여, 대형 보험회사들이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는 고효율의 IT체계와 호환되도록 하였다. 보상회복단은 영국 보험협회와 함께 3대 주요 보험업무인 청구접수, 보험료 지급갱신 주소이전통지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청구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보험자들이 자료를 공유하므로 허위청구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보상회복단으로 보내지고 업무처리에 도움을 준다.

보험업자는 개인이 병원에 가면 보상회복단에 그 사실을 전달한다. 보상회복단은 이를 통하여 해당자료 사항을 얻게 되고 자동으로 보험업자에게 보험료지급을 갱신하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 이전에는 300,000장의 서류들이 해마다 국립의료체계(NHS)로 보내졌다.

- 이익은 무엇인가?

이러한 전자체계는 보상회복단과 보험업계 모두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 우편비용해소
- 우편수취/발송업무해소

[부록 II]

- 자료입력업무해소
- 온라인화를 위한 중복업무해소
- 소비자 서비스 개선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는 매년 약 백 50십만 파운드정도로 평가된다.

## **E. 더 나은 안내와 지침과 정보의 제공**

### **세법 개정 사업(TLR)**

영국국세청은 개인이나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세법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비록 이 개정작업이 기존의 법규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법체계를 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부담을 줄인다. 명확성을 확대하여 논란이 될 사항의 범위를 줄이기도 한다.

- 어떻게 개선하는가?

기존 규범의 용어를 단순화, 현대화하는 작업을 이해를 명확하게 또한 쉽게 만든다. 이러한 작업은 모순과 불명확성을 줄이고 특정 부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부가하는 것이다.

모든 개정 규범은 세금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도록 발간된다. 이 작업은 이미 마무리되어 법안으로 상정되었고 최근 다음 단계로 진행 중이다.

- 무엇이 이익인가?

가장 최근에 시행된 세 번째 법안은 약 4천만 내지 1억 파운드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이 작업을 계속될 것이며, 네 번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내 대부분의 소득세 관련 규범이 개정되는 셈이다.

### 공동수산정책의 규범에 대한 간소화 및 명확화 작업

2005년 4월 선진규제업무팀은 수산업계로부터 수산업 관련 법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받았다. 이 의견은 규범에 대한 소개와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관한 제안은 없었다. 이 내용은 공동수산정책부의 DEFRA로 전달되었다.

-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DEFRA는 국내 절차와 EU절차 사이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 목록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의 합동연구를 통해 70여 가지의 규제사항이 폐지, 개선, 명확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EU의 행동지침에 조화되도록 제안되어 2005년 12월에 발간되었다.

- 무엇이 이익인가?

EU와 국내규제의 조화는 진행 중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을 일반적 업무의 중요성에 있어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행정부담을 줄이는 시도가 가능하다. 또한 EU 지원계획 등을 활용하여 업계의 지지를 얻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례는 복잡한 분야의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업계와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